

북유럽의 교육복지 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 스웨덴 -

노기호



비교법제 연구 13-20-⑨-3

**북유럽의 교육복지 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 스웨덴 -**

노 기 호



한국법제연구원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북유럽의 교육복지 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 스웨덴 -**

**A Comparative Law Study on the
Legislation of Education Welfare in the
Nordic countries
- Sweden -**

연구자 : 노기호(군산대학교 교수)
Noh, Ki-Ho

2013. 10. 4.

요 약 문

I. 배경 및 목적

- 새 정부의 출범에 즈음하여 저소득층과 소외계층의 문제가 사회적으로 등장하면서 이들에 대한 교육지원 대책이 중요한 정책으로 대두되고 있음.
- 개인의 안정된 삶을 추구하고 모든 학생들의 교육기회를 평등하게 보장하면서 사회적인 형평성을 지향하는 복지의 관점에서 교육을 해석하는 것이 요구됨.
- 스웨덴은 이미 오래 전부터 교육복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교육정책의 중요 부분으로 취급하고 있음.
- 우리의 교육복지 정책 및 교육복지 법제를 구현함에 있어 스웨덴의 교육복지 정책과 법제는 중요한 시사점을 주고 있음.

II. 주요 내용

- 유아교육과 초등교육을 포함한 기초교육과 생계를 위한 직업교육은 무상 의무교육의 범주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됨.
- 국민 기초교육이라고 할 수 있는 초·중등교육은 복지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함.

- 이들에 대한 지원은 학교와 지역사회, 가정이 연계하는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이 요구됨.
- 교육체제 자체가 균등한 교육을 제공 받을 수 있도록 구성되고, 교육체제가 교육복지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되어야 함.
- 교육이념이 철저한 평등의 원칙에서 출발하여야 하며, 결코 개인적인 환경에 따라 교육을 제공 받을 기회가 제한받는 경우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이러한 이념들이 교육복지 법제 속에 내포되어야 함.
- 스웨덴의 경우처럼 교육법령 중에서 상위의 효력을 가지는 교육기본법에 교육복지에 관한 총괄적인 규정들을 마련하는 것이 요구됨.

Ⅲ. 기대효과

- 교육복지 정책의 실현에 전제가 되는 교육복지 법제 정비의 비교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새 정부의 교육복지 정책 실현을 위한 법적 근거를 제공함.

▶ 주제어 : 교육복지, 교육복지법제, 차별금지법, 학교교육체제, 의무교육, 무상교육, 학업중단학생 지원, 이민자 가족 지원, 장애학생 지원, 성인교육지원

Abstract

I . Background and objective

- On the occasion of the inauguration of the new government, low-income and underprivileged groups has emerged as a matter of social and educational support for these measures as an important policy.
- Individuals seeking stable life and equal educational opportunities for all students, while ensuring social equity in terms of welfare-oriented education are required to interpret.
- Sweden has long recognized the importance of education welfare and education policy is treated as an important part of that.
- In our training and education welfare legislation implementing welfare policy, educational welfare policies and legislation in Sweden has important implications.

II . Contents

-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elementary education, including basic education, vocational education and livelihood should be made in the category of free and compulsory education.
- What can be called the National Basic Elementary Education and Secondary Education should be approached from the point of view of welfare.

- To support for these, schools, communities and families connected to form a network of joint effort would be required to get out.
- Educational system itself can be configured to provide equal education, and training system to function as educational welfare should be so organized.
- Educational philosophy from the strict principle of equality shall never depend on personal environment. The opportunity to receive training in accordance with the limit is a case to be sure, and these principles should be implicated in the educational welfare legislation.
- Education Act, as in the case of Sweden, which has the effect of higher education on the Fundamental Law of Education on the overall welfare provisions should be required to regulate.

III. Expectation

- As education is the premise for the realization of welfare policy, education welfare laws establish the legal basis for the comparison of maintenance. The new government's education welfare policies provide the legal basis for the realization.
- **Key word :** Educational welfare, educational welfare legislation, discrimination law, the school education system, compulsory education, free education, school stop student support, immigrants-family support, disability support, adult education support

목 차

요 약 문	3
Abstract	5
제 1 장 서 론	9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9
제 2 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2
제 2 장 스웨덴 복지정책 및 교육제도 개관	15
제 1 절 복지정책	15
I. 복지정책의 역사	15
II. 복지정책의 특징	17
제 2 절 교육제도	18
I. 교육행정체제 개관	18
II. 학교교육체제	22
제 3 장 스웨덴 교육복지 법제의 체계 및 내용	31
제 1 절 교육복지 법제의 체계	31
I. 스웨덴 헌법과 차별금지법	31
II. 스웨덴 교육법령	39
제 2 절 교육복지법제의 내용	48
I. 의무교육 지원체제	48

II. 무상교육 지원체제	53
III. 학업중단학생 지원체제	55
IV. 이민자 가족 및 아동교육 지원체제	60
V. 장애학생 교육지원 체제	66
VI. 성인교육 지원체제	73
제 4 장 스웨덴 교육복지법제 연구의 시사점	79
I. 교육체제에서의 평등이념의 구현	79
II.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의 실질적 보장	79
III. 무상의 공교육 체제의 실현	80
IV. 이민자 가족 및 아동에 대한 모국어 교육	81
V. 학업중단 학생 예방을 위한 지원 정책	82
VI. 통합교육 또는 융합교육으로서의 장애인 교육	82
VII. 의무 및 무상교육으로서의 성인교육	83
VIII. 교육복지 기본법으로서의 스웨덴 교육법	84
제 5 장 결 론	85
참 고 문 헌	87
【부 록】	91
스웨덴 교육법	91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교육은 개인적은 측면에서는 자아실현 및 직업 확보는 물론 건강한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기본적인 토대가 된다.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는 인적자본 개발로 인한 국가경쟁력 향상은 물론 더 나아가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민적 통합을 도모함으로써 복지사회의 구현에 이바지하는 필수적인 요소이기도 하다. 또한 교육적 성취는 다양한 사회경제적 결과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이며 개인의 한 일생 동안의 복지를 나타내는 중요한 예측인자가 되기도 한다.

우리 사회에서는 개인의 사회경제적 수준에 따라 양질의 교육접근성 여부가 결정된다. 따라서 빈부격차는 바로 교육의 격차로 연결되고 이는 빈곤의 세습이라는 악순환을 초래하고 있다. 그러나 선진국의 경우, 이미 오래 전부터 사회평등과 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사회복지와 교육이 밀접한 관계를 맺어 왔으며 복지국가가 강조되면서 부터는 교육을 사회복지의 일환으로 다루어 왔다. 특히 최근에는 지식과 정보의 격차해소가 세계 각국의 중요한 정책이슈로 부각되고 있으며, 새로운 지식·기술의 습득 및 활용능력이 부족한 취약계층에 대한 적극적 교육기회의 보장과 인적자원 개발은 모든 국가의 핵심적 사회통합 전략으로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세계적인 흐름과는 달리 지금까지 우리 사회는 교육을 복지의 관점에서 보려는 노력이 희박하였다. 비록 빈곤가정에서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취학 전부터 적극적으로 국가가 지원하여 장차 사회적 부양책에 의존하지 않고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인간으로 육성되도록 하는 국가적 정책이 어느 때보다도 요구된다. 또한 현대 사회는 인적 자본이 가장 중요한 자본이 되는 시대이므로 국민 개

개인에게 자신의 잠재력과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교육적 환경을 제공하고, 교육의 기회에서부터 교육의 과정, 결과를 보장하는 것이 복지사회가 추구해야 할 책임과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교육 복지의 실현은 인간 존엄성의 보장은 물론 사회적 불평등 및 위화감 완화 나아가 다양한 사회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서의 기능을 기대할 수 있게 되므로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 더불어 현재 우리나라의 가장 고질적인 교육문제 중의 하나인 국민들의 엄청난 사교육비지출과 학생들의 기형적인 지식습득 과정으로 야기되는, 소위 학교붕괴 등의 문제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선진국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교육격차는 빈부의 격차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신분의 격차로 이어진다는 점을 인식하고, 사회적인 정의와 평등을 실현시키기 위하여 교육격차를 해소하려는 노력을 경주해 왔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금까지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려는 노력에 치우쳐서 교육의 격차해소 등 교육복지에 관한 정책 및 법제도는 미흡한 상태에 놓여있다.

교육복지를 논하는 경우 그 대상이 되는 가장 대표적인 집단으로는 저소득층, 장애인, 학습부진아 등을 들 수 있다. 저소득층은 경제적인 생활이 취약한 상태에서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지 못하고 사회적으로 소외되면서 사회적 불안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 계층이다. 저소득층의 자녀들은 자신의 잠재적인 개성과 능력을 계발하고 이를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보지도 못한 상태에서 학교와 사회로부터 소외되어 ‘가난의 대물림’을 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으며, 누구보다도 비행청소년으로 전락하여 사회적 낙오자가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또한 사회·경제적인 위기가 닥치는 경우에는 더욱 그 가능성이 많아지게 된다. 정부는 현재 저소득층에 대한 학비지원, 유아교육비 지원, 학자금 융자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러한 정책은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직접적인 교육비지원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어

서 교육복지의 측면에서 보면 가장 초보적인 수준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 이들 저소득층의 자녀들이 사회적으로 소외되는 것을 방지하고 이들의 잠재적인 개성과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기초적인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들의 교육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지원 대책이 요구된다.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경우, 학습에서는 상당한 애로가 있다. 특히 뇌성마비로 인한 장애의 경우는 학습에 참여하는 데 근본적인 한계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현행 헌법은 모든 국민이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따라서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교육에서 예외가 될 수 없으며, 오히려 장애 때문에 교육에 참여할 기본권에 제약이 있다면 이 제약을 해소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라고 하겠다. 선진국에서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교육문제를 교육복지를 가늠하는 척도로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으며, 이는 복지국가의 건설을 목표로 할 때 당연히 가장 먼저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 되고 있다. 장애 청소년은 현재 교육에 참여하고는 있지만, 일반학생들에 비해 다양한 학교교육 기회를 가지지 못하고 있다. 또한 특수학교를 제외하고 일반학교의 경우 장애 청소년을 위한 시설을 별도로 마련하고 있는 경우는 극히 제한적이어서 이들이 학교를 이용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리고 대부분의 장애 청소년들이 치료와 교육을 병행해야하기 때문에 이들을 교육하고 있는 교육기관은 치료를 위한 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하지만 일반학교의 보건실 시설로는 이를 기대하는 데 한계가 있다. 현재 장애 청소년교육을 전문으로 하는 학교도 국·공립보다는 자율학교에 의존하는 비율이 높고, 이 경우 재정적인 한계로 인하여 효과적인 교육이나 교육프로그램에 상당한 문제가 있으므로 이를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현재 우리 정부는 2003년부터 교육복지의 사각지대라고 판단되는 지역인 도시 저소득지역을 선정하고, 이 지역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복지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교육·문화·복지 등의 수준을 총체적으로 제고하기 위하여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 사업」을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2004년에는 「참여정부 교육복지 종합계획 - 참여복지 5개년 계획(교육복지부문) -」을 수립하여 계획적이고 종합적인 정책추진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을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정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추진을 위한 여건을 확보하는데 상당한 애로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기존에 시행하던 일부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들을 한정하여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도 중요하지만, 농·어촌 및 도시를 구별하지 않고 사회복지와 구별되는 교육복지제도를 새로이 정립하고 이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체계를 구축하려는 차원에서의 법적근거가 되는 관련 법제의 정비 및 교육복지법의 제정이 어느 때보다도 요구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현실적 필요성에 근거하여 교육복지제도의 정립과 효과적인 교육복지정책 수립을 위한 법적 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가장 대표적인 복지국가의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스웨덴의 교육복지법제에 대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제 2 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본 연구는 스웨덴의 교육복지법제의 실태와 내용을 비교·분석하여 우리 교육복지 정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시사점을 얻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본 연구의 범위는 다음과 같은 5가지 세부적인 연구영역으로 나누어 구성된다. 즉 제1장 서론에서는 본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을 제시하고, 제2장에서는 스웨덴의 복지정책과 교육체제에 대하여 소개하며, 제3장에서는 스웨덴 교육복지법제의 체제와 내용에 대하여 상세히 분석하며, 제4장에서는 스웨덴 교육복지법제 연구의 시사점을 도출해 본다. 그리고 제5장에서는 마지막 결론에서는 우리 교육복지법제의 나아갈 방향에 대하여 개인적인 연구소감을 제시해 본다.

그리고 이러한 연구를 진행함에 있어 연구방법으로는 법 이론적 문헌연구와 비교법적인 연구방법을 사용하고자 한다.

먼저 법 이론적인 문헌연구는 법학연구의 가장 보편적인 연구방법으로서 연구주제와 관련된 모든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고 검토하는 연구방법이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주제와 관련한 국내외의 모든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연구의 소재로 삼고자 한다. 이미 발표된 국내의 선행연구 논문과 정책보고서 뿐만 아니라 연구내용에 포함되는 스웨덴의 관련 문헌자료를 주제별로 분류하고 수집하여 검토한다. 특히 교육복지정책 및 법제와 관련된 스웨덴의 주요 교육행정기관 및 입법기관의 문헌과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연구 자료로 삼는다. 다만, 한 가지의 애로사항으로는 연구자의 언어적 능력의 한계로 인해 스웨덴어로 된 문헌의 접근성이 불가능하여 오로지 영어 문헌에 한정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밝혀 두는 바이다.

또한 본 연구를 진행함에 있어서는 스웨덴의 교육복지 정책과 법제의 경향을 검토하고 비교·분석함으로써 장차 우리의 교육복지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 하나의 이론적 자료로 삼고자 하는 비교법적 연구도 진행하여, 교육복지체제의 구축을 위한 법제방향의 원리와 시사점을 찾아내어 장차 우리의 교육복지제도를 정착시키고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있어 이론적 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제 2 장 스웨덴 복지정책 및 교육제도 개관

제 1 절 복지정책¹⁾

I. 복지정책의 역사

스웨덴은 국가 행정체제가 중앙정부 외에 18개의 광역자치단체인 랜(LAN)과 290개의 기초자치단체인 코뮌(Kommun)으로 구성되어 있다. 스웨덴은 전통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이 강하게 인정되어 지방정부에게 과세권이 인정되고 있지만, 자치단체간의 지역적 격차를 해소하고 지방재정의 균등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일정 부분 중앙정부의 관여 하에 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높은 조세부담률과 중앙정부의 공공지출 정책을 통해 사회복지의 근간을 이루는 교육, 의료 등의 사회서비스는 대부분 무상으로 제공되고 있으며, 그 밖의 주택, 노후연금 등에 있어서도 안정적인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²⁾

스웨덴의 복지국가체제는 1930년대에 기틀이 만들어지고 1970년대에 전성기를 이루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스웨덴의 사회민주당³⁾은 1946년의 국민연금체제에서 퇴직연금체제로 전환하면서 민간 및 공공 부문, 생산직, 사무직을 모두 포괄하는 하나의 계급을 형성함으로써 보편적 복지국가를 완성하였다.

1960년대~1970년대의 복지지출의 급격한 증가로 스웨덴 복지국가체제는 전성기를 맞이하게 된다. 이때 스웨덴의 조세부담율과 공공지출

1) 스웨덴 복지정책에 대해서는 이윤미, 평생학습과 복지-스웨덴 사례, 교육비평 제 30호, 교육비평사, 2012, 45쪽~51쪽을 발췌·요약한 것이다.

2) 정혜령, 스웨덴-외국의 교육안전망 사례-, 교육안전망지원센터 정책개발팀(편), 한국교육개발원, 2010, 1쪽

3) 스웨덴 사민당은 1889년 창당되어 1921년 총선에서 처음 제1정당이 되어 정권을 장악한 이후 약 70여 년간 스웨덴 정국을 운영해 왔다. 그러나 2006년과 2010년 총선에서 연이어 패배한 이후, 현재는 온건당을 중심으로 한 우파연합정권이 정국을 운영하고 있어 스웨덴 복지정책의 변화가 예견되고 있다.

은 세계최고가 된다. 또한 1950년대부터 노조의 중앙교섭이 시작되어 1956년에는 렌-마이드너 모델(Rehn-Meidner Model)⁴⁾을 채택하였다. 이 모델의 핵심원칙 중의 하나인 “연대임금정책”은 같은 일을 하는 노동자에 같은 임금을 제공하도록 하는 원칙으로서 임금은 사용자의 지급 능력이 아니라 노동의 성격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정책의 시행으로 생산성이 낮은 기업은 퇴출되고 저임금 노동자들은 효율성 높은 부문으로 옮겨가게 되었다.⁵⁾ 이러한 사민당 정부의 고용 중심정책의 결과로 1980년대까지 스웨덴 노동시장은 저실업률을 유지하게 되었다.

1970년대 이후의 제1,2차 석유파동과 1990년대 초의 경제위기를 맞이하면서 스웨덴의 사회와 경제도 국제적 흐름의 영향을 크게 받으며 변화하게 되었다. 즉 렌-마이드너모델은 1950~70년대 대성공을 거두면서 “요람에서 무덤까지”의 복지국가 스웨덴을 만드는데 기여하였으나 1980년대 들어 우파연합정권의 집권과 함께 성장한 대기업이 연대임금정책을 파기해 자본을 해외에서 유출함으로써 복지국가 정책의 근간이 흔들리기 시작하였으며 자유롭게 된 자본이동을 국가가 더 이상 통제하는 것이 어렵게 된 것이다.

4) 1951년 노동조합총연맹(LO)의 정책연구실에서 제안된 노동정책 모델로서, 핵심적인 두 가지 요소는 “연대임금정책”과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이다. “연대임금정책”은 같은 일을 하는 노동자에 같은 임금을 제공하도록 하는 정책이며,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은 긴축재정으로 발생하는 실업자에 대한 재훈련과 직장 이동을 국가가 책임을 진다는 정책으로서 노동자의 현재 일자리는 보장하지 못하지만, 일자리를 상실한 노동자가 다른 직장에서 신속하게 이동 할 수 있도록 노동시장의 기능을 정상화해 실업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정책이다.

5) “연대임금정책”의 결과로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제공받게 되어 저효율 기업의 퇴출이 가속화되었다. 즉, 같은 업종으로 경쟁하는 기업 A와 기업B의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 A', B'에 같은 임금이 지급되어, 기존까지 A는 고효율 기업이므로 연봉이 3000 만원으로, B는 저효율이어서 연봉이 1000만원이었던 것이 연대임금정책으로 똑같이 2000만원을 지급받게 되었다. 그 결과, 고효율 기업 A는 인건비를 낮추어 경쟁력이 더욱 강해진 반면, 저효율 기업 B는 인건비가 급증해 경쟁력이 더욱 약화되고 결국은 퇴출되는 것이다. 결국 연대임금정책은 평등주의를 표방하면서도, 자유주의의 가치인 ‘효율성’을 추구하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II. 복지정책의 특징

2000년대에 들어 우파연합정권의 연이은 집권으로 노동정책과 복지정책의 변화가 일어났으며 노사간의 공존체제가 약화되고 신자유주의 정책의 도입이 가속화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웨덴의 복지모델은 다른 국가들과는 다른 유형적 특징을 보이고 있다.

복지국가들은 복지제도의 종류 및 포괄성, 복지제도의 적용범위, 복지혜택의 수준, 전체 복지제도의 재분배 효과 등을 기준으로 유형화할 수 있는데, 스웨덴을 포함한 북유럽의 모델은 다른 자유주의 국가나 유럽대륙형과 다른 특성을 보인다.

즉, 북유럽모델은 산업화의 결과로 국가개입이나 자본가계급의 장기적인 자본축적 안정화라는 요인보다는 노동계층을 대변하는 사회민주세력이 크게 작용했다는 점에서 구미의 자유주의 국가들과는 다르다. 노동자 계급의 참정권 보장, 노동자 계급을 대변하는 사회민주당의 발전, 중앙집권화 된 노동조합운동, 우익정당의 약화, 사민당의 지속적인 집권 등으로 인해 노동자 계급에 기초한 연대정책이 가능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수혜대상과 포괄성을 준거로 잔여적 복지와 제도적 복지⁶⁾로 구분한다면 북유럽국가들은 제도적 복지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제도적 복지에서는 사회복지제도가 사회의 정상적인 주요 제도로서 기능하는 것으로서 국가의 역할이 극대화되며, 복지가 사회권으로 보편적으로 제공된다. 또한 복지급여의 수준의 높고 이로 인한 사회의 결속이 강하다.

스웨덴의 복지모델은 중산층 이상의 보편적 복지로서 소득이나 자격과 무관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높은 수준의 복지가 제공되는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스웨덴에서의 교육도 철저히 공

6) 우리의 복지논쟁으로 구분해 본다면, “선택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적 활동으로 인식되며, 누구나 그 권리로부터 예외일 수 없다고 보고 있다. 사회전체가 인식하는 교육은 일종의 기본적 인권이며 학습권으로서 공공영역이 담보해내야 하는 사회보장 기제의 한 영역이다. 따라서 교육은 국가가 국민에게 제공하는 항시적 공공서비스의 일종이며, 국민이면 누구나 필요한 사람에게 교육기회가 제공되는 복지로서 인식되고 있다.

제 2 절 교육제도

I. 교육행정체제 개관

스웨덴에서는 특정한 정책이나 프로그램이 아닌 교육시스템 자체가 하나의 교육복지 내지 취약계층을 위한 교육안전망으로서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스웨덴의 모든 교육과 훈련은 정부의 교육연구부(the Ministry of Education and Research)의 책임 하에 있지만 실제로 고등교육을 제외한 모든 공교육은 기초자치단체인 코뮌에 의해 조직되고 관리된다. 중앙정부에 의해 마련된 큰 틀의 교육정책이나 제도를 바탕으로 지방정부는 학교관리에 상당한 자율성을 가지고 운영한다.⁷⁾ 스웨덴의 교육행정조직은 중앙정부의 교육행정조직과 지방정부의 교육행정조직으로 분류해 볼 수 있다.⁸⁾

1. 중앙정부의 교육행정 조직

중앙정부는 국가의 모든 교육체제를 확립하고 개선할 책임과 의무가 있으면서 한편으로는 이러한 교육체제가 제 기능을 발휘하는지 관

7) 정혜령, 전계보고서, 18쪽

8) 홍세영, 스웨덴 교육복지의 발달과정과 성격에 관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북유럽 교육복지법제 연구세미나 자료집, 2013. 6. 11쪽~12쪽 참조

리·감독하고 평가할 책임을 부담한다. 또한 지방정부와 각급 학교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제공할 책임도 함께 부담한다.

가. 교육연구부(the Ministry of Education and Research)

중앙정부의 교육연구부는 공교육체제하에서 의무교육 시행에 대한 책임을 진다. 먼저 교육연구부는 다양한 형태의 교육 및 학교제도에 적용할 교육법령과 전반적인 지침을 공표하는 한편 의무학교(compulsory school)에 대한 교육과정과 수업개요를 작성한다.

교육·연구부 직원은 약 200명 정도이며, 이들 중 대부분은 비정치적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장관이나 정부가 바뀌어도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

나. 국가교육청(Skolverket/the Swedish National Agency for Education)

스웨덴 국가교육청은 교육영역 및 학교체제에서 가장 큰 역할을 맡고 있는 최상위의 중앙 교육행정기관이다. 여기에서는 학령 전 활동들(förskola/Pre-school activities), 학령기아동 돌봄 서비스(School-age child care for 6 - 12 year olds), 기초학교(grundskola/Compulsory school), 고등학교(gymnasieskola/Upper Secondary School), 지방의 성인교육에 대해 감독·평가하는 책임을 지고 있다. 국가교육청은 교육에 대한 전체적인 기획안을 작성하고 점검한다. 특히 여기에서의 업무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의 질과 성과를 조사하고 자율학교(independent school)들에 대한 재원을 보조하고 자율학교들의 활동을 감독한다. 또한 대학에 재정을 지원하고 대학의 연구지원, 교사들 연수 등을 지원한다.

한편 동급의 고등교육청(Högskoleverket/the National Agency for Higher Education)은 전문대학과 종합대학의 교육활동을 감독하고 고등교육의 평가와 지원, 교육품질 관리 및 해외 고등교육정보 수집 등을 수행한다.

다. 스웨덴 학교감사부(Skolinspektionen)

스웨덴 학교감사부는 지방 행정기관과 자율학교들이 현행 법령들을 준수하는지의 여부를 감사하고 이의 준수를 보장하는 기관이다. 학교감사부는 학령 전 학교, 학령기 아동복지, 학교경영, 성인교육에 대해 책임을 지는 중앙기관이며, 이 기관의 목적은 모든 아동들이 안전한 교육환경에서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평등한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다. 학교감사부는 모든 학교들에 대해 정기적으로 감독을 수행한다. 학교감사부는 새로 신설된 자율학교들에게 허가증을 수여하는 책임도 가지고 있다. 더욱이 고등학교에 대한 국가적 감독을 수행하고 자율학교가 재정을 지원 받을 자격이 있는지 그 적격성 여부를 심사하고 결정한다.

라. 특수교육과 특수학교를 위한 국가청(the National Agency for Special Education and Special School)

특수교육과 특수학교(Special school for the deaf and hard of hearing)를 위한 국가청은 특수교육에 대한 공적 지원을 책정하고 할당하는 책임을 진 중앙의 교육행정기관이다.

마. 학생지원위원회(Verket för Högskoleservice/the National Board of Student Aid)

학생지원위원회는 스웨덴뿐만 아니라 해외에 있는 의무교육 이후의 교육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들에 대해 재정적인 지원을 담당하고 이를 관리한다.

바. 스웨덴 성인교육위원회(Swedish National Council for Adult Education)

중앙정부와 스웨덴 국회에 의해 구성된 성인교육위원회는 성인교육 협회, 민중고등학교에 예산을 책정하고 부여하며, 재정적 기록 및 연

간 보고서를 작성하고 평가하여 정부에 보고한다. 또한 자유 성인학교를 평가하고 정책들을 점검한다.

2.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행정 조직

대부분의 의무교육 기관인 초·중등학교들은 지방자치단체인 코뮌의 정부에 의해 운영되며 이는 전반적으로 학교교육은 지방정부의 역할에 해당한다는 교육법령에 근거함을 의미한다.

스웨덴 교육법은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정부와 자치단체 의회는 하나 이상의 위원회(committes)를 지정하여 국립학교 제도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학교 내 교육은 각 학교의 교장들이 맡아서 관리한다. 각 학교의 교장들은 교내 일과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받아서 숙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학교교육이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교장들의 의무이다.

또한 코뮌과 자치단체 의회는 학교 교육과정을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구비한 교사의 고용, 취학 전 학교교사 및 레크리에이션 강사 등의 고용에 관한 책임을 진다. 그 결과 지방자치 당국과 지방자치 의회는 교육업무를 맡고 있는 교사, 취학 전 학교 교사, 레크리에이션 강사 등 자신들이 임명한 교사들이 국립학교 제도 운영에 대한 필요한 지식을 갖추고 있는지를 점검하여야 하며, 특히 교육목적에 합치되는 지식을 구비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모든 코뮌은 자치의회에서 채택한 학교계획(School Plan)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이 계획은 지방자치 정부의 학교제도에 대한 목표와 발전방향에 대하여 설정해 놓은 것으로서 국립학교제도에 대해 국가가 설정한 목표를 지방정부가 어떠한 방법으로 달성할 것인가를 중심으로 기술되어 있다. 코뮌은 이 학교계획을 끊임없이 검토하고 평가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학생들은 자신의 지역에 있는 학교에 등교하지만 타 지역의 학교에 진학을 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지방정부는 학생에 대한 재정지원을 해야 한다. 지방정부는 16세에서 20세 사이의 젊은이들에게 교육프로그램 선택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스웨덴 교육법과 코문 성인교육법시행령은 지방자치단체에게 성인교육을 제공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교육법은 지방자치 당국이 지적 장애를 가진 성인들을 위한 교육과 이민자들을 위한 스웨덴어 교육을 책임지고 제공하도록 하고 있으며, 성인교육법시행령에서는 성인교육의 내용이 개인의 욕구와 능력에 기초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성인교육과 고등교육이 국가목표에 부응하도록 하고 있다.

II. 학교교육체제

스웨덴의 교육체제는 취학전 교육(취학전 학교와 취학전 학급)과 의무교육(기초학교), 상급중등교육(고등학교), 고등교육(초급대학과 종합대학) 및 성인교육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스웨덴의 현재와 같은 교육체제는 단선제 학제로서 1962년 종합학교 개혁 이래 평등성을 강조하며 정착되어 왔다. 독일을 비롯한 유럽에서는 대학진학을 전제로 하는 일반계 학교(김나지움)와 직업학교를 이분화 하는 복선제 학제를 취하고 있으나, 스웨덴에서는 상급중등교육(고등학교)과정에서 ‘김나지움’이라는 단일한 학교형태 안에 일반계와 직업계의 교육과정을 함께 포괄하는 단선제 교육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다.⁹⁾

1. 취학전 교육

스웨덴의 취학전 아동을 위한 교육체제는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다. 하나는 부모가 양육과 고용 혹은 학업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과 다른 하나는 아동의 발달과 학습을 지원하는 목

9) 이윤미, 전개논문, 51쪽

적이 그것이다. 실제로 스웨덴은 학령기 전 기간(1~5세) 동안에 기초 교육과 보육, 그리고 돌봄을 실질적으로 통합한 전 세계에서 몇 안 되는 국가들 중 하나이다.¹⁰⁾

따라서 취학전 교육은 기초교육과 보육, 그리고 돌봄이 실질적으로 통합되어 지원된다고 할 수 있다. 스웨덴 교육법은 “국가는 취학전 학교를 지원하는 형태로 교육활동을 제공하며 아동·학생들을 위한 복지를 제공한다(제1장 제1조)”고 규정하고 있다. 의무취학 전 아동들을 위한 교육과정으로는, 4~5세의 아동은 “취학전 학교(föskola/Pre-school)”를 통해서, 6세의 아동은 “취학전 학급(föskoleklass/Pre-school class)”을 통해 무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가. 취학전 학교(föskola/Pre-school)

지방자치단체인 코뮌은 스웨덴에 거주하거나 자기 지역에 영구적인 거주지를 두고 있는 아동들이 취학전 교육과 복지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법적인 책임을 지고 있다. 그리고 코뮌은 이러한 활동을 민간부문 사업을 통해 제공할 수도 있다. 여기서의 취학전 교육이란 아직 학교에 취학하기 전의 나이(1세~6세)에 해당하는 어린 아이들을 위한 교육을 말한다.

취학전 교육의 목적은 교육활동을 통해 아이들을 교육시키고 돌보기 위한 것이며, 취학전 교육과 아동들을 위한 복지는 아동 개개인의 필요에 그 기반을 두도록 하고 있다. 또한 육체적, 정신적 또는 그 외의 이유들로 인해 교육활동이 불편한 아이들은 특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된다. 이러한 취학전 교육과 아동을 위한 복지와 관련한 코뮌의 의무는 위원회 또는 지방자치 의회에서 지정한 위원회에 의해 이행되며, 필요에 따라서는 다른 지자체와 협력하여 수행할 수도 있다.

10) 정혜령, 전계보고서, 21쪽

취학전 학교를 지정할 때에는 아동이 사는 곳에서 최대한 가까운 곳으로 지정하도록 하며, 이때에는 보호자가 원하는 바가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그리고 특별한 지원을 필요로 하는 장애 아이들이 취학전 학교나 보육시설 외에 다른 시설에의 지원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취학전 학교 시설을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취학전 학교에 아동이 등록한 후 부모는 비용을 지불하게 되는데, 이때 비용은 가족의 소득과 취학전 학교에 등록된 자녀의 수에 따라 결정된다. 스웨덴은 2002년 1월부터 ‘교육비 상한제(Maximum fee)’를 실시하여 부모가 그들의 자녀를 위해 지불할 수 있는 교육비의 한계를 설정해 놓고 있는데, 취학전 학교와 가정보육을 이용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가계 소득의 1~3%를 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부모가 실직 상태인 경우, 1-5세 아동은 취학전 학교나 가정보육 프로그램에 적어도 하루 3시간 참여할 수 있으며, 실직상태와 상관없이 모든 4~5세 아동은 연간 적어도 525시간, 하루에 평균 3시간 동안은 취학전 학교에 무상으로 참여할 수 있다(교육법 제2장(a) 제10조).

한편, 코뮌은 취학전 학교나 보육시설을 상업적으로 운영하고 싶어 하는 단체나 개인이 있을 경우에는 이러한 시설에 대한 운영 자격을 허가 할 수 있으며, 허가 받은 사립의 취학전 학교에 대해서는 코뮌의 재정적 지원이 의무적으로 이루어진다. 반면에 사립의 취학전 학교는 교육활동에 대해 코뮌의 관리·감독을 받으며, 학교운영과 관련 하여 취득한 학생 개개인의 사적인 정보에 대해서는 당국의 허가 없이는 외부에 유출할 수 없게 하고 있다(교육법 제2장(a) 제18조).

나. 취학전 학급((föskoleklass/Pre-school class)

취학전 학교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스웨덴에서 1~5세의 아동은 취학전 학교, 가정보육, 열린 취학전 학교에 참여하여 교육프로그램을 이행하는 한편, 의무학교에 입학기 전인 6세의 아동은 취학전 학급

(Preschool class)에 참여하여 의무학교에서의 교육을 위한 기초교육을 제공받는다.

취학전 학급은 1998년부터 실시되었는데, 교육목적은 아동들의 발달과 학습을 촉진시키고 미래의 학업을 위한 초석을 다질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있다. 취학전 학급은 아동이 6살이 되는 해 가을학기부터 의무교육을 받을 나이가 되기 전까지 제공되며, 취학전 학급의 교육은 일 년에 최소 525시간 이상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교육법 제2장(b) 제2조).

취학전 학급 장소를 지정할 때에는 아동이 사는 곳에서 최대한 가까운 곳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취학전 학급 교육도 무상으로 제공되는데, 다른 학교체제와 마찬가지로 코문의 예산에 의해 재정적으로 지원을 받는다. 이는 국가의 재정지원과 지방정부의 세수로 구성된다. 그러나 코문은 일주일에 15시간을 넘거나 일 년에 525시간을 초과하는 교육 활동들이나 6번째 생일의 가을학기 전에 학교에 등록된 아동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교육법 제2장(b) 제10조(b)).

취학전 학급도 정규학교와 마찬가지로 교장과 취학전 교사들로 구성되며, 국가 교육과정에 따라 교육과정을 구성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기초교육에 대한 통합적 지원체제를 마련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코문은 취학전 학급을 상업적으로 운영하고 싶어 하는 단체나 개인이 있을 경우에는 이러한 시설에 대한 운영 자격을 허가할 수 있으며, 허가 받은 사립 취학전 학급에 대해서는 코문의 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진다. 반면에 사립의 취학전 학급은 교육활동에 대해 당국의 감독을 받으며, 학급운영과 관련 하여 취득한 학생 개개인의 사적인 정보에 대해서는 당국의 허가 없이는 외부에 유출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2. 의무교육(기초학교 : grundskola)

의무교육(grundskola/기초학교)은 기초학교 1학년에서 9학년까지(7~16세) 9년 동안 지원되는데, 학교교육을 위해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무상으로 국가에 의해 지원된다. 또한 취학 전과 의무교육 기간 동안 이들 기관으로부터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 아동들을 위해서 “가정보육(familijedayhem)”, “열린 취학전 학교(öppenföskola)”, “여가센터(leisure-timecentre)”, “열린 여가활동 센터(öppen fritidsverksamhet)”를 통해 별도의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의무교육은 스웨덴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아동 및 청소년들에게 적용되며, 취학의무는 아동과 청소년들이 국가 및 코문의 교육체제에서 교육을 받을 권리와 연결된다. 의무교육은 기본적으로 9년제의 기초학교(Compulsory comprehensive school)에서 이루어지며, 지적장애나 청각장애가 있는 학생들은 지적 장애자학교(School for mentally disabled)나 특수학교(Special School)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취학의무는 아동이 만 7세가 되는 해의 가을학기부터 개시되며 학생이 만 16세가 되는 해의 봄 학기에 종료되며, 특수학교의 경우에는 만 17세가 되는 해에 마찬가지로 종료한다. 의무교육의 의무출석 일수는 일 년에 190일을 넘지 않아야 하며, 하루 8시간, 1학년과 2학년의 경우에는 하루 6시간을 넘지 않아야 한다. 취학의무 대상 학생의 보호자는 학생을 취학시킬 의무가 있으며, 보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보호자에게 벌금형이 내려진다.

기초학교의 교육은 아동 및 청소년들에게 사회생활에 적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식과 기술 및 기타 교육활동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며, 또 한편으로는 고등학교(Upper Secondary School)에서 요구되는 교육의 기초를 형성함에 목적이 있다. 기초학교의 교육은 무상으로 제

공되며, 교육을 받는 데에 필요한 교과서, 교육기구 등은 무상으로 제공된다. 그리고 기초학교에서의 급식도 무상으로 제공된다.

기초학교라고 할지라도 학생의 개인적인 상황에 따라 다른 지역의 기초학교에 입학하는 것이 허용되며, 9년간의 의무교육기간을 완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2년간 연장하여 학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지적 장애자를 위한 학교(särskola/School for mentally disabled)의 의무교육연한은 10년이며, 이 학교에서의 모든 교육과정은 무상(무상교육, 무상급식, 교통비 지원 등)으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시청각 및 신체장애가 있는 학생을 위한 특수학교(Special School)의 경우에는 의무교육 연한이 9년이며, 교육비, 교재, 교육도구, 급식, 교통비 등 또한 모든 교육과정이 무상으로 지급되며), 교육연한을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3. 상급중등교육(고등학교 : gymnasieskola)

상급중등교육(gymnasieskola/고등학교)은 만 20살이 되는 해 6월 전까지 기초학교 교육 및 이와 동등한 수준의 학업을 마친 학생들이 이수할 수 있는 교육과정으로서 의무교육은 아니지만 무상으로 제공된다. 고등학교 교육은 3학년내로 끝나쳐야 하는 국가적 학업과정, 특별 학업과정(이것도 3학년 내로 끝나쳐야 함), 개별 학업과정으로 이루어진다.

국가적 학업과정(일반 고등학교 과정)은 미래의 대학교육을 위한 초석을 다질 수 있도록 하는 교육과정이며, 특수 학업과정(직업 고등학교 과정)은 교육수준에 있어서 국가적 학업과정과 동등하게 이루어지지 만 미래의 취업을 위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고안되어 있다. 개별 학업 과정은 학생이 국가적 학업과정과 특수 학업과정 내에서의 자율적으로 학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방향으로 잡아주는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

으며, 개별 학업과정 내의 교육은 지역 교육위원회에서 정한 교육계획에 따라 진행된다.

국가적 학업과정에서 고등학교 교육을 받고자 하는 학생은 지방자치 당국을 통해 스웨덴의 어느 지역이든 지원할 수 있다. 국가적 학업과정에 속한 학생들은 60분짜리 수업을 최소 2370분의 강의를 들을 수 있다. 각 코문은 고등학교의 국가 학업과정 또는 동등한 교육, 국제학위(IB)를 따지 못한 학생을 위해 특수 학업과정 또는 개별 학업과정의 형태로 고등학교 교육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 이 학업과정은 고등학교의 국가적 학업과정 또는 동등 교육과정에 입학하였으나 교육을 끝마치지 못한 학생에게도 적용된다. 지적 장애자 학교의 학생에 대하여서는 개별 학업과정에만 그 의무가 있다.

한편, 자신의 지역 내에 거주하지 않는 학생을 고등학교 국가학업과정에 입학시킨 코문의 당국은 학생 교육비용을 해당 학생이 거주하는 지방자치 당국으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다. 그리고 청각장애인, 신체 장애인을 위한 교육과 관련하여 정부는 이러한 학생들에게 추가 보상지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지방자치 당국은 숙식이 필요한 고등학교 학생에게는 재정적 지원을 해주어야 한다. 만 20세가 되는 해의 6월 말까지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숙식, 추가 최저 생활비용, 교통 여행비용 등이 포함된다. 지원은 현금이나 다른 적당한 형태로 지급되며 이는 각 코문이 정할 수 있다. 현금으로 지원이 주어진다면 국가보험법에 따른 기본비용의 최소 30분의 1이상을 지급해야 하며 학생이 하숙생활을 하는 동안 매달 한 번씩 지급한다.

4. 고등교육(högskola/초급대학, universitet/종합대학)

고등교육(högskola/초급대학, universitet/종합대학)은 공립의 경우에 무상으로 제공되며, 고등교육과 성인교육 단계에서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학업으로부터 배제되지 않도록 다양한 재정지원 기구를 두고 있다.

스웨덴의 고등교육은 초급대학(högskola)과 종합대학(universitet)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학 이외의 다른 기관에서 고등교육을 수행하고 있지는 않다. 현재 스웨덴에는 14개의 국립대학교와 24개의 국립 초급대학 및 15개의 사립대학이 고등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대학생들은 모두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받으며 사립대학이나 학위를 수여하는 초급대학에 다니는 학생들은 국가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재정적 지원은 상환이 필요 없는 보조금과 상환해야 할 대출금으로 구성되는데 전일제 과정이나 반일제 과정에 모두 지원될 수 있다. 학생들은 고등교육을 받는 동안 반일제 학생들에게 주당 1,489크로나의 대출금과 680크로나의 수당이 12학기 동안 제공된다.¹¹⁾

스웨덴 고등교육의 또 다른 특징은 고등교육을 젊은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직장경험이 있는 중장년층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직장경험자가 대학에 진학하려는 경우에는 적어도 25세 이상이 되어야 하고 최소 4년 이상의 직장경험을 갖고 있거나 상응하는 경험을 갖고 있어야 한다. 2009년 현재 초급대학 이상의 고등교육을 이수한 졸업자의 34.4%가 30세 이상의 고령자로 나타나고 있다.

스웨덴에서는 중앙정부가 대학의 정원에 대한 통제를 담당하고 있으며, 대학의 재정뿐만 아니라 졸업에 필요한 학점과 세부적인 교육 과정에 대해서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상과 같은 학교교육제도 외에도 성인교육과 학습장애를 가진 아동이나 이민자들이 보편적인 교육으로부터 제외되지 않도록 다양한 지원체제를 갖추고 있다. 특히 이민자의 경우 모국어 교육과 스웨덴어 교육을 별도로 지원하고 있다.

스웨덴 교육체제를 도표화하면 아래와 같다.

11) 신광영, 스웨덴의 계급과 교육, 교육비평 제30호, 교육비평사, 2012, 67쪽

스웨덴 교육체제*



**** 민중고등학교, 교육단체

제 3 장 스웨덴 교육복지 법제의 체계 및 내용

제 1 절 교육복지 법제의 체계

I. 스웨덴 헌법과 차별금지법

1. 스웨덴 헌법

가. 개 관

스웨덴도 북유럽의 다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입헌민주주의 국가로서 성문의 헌법전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같은 단일의 헌법전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헌법적 기능을 수행하는 5개의 법률로 구성된 헌법률을 가지고 있다. 즉 헌법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i) 정부조직법(The Instrument of Government), ii) 왕위계승법(The Act of Succession), iii) 언론의 자유법(The Freedom of the Press Act), iv) 표현의 자유에 관한 기본법(The Fundamental Law on Freedom of Expression)과 헌법보다는 하위의 효력을 가지지만 법률보다는 상위의 효력을 갖고 있는 v) 의회법(The Riksdag Act)이 바로 그것이다.

이 중에서 스웨덴의 국가기구의 조직 및 구성과 기능 그리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법률은 정부조직법(The Instrument of Government)이다. 정부조직법은 전체 15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장별로 여러 개의 관련 조항들을 가지고 있다. 각 장별 편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1장 정부형태의 기본 원칙, 제2장 기본권과 자유, 제3장 의회, 제4장 의회의 역할, 제5장 국가원수, 제6장 정부(Government), 제7장 정부의 역할, 제8장 법령과 규정들, 제9장 재정권력, 제10장 국제관계, 제11장 사법부, 제12장 행정부(Administration),

제13장 의회 통제, 제14장 지방 당국, 제15장 전쟁과 위험, 경과규정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민의 기본적 인권과 교육제도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장은 제2장 : 기본권과 자유의 장이다. 제2장은 의견의 자유, 신체보존과 이동의 자유, 법의 지배(Rule of law), 차별금지 보호, 재산의 보호와 공적 접근의 권리, 저작권, 노동조합의 자유, 교육과 연구, 유럽조약, 권리와 자유의 제한한 한계 등의 주제로 구성되어 있다.

스웨덴 헌법상의 국민의 교육과 관련된 권리와 제도에 대해서는 제2장의 차별금지 보호(Protection against discrimination)와 교육 및 연구(Education and research)의 부분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문들을 통하여 파악할 수 있다.

나. 차별금지와 교육 및 연구 규정

스웨덴 헌법 제2장의 차별금지 보호(Protection against discrimination)에서는 차별의 금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즉, 법령 또는 기타 규정들은 민족성, 피부색 또는 다른 유사한 환경 또는 성적 취향 때문에 소수자 집단에 속한다는 이유로 누군가에 대해 불공정한 처우를 암시하는 규정을 두어서는 안 된다(제12조)고 한다. 그리고 법률이 남성과 여성 사이의 평등을 증진하기 위한 노력의 일부분을 구성하지 않거나 또는 의무병역서비스 혹은 이와 유사한 공적 의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성적 정체성을 이유로 누군가를 누군가에 대해 불공정한 처우를 암시하는 법령 또는 기타 규정을 두어서는 안 되도록 하고 있다(제13조). 또한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 노동조합, 고용주 또는 고용주 단체는 산업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제14조).

한편, 교육과 연구(Education and research)에서는 학생들이 갖는 교육에 대한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즉, 의무교육을 받는 모든 아동들은

공공 교육체제에서 모두 무상으로 기본교육을 받도록 규정되어야 하며, 공공 교육기관은 또한 고등교육 제공에 대한 책임을 지고 연구의 자유는 법률에 규정된 원칙에 따라 보호된다(제18조).

이러한 헌법상의 차별금지의 조항과 교육연구에 관한 국민의 기본권에 관한 규정들이 스웨덴에서 교육법령들의 근거조항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국민의 교육권(the right to education) 및 교육복지에 대한 권리의 근거로 작동된다.

헌법상의 차별금지 조항의 세부적인 시행 법률로서 제정된 것이 차별금지법이다. 차별금지법에서는 어떠한 이유에 근거한 차별도 교육의 영역에서 허용되지 않음을 밝히고 있다. 아래에서는 차별금지법에 대하여 검토해 본다.

2. 차별금지법(Discrimination Act(SFS 2008 : 567))¹²⁾

가. 입법배경

스웨덴은 2008년 6월, 차별이 발생하는 영역에 따라 개별적인 평등법 내지 차별금지법 등으로 시행되어 오던 차별 관련 법률 등을 통합하여 단일화 된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였다. 이 차별금지법(Discrimination Act, SFS 2008 : 567)은 2009년 1월 1일 발효되었으며, 평등옴부즈만(The Equality Ombudsman), 차별시정위원회(Board against Discrimination), 고등교육청원위원회(Board of Appeals for Higher Education) 등 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새로운 제도들이 도입되었다. 한편, 동법은 노동영역에서의 평등 실현을 목적으로 시행되었던 ‘평등기회법(Equal Opportunities Act, SFS 1991 : 443)’, ‘민족, 종교 또는 다른 신념에 근거한 노동생활에서의 차별사정 조치에 관한 법률(the Act on Measures against Discrimination in Working Life on Grounds of Ethnic Origin, Religion or other

12) 동법률에 대한 영어원문 검색은 <http://www.government.se/sb/d/574/a/118187>에서 가능하다.

Belief, SFS 1999 : 130)’, ‘장애에 근거한 노동생활에서의 차별금지법 (the Prohibition of Discrimination in Working Life on Grounds of Disability Act, SFS 1999 : 132)’, ‘성적 취향에 근거한 노동생활에서의 차별금지법(the Prohibition of Discrimination in Working Life because of Sexual Orientation Act, SFS 1999 : 133)’ 등과 교육영역에서의 평등 실현을 목적으로 시행되었던 ‘종합대학 학생의 동등한 처우에 관한 법률(the Equal Treatment of Students at Universities Act, SFS 2001 : 1286)’, ‘차별금지법(the Prohibition of Discrimination Act, SFS 2003 : 307)’, ‘아동과 학생에 대한 차별 및 기타 굴욕적인 처우 금지법(the Act Prohibiting Discriminatory and Other Degrading Treatment of Children and Pupils, SFS 2006 : 67) 등과 같이 민족, 종교, 신념, 장애, 성적 취향, 나이 등에 따라 분야별로 나뉘어 있던 차별 금지법을 단일화하여 대체하였다.

나. 입법목적 및 구성

동법은 제1장 제1조에서 차별을 시정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다른 방식으로 성별, 성전환 정체성 및 표현, 민족성, 종교 및 기타 신념, 장애, 성적 취향, 나이에 관계없이 동등한 권리와 기회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다.

스웨덴 차별금지법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은 조항에 대한 정의와 도입으로 되어 있으며, 제2장은 차별과 보복 행위에 대한 금지 규정, 제3장은 유효한 평등 실현 조치들에 대한 규정, 제4장은 관리감독에 관한 규정, 제5장은 보상과 무효에 관한 규정들, 제6장은 법적 절차에 관한 규정으로 구성되어 있다(제1장 제2조).

동법이 적용대상으로 삼는 차별이 금지되는 영역으로는 노동(제2장 제1조 ~ 제4조), 교육(제2장 제5조 ~ 제8조), 공공계약에 의하지 않은 노동시장 정책 활동과 고용 서비스(제2장 제9조), 사업의 개시와 경영

및 직업 승인(제2장 제10조), 조직의 구성원 자격(제2장 제11조), 재화, 용역과 주택 등(제2장 제12조), 건강과 의료 및 사회복지 등(제2장 제13조), 사회보험체계와 실업보험 및 학업에 대한 재정지원(제2장 제14조), 병역 및 민간복무(제2장 제15조), 공무원 임용(제2장 제17조), 보복행위의 금지(제2장 제18조 ~ 제19조) 등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차별금지법은 한편으로 차별금지가 적용되지 않는 예외를 네 가지 제시하고 있다(제2장 제2조). 즉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차별대우가 허용된다.

- i) 적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적절하고 필요한 조건이 진정하고 결정적인 직업조건일 때, 즉 진정한 직업자격을 해당하는 때.
- ii) 남성과 여성 사이의 임금 및 고용기간과 관련된 사항에서의 평등을 증진하기 위한 노력에 기여하는 조치들.
- iii) 사적 계약 또는 집단적 동의하에서의 연금, 유족 또는 실효된 혜택과 관련된 권리에 있어서의 나이 제한의 적용.
- iv) 입법목적과 그 목적 달성을 위해 적절하고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수단이 있는 경우, 나이를 근거로 한 차별대우.

다. 차별의 정의

동법은 제1장 제4조에서는 각 영역에서 적용되는 차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분류하여 정의하고 있다.

- i) 직접차별 : 어떤 사람이 비교 가능한 상황에서 다른 사람이 대우받고 있거나 대우받아 왔거나 대우받을 것으로 추정되는 것보다 불리하게 대우받음으로써 불이익에 처하며, 이러한 불이익이 성별, 성전환 정체성 및 표현, 민족성, 종교 및 기타 신념, 장애, 성적 취향, 나이 등에 연원하는 경우.
- ii) 간접차별 : 중립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특정한 성별, 특정한 성전환 정체성 및 표현, 특정한 민족성, 특정한 종교 및 신념, 특정

한 장애, 특정한 성적 취향 및 특정한 나이에 따라 사람을 특유한 불이익에 처하게 하는 어떤 조항, 규범, 절차의 적용으로 인하여 누군가가 불이익을 받으며, 해당 조항, 규범, 절차의 목적이 적법하지 않거나 사용된 수단이 그 목적을 달성하는 데 부적절하고 필요하지 않는 경우.

- iii) 괴롭힘 : 인간의 존엄을 침해하며 성별, 성전환 정체성 및 표현, 민족성, 종교 및 기타 신념, 장애, 성적 취향, 나이 등의 차별 근거 하나와 관련된 행위
- iv) 성희롱 : 인간의 존엄을 침해하는 본질상 성적인 행위.
- v) 차별의 지시 : 상대적으로 종속적이거나 의존적인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 또는 그 사람에게 수행을 위탁하는 자에게 위의 i)에서 iv)에 따른 방법으로 사람을 차별하라는 명령 또는 지시

또한 동법은 제1장 제5조에서 차별의 요인이 되는 성별, 성전환 정체성 및 표현, 민족성, 장애, 성적 취향, 나이 등에 대해 정의하고 있다.

- i) 성별 : 여성 또는 남성
- ii) 성전환 정체성 및 표현 : 남성 또는 여성으로서의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지 않는 것 또는 자신이 다른 성에 속함을 복장의 방식이나 그 밖의 다른 방법으로 표현하는 것
- iii) 민족성 : 국민적 또는 민족적 기원, 피부색 또는 다른 유사한 생활환경 등
- iv) 장애 : 출생과 동시에, 출생 이후에 발생한, 또는 발생이 예견되는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상해의 결과로 야기된 개인의 영구적인 육체적, 정신적 또는 지적 능력의 기능상의 한계
- v) 성적 취향 : 동성애, 양성애, 이성애
- vi) 나이 : 날짜로 계산한 생존의 길이

라. 교육영역에서의 차별금지

스웨덴 차별금지법은 적용대상으로 삼는 차별이 금지되는 영역에 대해 제2장에서 규정하고 있다. 교육영역에서의 차별금지에 대해서는 제2장 제5조에서 제8조까지 규정하고 있으며, 차별의 금지, 조사 의무와 괴롭힘 방지조치 채택 의무, 자격에 대한 정보로 구성되어 있다.

(1) 차별의 금지

스웨덴 교육법(1985 : 1100)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육적 조치들이나 다른 교육제공자에 의한 교육적 조치들을 실행하는 자연인이나 법인은 이들 조치에 참여하거나 지원하는 어떠한 아동, 초·중등생도, 기타 학생들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 교육적 조치에 종사하는 피고용인과 계약자들은 그들이 고용과 계약 하에서 활동하는 때에는 교육제공자들과 동등해 진다(제5조).

이러한 차별금지는 또한 교육제공자가 앞에서 언급한 사항들의 접근성과 유용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수단들을 채택함에 있어, ‘고등교육법(Higher education Act, SFS 1992 : 1434)’하에서의 교육 또는 ‘특정자격 부여에 관한 허가법(Act concerning authority to award certain qualifications, SFS 1993 : 792)’하에서의 자격취득을 위한 교육을 받기 위해 지원을 하거나 입학이 허용되어 왔던 장애인이 그러한 장애가 없는 사람과 비교될 수 있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을 인식하고 있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제5조의 차별은 다음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제6조).

- i) 스웨덴 교육법(the Education Act, SFS 1985 : 1100)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 이외의 교육에서의 입학과 관련된 사항에서의 남성과 여성 사이의 평등을 증진하기 위한 노력에 기여하는 조치들.
- ii) 취학 전 학교 활동들, 학령아동보육, 취학 전 학급에서의 교육, 의무교육학교 시스템 또는 이와 동등한 자율학교(independent school),

학습장애 아동을 위한 특수수요학교 또는 장애 아동을 위한 특수학교와 관련하여 나이를 규정하고 있는 조항의 적용

iii) 입법목적과 그 목적 달성을 위해 적절하고 필요한 수단이 있다고 여겨지는 경우, 나이를 근거로 한 차별대우.

또한 이러한 차별금지는 민족성, 종교 또는 다른 신념에도 불구하고 동등한 권리와 기회의 증진을 위한 노력에 기여하는 수단들을 채택하고 있는 민속고등학교(folk high school)나 연구단체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조사 의무와 괴롭힘 방지조치 채택 의무

교육제공자가 제공하는 교육활동에 참여하고 있거나 지원하고 있는 아동, 초·중등생도 또는 학생이 자기 자신이 이러한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괴롭힘이나 성적 희롱을 당해왔다고 느끼고 있음을 교육제공자가 알게 된 때에는, 교육제공자는 문제가 된 괴롭힘과 관련된 상황등을 조사하고 장차 그러한 괴롭힘을 예방함에 있어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수단들을 적절하게 채택할 의무가 있다(제7조).

(3) 자격에 대한 정보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자의 입학지원이 거절되거나 테스트 혹은 면접에서 배제되거나 하는 그러한 절차가 입학절차로서 사용되어 온 경우에는, 지원자는 어떤 사람이 그 교육 프로그램에 입학하거나 테스트 혹은 면접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혹은 교육이 무엇인지 등에 관한 정보를 교육제공자로부터 받거나 요구할 권리가 있다.

마. 사법적 구제절차와 차별시정 기구에 의한 구제절차

차별금지법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를 위반한 차별행위에 대하여는 사법적인 구제절차와 이의 시정을 위한 여러 가지의 제도를 두고 있다.

제5장에서는 차별행위에 대한 보상과 계약내용의 무효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즉 차별 및 보복금지를 위반하거나 괴롭힘 및 성희롱에 대한 조사 또는 조치의무를 다하지 못한 자연인 또는 법인은 이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제5장 제1조). 또한 차별금지법은 금지된 차별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무효로 하고 있다. 도입 규정에서는 차별금지법에 따른 권리나 의무를 제한하는 것은 법적 효력이 없음을 선언하고 있으며, 차별적 계약 또는 협약은 수정되거나 무효로 선언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5장 제3조).

제4장에서는 차별금지법의 이행을 감독하고 차별 관련 소송을 대신하여 수행하기 위하여 평등옴부즈만(The Equality Ombudsman)을 설치하고 있다. 평등옴부즈만은 차별받았다고 주장하는 개인을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할 수 있는데, 소송 대리는 평등옴부즈만 뿐 아니라 구성원의 이익을 대변하는 비영리단체도 가능하다(제4장 제1조).

한편, 노동조건 및 채용에서의 노력, 괴롭힘 방지, 동일 임금을 위한 실천 계획, 성평등 계획, 교육제공자의 동등 대우계획 등 적극적 조치와 관련된 의무를 수행하지 않은 자연인 또는 법인에 대하여는 차별시정위원회(Board against Discrimination)가 의무수행을 명령한다(제4장 제7조). 벌금결정 명령에 이의가 있는 사람 또는 법인은 차별시정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나, 그 외의 평등옴부즈만의 결정은 이의제기가 금지된다(제4장 제6조). 또한 동법 하에서 차별시정위원회의 결정에 대해서는 이의제기가 불가능하다.

II. 스웨덴 교육법령

1. 스웨덴 교육법령 체계

스웨덴헌법(Grundlagen)하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관할되는 교육관계 법률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된다. 하나는 대학을 중심

으로 하는 교육 및 연구를 규정하고 있는 “고등교육법(Högskolelag/SFS 1992 : 1434)”의 계열이며, 다른 하나는 “교육법(Skollag/SFS 1985 : 1100)”을 정점으로 하는 계열이다. “교육법”은 취학전 교육을 시작으로 하여 의무교육인 기초학교, 그 후의 고등교육 및 성인교육에 이르는 정규의 학교교육과 지적 장애인 교육 및 시청각 장애인 교육에 관한 특수학교의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이다.

스웨덴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관할되는 학교교육 외에도 여러 종류의 국민교육제도(folkbildning)가 존재한다. 그 하나가 학습스쿨(studiecirklar)과 민중대학(folkhög skola)등이다. 이들은 지방자치단체 외의 법인조직 등에 의하여 조직되며, 공적 보조금을 얻어 운영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관할되는 학교교육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는 이른바, 제3의 교육제도라고 할 수 있다.

스웨덴의 “교육법” 산하의 교육관계 법령의 체계를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표1] 스웨덴 “교육법” 관계 법령의 체계

입법 및 제정	법령의 종류	개별 법령	법령집
국회(Riksdagen)	법률(Lag)	교육법(Skollagen)	SFS
정부(Regeringen) 교육·연구부 (Utbildningsdepartm entet)	명령(Förordningar) 교육과정 (Läroplaner)	기초학교령 고등학교령 지적장애자학교령 특수학교령 의무교육학교용 교육 과정(Lgr2011)	SFS 또는 SKOLFS
국가교육청 (Statens skolverk)	규칙(Föreskrifter) 권고(Allmänna råd) 통고(Meddelande)		

스웨덴의 교육복지와 관련된 가장 기본적인 근거법령은 “교육법”이다. 교육법에는 학교교육과 관련된 상세 규정들과 함께 교육복지와 관련된 세부적인 여러 가지의 규정들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지적 장애자를 위한 학교와 청각장애자들을 위한 특수학교의 운영에 관한 규정, 이민자 아동의 스웨덴어 교육 및 교과내용 보충학습과 관련된 개별지도에 관한 규정, 장애자들을 위한 성인교육 등이 명시되어 있다. 그리고 기타 교육복지 사항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법령에 근거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스웨덴 교육법의 체계와 내용을 개괄해 보고, 개별적인 교육복지 주제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교육법과 기타 개별 법령상의 내용들을 검토해 본다. 다양한 교육복지의 범주에 포함되는 주제들을 모두 소개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주요 주제라고 판단되는 의무교육제도, 학업중단학생에 대한 교육지원제도, 이민자 아동 및 가족에 대한 교육지원제도, 장애학생 교육지원제도, 성인교육제도 등에 한정하여 검토한다.

2. 스웨덴 교육법(Skollag/Education Law(SFS No.1985 : 1100))¹³⁾

1985년 12월 12일 국회에서 승인된 스웨덴 교육법(Skollag/SRF No.1985 : 1100)은 유치원교육, 기초학교 아동보호, 학교교육 및 성인교육에 관한 국민들의 기본적 합의 및 국가에 대한 법적 효력을 담고 있다. 이 중 특히 학교교육에 대한 규정에서는 학교교육 활동의 방향, 목적, 방법 등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그 밖에도 스웨덴 교육법은 학교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이행하여야 할 의무적 사항, 학부모 및 학생의 권리와 의무 등에 대해서도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13) 동 법률에 대한 영어원문은 <http://www.government.se/sb/d/2034/a/21538> 에서 검색 가능 하다.

스웨덴 교육법의 원칙은 일방적인 교육방식을 배제하고 학생, 학부모 그리고 교사가 참여하여 교육목적 및 목표를 달성하려는 방향에서 교육관련 당사자 스스로가 교육방식을 결정하는 적극적 참여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사회적 지위 및 지리적 지역 혹은 경제적 소득에 따라 차별받지 않고 스웨덴에 거주하는 모든 교육연령의 아동들이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교육예산의 한도 내에서 무상교육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 밖에도 스웨덴 교육법의 특징적인 점은 여성과 남성의 평등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양성평등(Jaemstaelhet mellan koenen)의 원칙(교육법 제 1장 2조 1항)을 견지하고 있다는 것이며¹⁴⁾, 또한 학교 내 왕따현상 및 인종차별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해서 법률로 이를 제한하고 있다(교육법 제1장 2조 2항)¹⁵⁾는 것이다.

그리고 스웨덴 교육법은 의무교육대상이 아닌 학생에 대한 정보수집의 권한을 기초자치단체인 코뮌에게 부여하는 한편 그들이 적절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행하게 하고 있다. 즉 제1장 제18조 의무교육대상이 아닌 학생에 대한 정보의 편에서는 의무교육을 수료하였지만 아직 20세에 달하지 않은 근로학생을 위하여 코뮌은 적절한 교육정책을 시행하고 이를 위하여 이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권한이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제18조 제1항). 그리고 이러한 코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앙정부 혹은 중앙정부로부터 위임받은 당국은 코뮌의 정보 수집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하여 공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18조 제3항).

14) S. 2 All children and young persons shall irrespective of gender, geographic residence and social and financial circumstances have equal access to education in the national school system for children and young persons. The education shall be of equal standard within each type of school, wherever in the country it is provided.

15) The education shall provide the pupils with knowledge and skills and, in co-operation with the homes, promote their harmonious development into responsible human beings and members of the community. Particular attention shall be paid to pupils who need special support.

스웨덴 교육법은 전체 15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제1장은 일반규정으로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교육제도, 성인교육, 국가 교육제도 총칙, 의무교육의 대상이 아닌 청소년에 관한 정보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제2장은 기초자치단체인 코뮌의 학교조직을 규정하고 있으며 주로 유치원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다. 제3장은 취학의무 및 교육을 받을 권리, 제4장은 기초학교(의무교육 : Compulsory Comprehensive school), 제5장은 고등학교(Upper Secondary School)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제6장은 지적 장애인 학교(School for mentally disabled), 제7장은 청각장애자를 위한 특수학교(Special School)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제8장은 사미(Sami)족 어린이를 위한 사미학교(Sami School), 제9장은 자율학교(Independent Schol), 제10장은 보딩 스쿨(boarding school)과 같은 특수형태의 교육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제11장은 코뮌의 성인교육 중 일반교육, 중등교육, 성인재교육, 제12장은 지적 장애자를 위한 성인교육(Adult Education for Mentally Disabled Persons)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제13장은 이민자를 위한 스웨덴어 교육(Swedish for Immigrants)을 규정하고 있다. 제14장은 학교보건, 15장은 기타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다.

3. 안전, 존중과 책임 - 아동과 학생에 대한 차별과 침해적인 취급의 금지(스웨덴 교육·연구·문화부, U05.059/2005.11)¹⁶⁾

스웨덴 정부는 취학 전 교육시설, 학령아동 보육, 초·중등학교 그리고 지역의 성인교육시설에 적용될 새로운 법률을 2005년에 제정하였다. 이 법률이 바로 “안전, 존중과 책임 - 아동과 학생에 대한 차별과 침해적인 취급의 금지(Gov. Bill 2005/06 : 38)” 이다. 동 법률은 아동과 학생의 평등권을 증진시키고 성별, 민족, 종교, 다른 신념, 성적 취향,

16) 동 법률의 개괄적인 설명에 대해서는, Summary of Government Bill 2005/06:38, Security, respect and responsibility - the prohibition of discrimination and other degrading treatment of children and pupils, Ministry of Education, Research and Culture, Sweden 참조

장애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을 방지함을 목적으로 하였다. 또한 동 법률은 집단 괴롭힘 등과 같은 침해적인 취급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 법률은 스웨덴 교육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 교육시설과 사립 교육시설에 모두 적용되었다.

가. 법률의 목적

취학 전 학교, 학교와 지역 성인교육시설은 모든 아동과 학생들을 위한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이 새 법률은 현재의 스웨덴 교육법의 적용을 받는 모든 교육시설에 재학 중인 아동과 학생들의 평등권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이 법률은 성별, 민족, 종교, 다른 신념, 성적 취향, 장애 등을 이유로 한 차별과 괴롭힘을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아가 동 법률은 이러한 직접적인 차별의 근거에 해당하지 않는 다른 침해적인 취급을 방지하고 금지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결국 이 법률은 집단 괴롭힘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침해적인 취급을 그 대상으로 한다.

나. 실효적 조치들

아동과 학생들이 안전하고 분명하며 유효한 보호 없이 남겨져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교육시설들은 모든 형태의 침해적인 취급을 방지하고 경감시키기 위하여 실효성 있는 목적활동을 실행하여야 한다. 모든 교육시설들은 계획한 조치들을 설명할 수 있는 평등한 처우계획을 가지고 있어야만 한다. 이러한 계획들은 매년 검토되고 적절한 조치들이 취해져야 한다. 이 계획은 일상 활동과 관련되어 유지되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살아있는” 문서이어야 한다. 각각의 교육시설들은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평등한 처우계획을 자유롭게 개발할 수 있다. 아동과 학생들이 교육시설의 평등한 처우 계획의 수립, 실행, 검토(평가)에 포함되고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유효한 조치들은 차별과 침해적인 취급 등에 대한 이 법률상의 금지를 보완한다.

만약 아동이나 학생의 보고서를 통해 이러한 취급을 받아온 사실이 있을 경우, 교육기관 (혹은 교육기관에 의해 임명된 사람)은 괴롭힘이나 다른 침해적인 취급의 추가 사례를 조사하고 방지하여야 한다. 이것은 또한 아동이나 학생들 사이에서의 침해적인 취급에도 적용된다.

다. 차별 및 침해적 취급의 금지

아동과 학생들은 차별 또는 다른 형태의 침해적인 취급을 받지 아니할 권리를 가진다. 그러므로 동 법률은 차별에 대한 다음과 같은 금지를 도입하고 있다.

- 직접적인 차별 : 아동 또는 학생은 동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5가지의 차별의 사유 중의 하나에 근거하여 차별에 의한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즉, 성별, 민족, 종교 또는 다른 신념, 성적 취향, 장애 등.
- 간접적인 차별 : 아동과 학생들은 표면상 중립적이지만 그 적용과 시행에 있어 차별적인 효과를 일으키는 학교규칙에 의하여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 차별적인 훈령 : 교육시설의 관리자는 사람을 차별하는 명령이나 훈령을 내려서는 안 된다.
- 괴롭힘 : 교육시설의 직원은 아동이나 학생에 대하여 침해적인 행위는 금지된다. 만약 침해적인 취급이 5가지의 차별의 근거 사유 중의 하나 혹은 그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는 괴롭힘에 해당한다.

모든 침해적인 취급이 차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모든 취급은 방지되어야 한다. 괴롭힘은 차별의 영역에서 이미 통념화 된

개념이며 따라서 이것은 차별의 근거사유로 작용한다. 따라서 괴롭힘과 다른 침해적인 취급을 구별할 필요가 있다. “다른 침해적인 취급”의 금지는 따라서 침해적인 취급의 모든 형태를 다루고 있는 동 법률에 도입되어 있다.

이러한 금지는 교육시설에서 책임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들에 의한 아동과 학생에 대한 행동에도 적용된다. 그러나 이것은 아동과 학생들을 위한 질서와 좋은 환경의 유지를 위하여 행하여진 합법적인 징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라. 보복행위의 금지

이 법률은 보복행위에 대한 금지를 도입하고 있다. 이것은 아동 또는 학생이 동 법률의 위반에 관한 조사를 보고하거나 조사에 참여한 경우, 아동 또는 학생이 그 결과로 처벌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 피해 및 입증책임의 분담

이 새로운 법률은 아동과 학생들이 차별 및 기타 침해적인 취급 모두에 대한 피해의 권리를 증가시켰다. 교육기관의 책임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법에 따라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피해가 인정된다. 차별과 보복행위에 있어서도, 이로 인해 야기된 침해적인 취급에 대해 피해가 인정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 침해적인 처우가 미세한 경우에는 피해에 대한 보상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또한 아동이나 학생은 피해에 대한 보상으로 옷이나 자전거 등을 받을 수 있다.

입증책임의 분담은 다음의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 첫째, 이 규정은 차별과 보복 행위의 경우에 적용된다. 아동이나 학생을 대표하는 사람이 보복행위나 차별 행위가 발생한 것을 믿게 할 만한 이유를 제공하는 사실적 상황을 제시하게 되면, 책임

있는 교육기관은 그러한 행위가 발생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 두 번째는 아동 또는 학생 자신이 다른 아동 또는 학생에 의해 괴롭힘 또는 기타 침해적인 취급을 받았음을 느꼈을 때와 같은 경우이다. 만약 아동이나 학생을 대표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 아동 또는 학생이 괴롭힘 혹은 기타 침해적인 취급을 지속적으로 받아 왔음을 보여줄 수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피해로부터의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교육시설에 대한 책임 있는 기관은 이러한 취급을 예방하고 방지하기 위한 모든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바. 법률 집행에 대한 감독 및 제한

평등한 기회 옴부즈만 사무소, 민족 차별에 대한 옴부즈만 사무소, 성적 취향에 따른 차별에 대한 옴부즈만 사무소, 장애 옴부즈만 사무소와 스웨덴 국립교육청은 동 법률의 준수를 모니터링 한다. 옴부즈맨(고충처리 담당관)과 아동 및 학생들의 대표는 아동 또는 학생을 대신하여 피해에 대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아동과 학생들의 대표는 동 법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법률의 적용에 대한 조언을 제공하며, 대표자가 사건을 처리 할 수 있는 명령이 없는 경우에는 적절한 옴부즈맨에게 아동이나 학생을 인도하여야 한다.

법적 확실성의 관점에서, 새로운 법률 하에서 발생한 사건은 신속하게 조사되고 처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사건화 하는 것에 대한 시간제한은 아동이나 학생들이 자신의 권리를 잃을 위험성이 있으므로 제한 할 수 없다. 따라서 직접차별, 간접차별, 보복행위의 경우에 법적 제한기간은 2년이다.

그러나 성희롱이나 집단 괴롭힘과 같은 침해적인 취급을 받아 온 많은 아동들과 청소년들은 수년이 지나도록 공적인 장소에서 이에 대

해 이야기 하거나 재판에 참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동 법률은 성희롱이나 다른 골육적인 취급에 대해서는 어떤 특별한 법적 제한을 제공하고 있지 않다. 제한에 관한 법률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긴 법적 제한 기간을 제공하고 있다.

제 2 절 교육복지법제의 내용

I. 의무교육 지원체제

스웨덴에서는 의무교육이 의무취학을 의미한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스웨덴에서의 의무교육(*grundskola/Compulsory school*)은 초등학교 1학년에서 9학년까지 9년간이며, 초등교육부터 고등교육, 성인교육에 이르기까지 전 단계에 걸쳐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취학전 교육의 경우에는 기초교육과 보육 및 돌봄이 통합되어 지원되고 있으며, 4세에서 5세의 아동은 “취학전 학교(*föskola/Pre-school*)”를 통해, 6세 아동은 “취학전 학급(*föskoleklass/Pre-school class*)”을 통해 무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그 밖에 1~5세의 아동도 취학전 교육에 참여할 수 있으며, 자율학교의 경우에는 교육비 상한제를 두어 학부모의 소득수준에 따라 학비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교육비 부담을 최소화하고 있다.

스웨덴에서 의무교육과 관련된 사항은 스웨덴 교육법(*Skollag/SFS No.1985 : 1100*)에 명시되어 있다. 의무교육에 관한 사항은 교육법 제3장과 4장에 규정되어 있는데, 제3장에서는 취학의무 및 교육을 받을 권리에 대하여 규정해 놓고 있으며, 제4장에서는 기초학교(의무교육 : *grundskola/Compulsory comprehensive school*)에 관한 사항들을 규정해 놓고 있다.

먼저 제3장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학의무 및 교육을 받을 권리에 대해 개괄해 본다.

의무교육은 스웨덴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아동 및 청소년들에게 적용되며, 해외에 영주하고 있는 아동 및 청소년이나 취학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학생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교육법 제3장 제1조 제1항). 또한 취학의무는 아동과 청소년들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체제에서 교육을 받을 권리와 연결된다(교육법 제3장 제1조 제2항).

의무교육은 기본적으로 9년제의 기초학교(Compulsory comprehensive school)에서 이루어지며 모든 아동과 청소년은 취학의무를 가진다. 다만, 지적장애나 청각장애가 있어 기초학교에서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교육법 제6장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적장애자학교(School for mentally disabled)나 제7장의 청각장애자를 위한 특수학교(Special School)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교육법 제3장 제3조).

취학의무는 아동이 만7세가 되는 해의 가을학기부터 개시되며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며 학부모의 요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8세 취학을 허용할 수도 있다(교육법 제3장 제7조). 또한 학부모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6세부터의 취학도 가능하며, 이 경우에도 통상적인 의무교육 이동들과 동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다(교육법 제3장 제8조). 취학의무는 학생이 만 16세가 되는 해의 봄 학기에 종료되며, 특수학교의 경우에는 만 17세가 되는 해에 마찬가지로 종료한다. 다만, 학생이 기초학교나 이와 유사한 동등한 학교에서 의무교육 연한 종료 이전에 의무교육의 과정을 성공적으로 마치게 되면 의무교육을 완료한 것으로 인정된다. 또한 지방교육위원회(Styrelsen för utbildning)에서 시행하는 특별시험을 통하여 동등한 학력이 있다는 것이 인정되면 취학의무는 완료된다(교육법 제3장 제10조).

의무취학 대상의 학생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단기간 결석을 하는 것은 가능하다. 또한 학생에 대하여 정학 등과 같은 규칙에 근거한 조치

는 학생의 출석을 고려하여 취해져야만 하며, 단 기간의 정학은 가능하다. 의무출석 일수는 일 년에 190일을 넘지 않아야 하며, 하루 8시간, 1학년과 2학년의 경우에는 하루 6시간을 넘지 않아야 한다(교육법 제3장 제11조). 취학의무대상 학생의 보호자는 학생을 취학시킬 의무가 있으며, 보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학생이 취학의무를 완료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역교육위원회가 보호자에게 벌금형을 명령할 수 있다. 이 벌금형은 구금형으로 대체될 수 없다(교육법 제3장 제16조).

한편, 제4장에서는 기초학교(Compulsory comprehensive school)에 관한 사항들을 규정해 놓고 있는데 이를 간략하게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스웨덴에서 기초학교의 교육은 아동 및 청소년들에게 사회생활에 적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식과 기술 및 기타 교육활동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기초학교에서의 교육은 고등학교(Upper Secondary School)에서 요구되는 교육의 기초를 형성하여야만 한다. 또한 학업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에게는 특별한 지원이 제공되어야 한다(교육법 제4장 제1조). 기초학교의 교육은 무상으로 제공되며, 현대적인 교육을 받는 데에 필요한 교과서, 교육기구 등은 무상으로 제공된다. 다만, 극히 소액의 경비부담을 학생에게 부과할 수 있다(교육법 제4장 제4조). 그리고 기초학교에서의 급식은 무상으로 제공된다(교육법 제4장 제4조a).

기초학교에서의 의무교육 이행을 위한 교통서비스를 해당 지역 지방자치단체는 제공할 의무가 있다. 지역 코문(home municipality)은 통학거리가 긴 경우나 교통상황이 열악한 경우 및 기능장애 등과 같은 여러 가지의 상황으로 인하여 통학이 어려운 경우에는 무상으로 통학을 위한 개별 교통서비스(skolskjuts)를 제공하여야 한다(교육법 제4장 제7조).

스웨덴에서는 비록 기초학교라고 할지라도 학생의 개인적인 상황에 따라 다른 지역의 기초학교에 입학하게 되는 경우, 그 지역의 지자체는 그 입학을 허락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도 다른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의 무상교육을 받는다. 다만, 이 경우에 해당 지자체는 학생이 거주하는 지역 지자체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교육법 제4장 제8조). 또한 스웨덴에서는 9년간의 의무교육기간을 완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9년간의 교육과정을 성공적으로 이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학업수행능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2년간 연장하여 학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교육법 제4장 제10조).

지적 장애학생을 위한 기초학교(särskola/School for mentally disabled)의 의무교육연한은 10년이며, 이 학교에서의 모든 교육과정은 무상(무상교육, 무상급식, 교통비 지원 등)으로 이루어진다(교육법 제6장 제3조, 제4조). 그리고 이들 지적 장애학교의 학생들이 진학하는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은 4년으로 되어 있으며 20세가 되는 해 이전까지 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교육법 제6장 제7조). 그리고 시청각 및 신체장애가 있는 학생을 위한 특수학교(Special School)의 경우에는 의무교육 연한이 9년이며, 교육비, 교재, 교육도구, 급식, 교통비 등 모든 교육과정이 무상으로 지급되며(교육법 제7장 제4조), 이들 교육 연한을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동시에 보습교육을 받을 수 있다(교육법 제7장 제6조).

스웨덴에서는 사립의 자율학교(Independent School)에서의 교육도 의무취학으로 인정되어 의무교육이 이루어진다. 기초학교 또는 지적 장애자학교의 교육수준에 상응하는 자율학교의 허가와 관련하여서는 스웨덴국립교육청에서 결정하며, 장애학생을 위한 특수학교에 상응하는 자율학교의 허가문제는 특수학교위원회가 결정한다(교육법 제9장 제1조). 이러한 자율학교는 스웨덴 국립학교 제도내의 교육정신에 맞물리는 일반목표와 기본적 가치들에 상응하여야 하며, 학교에 재정적 운영상의 문제를 불러올 염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립학교 제도내의 학교교육을 받을 자격이 있는 모든 아이들에게 자율학교에의 입학의 기회가 주어진다. 그리고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소 20명의 학생이 재학하여야 하며, 지적 장애자학교나 특수학교 성격의 자율학교의 경우에는 학생들에게 필요한 돌봄 지원이 제공된다(교육법 제9장 제2조).

사립의 자율학교에 대해서도 공교육비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하여 무상 의무교육의 관점에서 논쟁이 되고 있다. 사립의 자율학교에서 학생들은 교육바우처(voucher)¹⁷⁾ 형식으로 코문으로부터 교육비지원을 받게 되는데 이는 해당학교의 예산으로 지급된다. 학교들의 학생 수가 곧 학교예산을 결정하게 되며 사립 자율학교의 경우, 넓게 보면 공교육시스템에 인프라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학교의 교육활동을 통해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는 이윤창출도 가능하게 되어 있다.¹⁸⁾

스웨덴국립교육청은 기초학교에 상응하는 자율학교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그러나 자율학교가 설립된 지방자치당국 내의 교육시스템에 부정적 결과를 초래하거나 교육목적에 위배되어 벌금을 지불하게 된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은 철회하고 있다. 이러한 보조금은 기초학교에서 제공하는 교육과 상응하는 교육을 받는 각 학생이 거주하는 코문에서 지급한다. 보조금은 지자체가 재정지원으로 인해 상당한 재정적 문제가 야기될 것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를

17) 스웨덴의 교육바우처 제도란 학생 1인 당 교육비를 전체 학생 수로 산정한 금액을 지방정부가 학교에 지급하는 제도이다. 의무교육이 이루어지는 기초학교 수준의 자율학교에는 1991년부터 시행되었으며, 사립의 고등학교에는 1994년부터 도입되었다. 자율학교에 지원되는 교육바우처 금액이 처음에는 국·공립학교의 75% 수준까지 삭감된 적이 있지만 1997년 이후 원칙적으로 국·공립학교와 같게 되었다. 다만, 교육바우처에 의한 교육비지원을 받고 있는 자율학교가 수업료를 징수하는 것은 교육법에 의해 금지되고 있다. 단, 수업료 이외의 수입을 얻는 것은 가능하다. 기초학교의 학생 1인 당 교육비는, 각 코문의 의회가 0~5학년과 6~9학년으로 구분하여 정한다. 의무교육 단계의 교육비에는, i) 통상의 학교교육비, ii)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학생(장애학생 등)을 위한 추가비용, iii) 스웨덴어 이외의 모국어 교육을 위한 비용 등의 3가지로 구성된다.

18) 이윤미, 전계논문, 57쪽

제외하고는 교육 조항과 학생의 필요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하며 기초학교간의 자원분배 원칙과 동일선상에서 이루어진다(교육법 제9장 제6조).

코펜으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사립의 자율학교들은 무상으로 교육을 제공하며, 학생들은 현대식 교육에 필요한 책, 필기도구, 그 밖에 필요한 것들을 비용의 지불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또한 학생들은 무상급식을 제공받는다. 이러한 교육 보조금지원은 사립의 고등학교에도 적용된다(교육법 제9장 제8조). 자율학교의 보조금 청구에 대해 교육적으로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공교육비지원 일체를 취소할 수 있으며 코펜에서 지급취소 결정을 최종적으로 내리기 전에 학교가 금액조정을 할 수 있다(교육법 제9장 제10조).

사립 자율학교는 의무교육을 받는 학생의 교육과 관련하여 국립교육청의 감독을 받으며 전국적인 학업성취도 평가활동에 참여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자율학교는 그 평가 결과를 학생과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그리고 자율학교가 학교인가에 관한 필수사항들을 이행하지 않고, 이로 인해 받게 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지적 사항을 시정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자율학교 인가가 취소된다(교육법 제9장 제11조, 제12조).

II. 무상교육 지원체제

스웨덴에서의 의무교육(*grundskola/Compulsory school*)은 기초학교 1학년에서 9학년까지 9년간이며, 기초학교 교육부터 고등교육, 성인교육에 이르기까지 전 단계에 걸쳐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취학전 교육에 대해서는 소득에 비례하여 학비징수를 할 수 있지만, 상급중등교육(고등학교)의 경우 의무교육에서와 마찬가지로 학비와 교재, 교구 등이 모두 무상이다. 이외에 학생이 자비로 부담하여야 하는 사항 등 기타의 비용에 대해서는 코펜의 위원회에서 지급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고등학교의 경우에도 특별한 예외사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교육법 제5장 제24조) 지역 지자체 위원회로부터 학생의 교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 또한 스웨덴 상급중등교육자격이 아닌 국제학위(IB : International Baccalaureate)를 취득하고자 하는 학생에 대해서도 학생의 거주지 지자체는 교육비를 지급한다(교육법 제5장 제26조(a)). 지방자치 당국은 숙식이 필요한 고등학교 학생에게 재정적 지원을 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는 학생이 만 20세가 되는 해의 6월 말까지 지급할 수 있다. 여기에는 숙식비, 최저생활비용, 교통여비 등이 포함된다. 이때의 재정적인 지원은 현금이나 다른 적당한 형태로 지급되며 이는 자치당국이 정할 수 있다. 현금으로 지원이 주어지는 경우 국가보험법에 따른 기본비용의 최소 30분의 1 이상을 지급해야 하며 학생이 하숙생활을 하는 동안 매 달 한 번씩 지급된다(교육법 제5장 제33조).

중앙정부나 지방자치 당국, 또는 자치의회는 신체장애 학생을 위해 제공되는 특수시설에서의 기숙비용에 대하여 학생에게 비용을 청구해서는 안 되며, 중앙정부 또는 정부가 지정한 당국에서 정한 임시숙소와 거주지에 관련된 비용문제에 대해서는 법률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다(교육법 제5장 제31조). 또한 중앙정부는 청각장애인 또는 기능성 장애를 가진 학생들의 국가 학업과정과 특수학업 교육과정이 3학년에 걸쳐 분배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교육법 제5장 제32조).

코문에서 제공하는 공립의 성인교육은 의무교육(기초학교), 상급중등교육(고등학교), 직업훈련교육으로 이루어지는데, 이중에서도 직업훈련교육은 성인들이 자신의 직종에서 보다 심화된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의의가 있다(교육법 제11장 제1조). 이러한 성인교육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교육법 제15장 제6조) 학생들에게 무상으로 제공된다. 따라서 교과서, 필기도구, 작업도구, 작업복 그리고 이외 학생의 필요에 의해 스스로 지출된 비용 등에 대하여 지자체가 재정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교육법 제11장 제5조).

스웨덴에서는 고등교육기관도 대학원과정까지 모두 무상으로 이루어진다. 유학생의 경우에는 2011년 가을학기부터 EU/EEA 출신 학생에게만 무상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고등교육에서의 무상교육은 학비 지원뿐만 아니라 학습에 필요한 재정보조를 포함하고 있다.¹⁹⁾ 학생에 대한 재정보조는 스웨덴학생지원국가위원회(Centralastudiestödsnämnden/Swedish National Board for Student Aid)에서 관장한다. 고등교육의 학비가 무상이므로 학생에 대한 재정보조는 생활비와 교재비용 부분에서 이루어진다. 만 54세 미만의 사람은 누구나 최대 240주에 해당하는 생활비와 교재비용을 보조받을 수 있다. 이러한 재정보조에는 장학금과 학자금대여가 포함된다.²⁰⁾

한편, 스웨덴 학생이 외국에서 유학을 하는 경우에도 학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학생이 스웨덴 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자신이 유학하고 있는 교육기관이 스웨덴고등교육청(Högskoleverket/Swedish National Agency for Higher Education)으로부터 인정받은 교육기관이어야 한다. 지원금 액수는 전공에 따라 다르며, 등록금이나 보험료, 여비등도 재정지원에 포함된다. 그러나 스웨덴에 유학을 온 유학생이나 교환학생의 경우에는 재정지원을 신청할 수 없다.²¹⁾

Ⅲ. 학업중단학생 지원체제

1. 학업중단학생 지원 배경

스웨덴은 최근 교육영역에서 해결해야 할 주요 문제 중의 하나로 ‘영 아웃사이더(young outsiders)’의 존재를 들고 있다. 영 아웃사이더란 의무교육 이후에 학교교육을 받고 있지도 않고, 직업을 갖고 있지도

19) <http://www.hsv.se/highereducationsweden/funding/studentfinance.4.28afa2dc11bdcdc557480002422.html>

20) 이윤미, 전계논문, 55쪽~56쪽

21) 이윤미, 전계논문, 56쪽

않고, 적극적으로 직업을 찾고 있지도 않은 한 마디로 체제밖에 존재하는 청소년들을 일컫는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급히 해결할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학업중단학생이라고 할 수 있다.

스웨덴 국가보고서(SOU, 2003)에 따르면, 영 아웃사이더는 1990년대 급증하였고 특히 16~19세 청소년들이 크게 증가하였다. 16~24세 청소년 중 27,000여명이 아웃사이더로, 비자발적으로 교육시스템과 노동시장 외부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들 중 대다수는 상급중등학교에서 중도 탈락한 학생들이고 특히 직업계열 프로그램에 있는 학생들이다. 직업계열에 있는 학생들은 주로 노동자 계급의 자녀이거나 이민자들의 자녀들이라는 점에서 평등을 교육의 제1원리로 채택하고 있는 스웨덴에서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재생산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로서 스웨덴 정부가 해결해야 할 우선과제 중 하나가 되고 있다.

2. 학업중단학생 지원 법률

가. ‘결정할 능력과 복지 권리(Makt att bestämma-rätt till välfär (Regeringens proposition 2004/05 : 2)/the power to decide-the right to welfare/)²²⁾

스웨덴 의회에서는 2004년 12월 ‘결정할 능력과 복지 권리’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에서는 코문에게 의무교육을 받은 20세 이하의 청소년들이 고용실태에 관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어야 할 책임이 있음을 명시하였다. 이들에 대한 정보를 확보하는 목적은 기초자치단체가 이들에게 적절한 개인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법안에서는 이들에 대한 개인 정보가 반드시 수집되어야 하고 코문들은 자신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만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2) Regeringens proposition 2004/05 : 2 : Makt att bestämma - rätt till välfärd ; 동 법률에 대한 영어문헌은 검색이 불가능하며, 스웨덴어로 된 원문은 <http://www.regeringen.se/sb/d/108/a/29806>에서 검색이 가능하다.

동 법률은 총 16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은 의회 해결을 위한 제안(Förslag till riksdagsbeslut), 제2장은 교육법 개정 법률 초안(Förslag till lag om ändring i skollagen), 제3장은 사례와 대응(Ärendet och dess beredning), 제4장은 배경(Bakgrund), 제5장은 국가의 청소년 정책 대상(Den nationella ungdomspolitikens målgrupp), 제6장은 청소년 정책의 미래(Den framtida ungdomspolitik), 제7장은 모니터링, 분석 및 정보 획득(Uppföljning, analys och kunskapsinhämtning), 제8장은 청소년 조사(Ungdomsforskning), 제9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정책(Ungdomspolitik i kommunerna), 제10장은 위원회의 청소년활동(Ungdomsstyrelsens verksamhet), 제11장은 국제적 협력(Internationellt samarbete), 제12장은 청소년지원 프로그램(Ungdomspolitiskt handlingsprogram), 제13장은 2000년~2003년간의 청소년 정책의 평가(Redovisning av ungdomspolitik åren 2000-2003), 제14장은 법령의 발효(Ikraftträdande), 제15장은 경제적 영향(Ekonomiska konsekvenser), 제16장은 헌법상의 코멘트(Författningsskommentar)로 구성되어 있다.

스웨덴 교육·연구부는 2002년도에 국가교육청(National Agency for Education)에 영 아웃사이더에 대한 정보를 코문이 확보하고 있는지 확보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들에게 어떤 개인적인 프로그램들을 제공하고 있는지 등 코문의 영 아웃사이더에 대한 ‘후속조치에 대한 책임(follow-upresponsibility)’을 파악하는 조사·연구를 위임하였고 최종보고서를 2006년에 발간하였다.

나. 개인정보처리법(Personal Data Act : 2006/39)²³⁾

영 아웃사이더에 관한 정보를 다루는 코문의 활동으로서의 개인정보처리에 관한 법률(2006 : 39)이 2006년 3월 15일에 효력을 발생하여

23) 동 법률에 대한 영문 원문은 <http://www.government.se/sb/d/3288/a/19577> 에서 검색이 가능하다.

시해되고 있다. 동 법률의 목적은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다.

동법률은 전체 6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51개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은 일반조항, 제2장은 범위, 제3장은 등록된 개인정보, 제4장은 정보처리 과정상의 안전, 제5장은 제3의 국가에 대한 개인정보의 전달, 제6장은 감독기관에의 통보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존의 개인정보법(1994 : 204)과 관련해서 동 법률은 개인정보 처리를 제한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²⁴⁾ 동 법률에 따르면, 개인정보(이름, 주민번호), 연락처정보(주소, e-mail 주소, 전화번호), 교육, 직업, 서비스 형태의 현재 고용과 고용예정 직, 코문으로부터 지원받은 개별조치, 시작지점 등이 등록되도록 하고 있다.

국가교육청의 분석에 따르면, 2005년 가을 ‘코문의 후속조치 책임’에 속한 청소년은 32,556명에 달하였으며, 이들 중 거의 대부분인 90%가 고등학교에 입학했지만 중도 탈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들 중 약 절반인 15,626명은 고등학교 3학년을 시작했지만 끝마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한 코문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한 전제조건이 되는 것이 이들에 대한 정확한 정보의 획득에 있으며, 이를 위한 법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 동 법률이라고 할 수 있다.

3. 학업중단학생 지원 프로그램²⁵⁾

스웨덴의 코문은 학업중단 학생에 대한 정보를 획득한 후 이들의 학업과 직업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개별적 프로그램들을 마련해 놓

24) 동법 제9조 참조

25) 정혜령, 전계보고서, 35쪽~37쪽 참조

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개인 프로그램(IV)”과 “코문의 청소년 프로그램(KUP)”이다.

가. 개인 프로그램(IV)

고등학교에 다니지 않는 청소년들에게 제공하는 코문의 첫 번째 조치는 개인 프로그램(IV)의 제공이다. 2006년 7월부터 개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들에게는 전일제 교육이 제공도록 하는 개정 법률이 효력을 발휘하였다. 이처럼 전일제 교육을 실시하는 배경은 개인 프로그램을 시작한 학생들이 고등학교 교육을 끝마치도록 지원하려는 것에 있으며, 이를 위해 중앙정부는 매년 코문에게 45억 크로나를 지원하고 있다.

개인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방식은 코문마다 다르다. 개인 프로그램에서의 수업은 실습과 결합되어 제공되기도 하고, 어떤 코문에서는 수업이나 실습 외에 다른 활동을 제공하기도 한다. 전일제 실습의 경우 과거의 국가 교육프로그램에서 방향을 바꿔 새로운 것을 시작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조치이다. 실습의 장소를 마련하는 것은 코문마다 차이가 있어서 코문의 크기와 코문 내 노동시장의 규모, 그리고 학교와 지역 사회와의 관계에 따라도 다르다. 좀 작은 규모의 코문들에서는 개인프로그램의 학생들을 위한 실습 장소를 마련하는데 사실상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전일제 학업이나 실습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학생들에게는 다른 활동들이 제공되기도 한다. 그 활동 내용은 코문마다 다른데, 어떤 곳은 학생들이 목공소를 1주일에 5일 사용할 수 있게 하기도 하고, 다른 코문에서는 1주일에 2번 학생들에게 코문의 청소년 센터(Youth Centre)에서 특별활동을 하도록 제공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학생들은 특히 협동훈련을 배우고, 연극, 음악, 사진, 재봉과 같은 기타 창작활동을 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나. 코문의 청소년 프로그램(KUP)

스웨덴의 광역 자치단체인 각 랜(LAN)의 노동위원회의 협약에 따라 1995년부터 코문들은 코문의 청소년 프로그램(KUP)을 만들 수 있게 되었다.

KUP는 고등학교나 이에 상응하는 교육을 받지 않는 20세 이하의 실업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고용 프로그램으로서, 실직된 지 100일 이내에 직업소개소에 등록된 청소년들에게 고용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교육적 요소가 결합된 실습의 개인성과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러한 고용은 전일제로 시행되고 있다.

KUP의 목표는 청소년들에게 학업과 직업으로 계속 이끌어가는 교육경험이나 직업체험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에 있다. 2005년 2월 1일부터 직업소개소는 구직활동과 안내를 시작했는데, 코문의 후속조치 책임 담당자와 협의하여 청소년 개인들의 고용계획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코문은 KUP에서 학생들이 얻을 수 있는 지식과 기술에 어떤 것이 있는지에 관한 증명서를 발행하며, KUP에 참여한 청소년들은 고용된 것인 만큼 보상을 받게 되는데 그 보상은 코문이 지불하도록 하고 있다.

고등학교 교육을 마치지 않은 청소년들은 한 달에 1,300크로나를 보상 받게 되고 고등학교를 끝마친 학생들에게 주는 보상액수는 코문이 결정하기 때문에 코문마다 다르다. 중앙정부는 코문에게 KUP에 대한 보조금을 지불하고 있다.

IV. 이민자 가족 및 아동교육 지원체제

1. 이민자들을 위한 교육지원 배경

스웨덴에서는 최근 십여 년 동안 많은 이민자들의 유입으로 인해 여러 가지의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이는 최근의 우리나라에서

의 많은 외국인 근로자들의 유입과 다문화 가정의 탄생으로 인한 사회 문제의 발생한 유사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스웨덴에서 1960년대 이후 외국에서 출생한 인구의 비율은 12%로 증가하였고, 총 인구 900만 명 중 약 20%에 해당하는 180만 명이 스웨덴 이외의 국가에서 태어났거나 적어도 한 부모가 외국인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스웨덴 이민 인구의 분포를 보면 1960년대에서 70년대까지는 핀란드에서 이주해온 이민자가 대부분이었으나, 1980년대에는 전체 이민자중 북유럽 국가출신이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하였고 유럽 이외의 지역 이민자가 증가하였다. 1990년대 이후에는 비유럽 국가의 이민자가 대부분이고 그 중에서도 난민들의 유입이 증가하였다.²⁶⁾

이러한 스웨덴 이민자들이 겪는 문제는 경제적·사회적·교육적 문제 등에서 나타나고 있다. 먼저, 경제적으로 이민자들은 심각한 실업 문제에 직면해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 특히 이민자 부모들의 실업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그 자녀들의 교육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와 같은 이민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은 사회적 문제로 연계되어 나타난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민자들은 결국 취약 지역에 집단적으로 거주하게 되고, 그 결과 그 자녀들은 학교나 교육 시설이 부족한 지역에서 교육을 받을 수밖에 없어 교육적 소외가 발생하게 된다. 그리고 1990년대 이후의 사립 자율학교의 발생과 학교 선택제의 도입으로 최근에는 순수 스웨덴인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와 이민자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가 점차 분리되는 경향이 발생하고 있어, 전통적인 통합교육의 원칙 및 평등교육의 원칙이 붕괴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취약지역 학교의 교육여건의 부실뿐만 아니라 이민자들 또는 그 자녀들이 겪는 또 다른 교육적 문제는 언어의 사용에 있다. 스웨덴에서는 스웨덴어와 영어를 공용어로 사용하고 있어 영어가 모국어인 경우에는 언어소통의 문제는 발생

26) 최영렬·황규희, 스웨덴의 평생학습 법·제도,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06, 27쪽~28쪽

하지 않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민자 학생들이 학업성취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스웨덴에서는 이민자 가족과 그 자녀들에 대한 스웨덴어 교육이 여러 가지 면에서 요구되고 있다. 즉 이민자 가족의 스웨덴 사회에의 적응과 통합 및 자녀들의 학업성취도의 향상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이를 위해 스웨덴 정부는 여러 가지의 스웨덴어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2. 이민자 가족 및 아동 스웨덴어 교육지원

이민자들을 위한 스웨덴어 교육은 증가하는 이민자수로 인해 스웨덴에서는 중요한 교육영역이 되고 있다. 그러나 늘어나는 이민자 학생 수에 비해 자격 있는 교사수가 부족하고, 또한 이민자 자녀들이 같은 민족적 학교에 다니는 경우가 많아 스웨덴어 사용의 기회가 적어 언어습득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스웨덴 정부에서는 제2외국어로서의 스웨덴어 과정(Swedish as a second language, SSL)과 이민자 대상 스웨덴어 교육(Swedish for Immigrants : SFI)을 실시하고 있다.

스웨덴 학교에 진학하고 있지만 스웨덴어가 모국어가 아닌 학생들은 하나의 과목으로서 ‘제2외국어로서의 스웨덴어(SSL)’를 공부할 수 있다. 이 과목은 일상생활에서의 의사소통 기술과 스웨덴어로 된 다른 교과목에 대한 학습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된다. 성취수준은 제1언어로 스웨덴어를 공부하는 학생들과 유사하다. SSL을 공부할 권리와 기회는 기초학교와 고등학교에 모두에 적용된다. 과목으로서 SSL은 대학이나 다른 상급중등교육(고등학교) 입학에 위한 자격인 제1언어로서의 스웨덴어 과목에 주어지는 자격과 동일하다.²⁷⁾

한편, 스웨덴 정부는 이민자들에게 스웨덴 언어와 사회에 대한 기초적 지식을 제공하기 위해서 「이민자 대상 스웨덴어 교육(Swedish for Immigrants : SFI)」을 실시하고 있다(교육법 제13장 참조).

27) 정혜령, 전계보고서, 52쪽~53쪽

SFI교육의 실행은 지자체정부에서 책임지며, 지자체정부에서는 성인 교육담당기관, 학습협회(study associations), 민중고등학교(folk high schools), 민간단체와 협력하여 SFI교육을 실시한다(교육법 제13장 제22조). 이 경우 지자체 정부는 고용주 및 직원이 받는 스웨덴어 수업과 수업일정에 대해 단체협약을 맺은 민간단체와 협의해야 한다(교육법 제13장 제4조).

스웨덴어 교육은 모든 이민자에게 제공되며, 이민자들은 스웨덴어 교육기회가 제공되면 늦어도 3개월 이내에 수업에 임하여야 한다(교육법 제13장 제3조). 스웨덴 교육법은 다음과 같은 사람이 교육대상자임을 밝히고 있다. 첫째, 스웨덴어에 대한 기초 지식이 부족하며 지자체 내에 거주하는 사람, 둘째, 핀란드에 거주하지만 스웨덴 국경과 가까운 지자체 내에서 영구적으로 일하며 스웨덴어에 대한 기초지식이 부족한 핀란드인들, 셋째, 스웨덴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스웨덴 정부가 스웨덴어 교육을 제공받는 것을 허가한 사람을 들고 있다(교육법 제13장 제6조). 그러나 예외적으로 기초 스웨덴어 수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지 않는 덴마크어 또는 노르웨이어를 쓰는 사람은 참여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

이민자에 대한 스웨덴어 수업은 무료로 제공되며 교과서와 현대식 교육을 위한 지원을 무상으로 지급받는다. 이민자 스웨덴어 수업을 책임지는 단체는 학생에게 개인적인 교육지원을 제공할 것인가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반면에 학생 본인이 직접 구비해야 할 소액의 교육 준비물이 요구되기도 한다.

스웨덴어 교육은 교육과정의 형태로 제공된다. SFI수업시간은 총 525시간이지만, 학습자의 지식 등을 고려하여 조정된다. 비문해자 외국인에게는 일반적인 SFI 교육 외에 기초성인교육(읽기와 쓰기)이 함께 제공된다(교육법 제13장 제6조). 그리고 만16~19세 이민학생들을 위해서는 SFI교육이 고등학교에서 제공되는 개별 프로그램(individual programme)

과 접목되어 제공된다. 보통 SFI교육은 3단계로 나누어지는데, 1단계는 비문해·저학력 이민자들을 위한 교육이고, 2단계와 3단계는 1단계 학습자들 보다 빠른 속도로 학습이 가능한 이민자들을 위한 과정이다.

이민자 스웨덴어 교육을 시작한 사람은 학업을 이수할 자격이 주어지며, 학생 스스로 만족할 만한 성과를 내지 못한 경우 학교당국 또는 학생 스스로 교육을 종료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민자 스웨덴어 수업이 종료된 학생, 또는 자진하여 종료한 학생은 다시 교육에 참여할 기회가 주어는 데, 다만, 특수한 이유가 이를 뒷받침해야 한다(교육법 제13장 제11조). 이민자의 스웨덴어 수업 적합성과 관련한 문제는 코문의 교육위원회가 결정하며, 교육위원회는 학생이 교육을 중단해야 하는지 여부 및 재개해야 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한다.

3. 이민자 아동의 모국어 수업 지원

스웨덴 정부는 1977년에 이민자들에게 스웨덴어뿐만 아니라 모국어를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마련하였다. 법적으로 취학전 학교에서 ‘모국어지원(mother tongue assistance)’를 제공하고, 의무교육에서 ‘모국어 교수(mother tongue instruction)’를 진행함으로써 가정에서 스웨덴어를 사용하지 않는 모든 아동에게 특별한 지원으로서 학습지원을 제공할 것을 규정하였다. 스웨덴 정부는 이민자들이 모국어를 지속적으로 발달시키는 것은 이들을 통해 문화적 다양성을 촉진하고 이들의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²⁸⁾

취학전 학교에서 제공되는 모국어 지원서비스는 보통 교사들을 통해 지원된다. 모국어 교사가 일주일에 두세 번 취학전 학교에 와서 이민자 자녀들을 가르친다. 취학전 학교의 다른 일반적인 활동을 위한 시간과 장소 등을 취학전 학교의 소속 교사들과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28) 정혜령, 전계보고서, 50쪽

스웨덴에서는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5명 이상의 이민자 학생이 모국어로 수업받기를 원할 경우에 이 학생들이 재학하는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요구를 수용해야 할 법적 의무가 부과된다.²⁹⁾ 의무교육을 받는 기초학교에서의 모국어 수업은 일반적으로 취학전 교육에서 이루어지는 것과 비슷한 모습으로 진행되는데, 학교에서 모국어 수업은 언어선택과목 중의 하나로 구성되거나 교과외의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부분은 방과 후에 주로 진행된다. 스웨덴 학생과의 통합수업을 따라가기 힘든 이민자 학생들을 위해서 보조교사(support teacher)에 의해서 스웨덴어나 해당 학생의 모국어로 “학습지도(study guidance)”가 제공된다. 보조교사들은 이민자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특별수업을 제공하거나, 일반 수업상황에서 이 학생들을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상급중등교육에 해당하는 고등학교(upper secondary school)에서는 만 15세 이상의 새로운 이민자 학생들을 위한 「이민자 기초코스(Immigrant introduction course)」를 제공하고 있으며, 스웨덴어가 모국어가 아닌 학생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전까지 스웨덴어를 제2언어로 학습할 수 있도록 「제2언어로서의 스웨덴어 교과목」이 개설되어 운영되고 있다. 이 과목을 이수한 학생들은 대학입학시험에서 일반 스웨덴어 대신에, 제2언어로서의 스웨덴어를 수험과목으로 선택할 수 있다.

이외에도 이민자 학생 비율이 높은 학교에서는 일부 교과목을 학생들의 ‘모국어’로 제공하고 있다. 현재 코문의 약 반 정도가 고등학교에서 모국어로 학생들을 가르치는 수업을 제공하고 있다. 이민자 학생들에게는 모국어 교육을 받을 권리가 인정되며, 출신국의 문화, 역사 등을 다룬 「모국어 과목(Mother Tongue Studies)」이라는 과목이 정식 교과목으로 인정되고 있다.

29) OECD. “What Works in Migrant Education? A Review of Evidence and Policy Options”. OECD Working Paper(EDU/WKP). NO.22. Unpublished document. 2009.

현재 스웨덴에서 모국어 과목은 약 60개 언어로 진행되고 있으며, 대부분 해당언어 국가출신 교사들이 담당하고 있다. 모국어 담당교사 중에는 자국에서 교사자격증을 취득한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들도 다수 있어, 이민자 출신의 교사들을 위한 스웨덴고등교육청(the Swedish national Agency for Higher Education)의 프로그램을 통해 보다 자격 있고 여러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교사들을 배출하고 있다.

모국어 과목을 위한 교재들은 교사들이 출신국으로 부터 확보하여 스웨덴 학교에 맞게 바꾸기도 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스웨덴 학교개선 국가청(Swedish National Agency for School improvement)」에서 몇 가지 언어로 된 교재를 개발하여 제공하기도 한다.

V. 장애학생 교육지원 체제

1. 장애자 교육 지원 배경

가. 장애자 교육의 이념과 현황

스웨덴 헌법에서도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교육은 고용, 주택 등과 함께 복지사회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 스웨덴 헌법 중의 하나인 「정부조직법」에 근거하여 「사회서비스법」과 「차별금지법」 등이 제정되어 있으며, 교육과 관련하여서는 「스웨덴 교육법」이 제정되어 있고, 이를 근간으로 하여 세부 법령으로 「기초학교령」, 「고등학교령」, 「지적 장애자학교령」, 「특별학교령」 등이 정비되어 적용되고 있다. 이러한 법령들은 모두 스웨덴 국민들에게 동등하게 적용된다.

스웨덴에서의 장애자 교육의 기본원리는 장애가 있는 학생을 통상의 일반 학교인 기초학교에 취학시키고 특별한 지원을 필요로 하는 학생에게는 특별지원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통합” 내지 “융합” 교육은 스웨덴의 교육에서 당연한 것이며, “분리”나 “구별” 교육은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필요최소한에 한정되어야 한다. 취학하고자 하는 학

교의 결정과 학교의 교육내용의 결정에 있어서는 당사자인 학생뿐만 아니라 부모도 관여할 수 있다. 그리고 학교의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차별을 받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장애학생들의 학교 입학에 있어 장애를 이유로 특수학교나 지적 장애자 학교 등에 의무적으로 우선 입학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특수학교에 입학기에 앞서 먼저 선행되어야 할 문제는 장애학생에게 “특별한 지원(särskilt stöd)”이 필요한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만약 필요하다면, 먼저 통상의 기초학교에서 지원을 제공하여야만 한다. 이러한 원칙에 의거하여 시각장애 학생이나 지체 부자유자 학생에게는 통상적인 기초학교에서의 통합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농아자나 청각장애 학생 또는 언어장애가 있는 학생의 경우에는 장애를 이유로 농아학교나 지적 장애자 학교에 취학시켜 의무교육을 이수하게 하고 있다. 다만, 이에 대하여 당사자인 학생이나 보호자는 언제든지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농아학교의 경우에는 농아학생 본인이 수화를 제1언어로 사용하기 때문에 통상의 학교가 아닌 “분리된 교육”으로서의 농아학교를 선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당사자 주체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다. 이의신청이 제기되는 사례의 대부분은 주로 지적 장애자 학교와 관련된 것으로서 장애학생에 대한 적절한 지도를 요구하거나, 통상의 학교인 기초학교에서 장애자의 학습수준에 맞는 “특별한 지원(särskilt stöd)”을 요청하여 기초학교가 아닌 지적 장애자 학교로의 취학이나 전학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한 가지 유념할 사항은 스웨덴의 법령 규정상 장애학생을 통상의 기초학교에 취학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명문의 규정은 없다. 다만 일반학생과 장애학생을 구별 없이 당연히 함께 교육해야 한다는 사상이 지배적인 분위기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하겠다. 스웨덴 교육

법 제3장 제3조도 “기초학교는 모든 학생들에게 입학을 허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통합교육의 원칙이 스웨덴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교육원리로 작동하고 있다.

나. 장애인 교육제도의 법제 개관

스웨덴 헌법은 장애를 가진 아동·학생을 포함한 모든 아동·학생에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며, 교육에 있어 장애학생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즉

헌법중의 하나인 정부조직법 제1장 제2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즉, “공권력은 모든 사람의 동등한 가치 내지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를 존중하며 행사되어야만 한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적·경제적·문화적인 복리가 공적 사업의 기본적인 목표로 되어야만 한다. 특히, 건강·고용·주거·교육에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과 사회복지·사회보장을 촉진하는 것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다. (중략)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사람이 사회활동에 참여하고 평등을 달성할 수 있도록 촉진하여야만 한다.(중략)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성별·피부색·국적 또는 민족성·언어·종교·기능성 장애의 유무·성적 취향·나이, 그 밖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의 존재에 관한 상황을 근거로 하는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

또한 제2장 제21조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의무교육에 해당하는 모든 아동·학생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학교에서 기본적인 교육을 무상으로 받을 권리를 갖는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고등교육의 정비에도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1) 교육제도상의 장애학생의 개념

스웨덴 법령의 교육제도와 관련된 “장애”란 「기능성 장애」(funktionshinder)를 의미한다. 여러 가지의 법령상 장애를 정의하고 있는 조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차별금지법 제1장 제5조에서는 기능성 장애란 “출생과 동시에 혹은 출생 이후에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견되는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상해의 결과로 야기된 개인의 영구적인 육체적, 정신적 또는 지적 능력의 기능상의 장애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기능성 장애란 기능성 장애란 신체적, 정신적, 지적인 장애이며 생활에 다양한 형태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기능성 장애는 두 가지로 분류되는데, 그 하나는 휠체어를 사용하는 것과 같이 눈에 보이는 장애를 말하며, 다른 하나는 눈에 쉽게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알레르기,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독서장애(dyslexi) 등의 장애를 말한다. 기능성 장애는 어떠한 질병이나 그 밖의 원인의 결과로서 발생하는 것이다. 그것이 선천적이든 후천적인 부상에 의한 것이든 문제되지 아니한다.

또한 학교교육 법령에도 이와 유사한 규정을 갖고 있다. 즉, 스웨덴 교육법 제1장 제16에서는 “본 법령에서 제정한 지적 장애자들을 위한 내용은 뇌 손상, 외부적 폭력, 병, 또는 자폐증이나 그와 비슷한 증상으로 인해 상당한 지능적 장애를 가진 이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스웨덴 교육법은 지적 장애 학생에게는 지적 장애자 학교를, 농아학생 및 청각장애학생, 언어장애학생에 특수학교를 제공하도록 규정해 놓고 있을 뿐, 각각의 지적 장애, 농아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에 대해서는 규정해 놓고 있지 않다. 위의 규정에서와 같이 지적 장애에 포함될 수 있는 관련 장애를 지적해 규정해 놓고 있을 뿐이다.

스웨덴 학교제도에 있어서 교육법은 교육과정에서 정한 목표달성이 불가능한 학생을 “특별한 지원(särskiltstöd)”이 필요한 학생으로 규정하고, 그들에게 원조조치 프로그램(åtgärdsprogram)을 제공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스웨덴 교육법 제4장 제1조는 “특별한 지원이 학습활동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에게 지원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장애인 학교제도 현황

장애가 있는 아동이 학교에 취학하는 경우에는 두 가지의 방법이 있다. 하나는 장애가 있는 아동만을 취학시키는 특수한 형태의 장애인 학교에 입학하여 통상의 아동들과는 분리되어 교육을 받는 경우이며, 다른 하나는 일반 아동들과 함께 통상적인 기초학교에서 통합되어 교육을 받는 경우이다.

전자의 경우는 장애의 종류에 따라 두 개의 학교로 구별되는데, 다음과 같다. 즉, 농아 학생·청각장애 학생·언어장애 학생 또는 장애의 정도가 심각한 중복장애를 겪고 있는 학생들이 취학하는 특수학교와 지적 장애를 가진 학생들이 취학하는 지적 장애인 학교가 있다.

2011년 현재 스웨덴의 특수학교에는 전국구의 특수학교가 3개교, 지역별 특수학교가 5개교가 있으며, 약 500명의 학생이 취학하고 있다. 주로 농아학생이 취학하고 있으며, 청각장애 학생의 대부분은 통상의 기초학교에 취학하고 있다. 시각장애를 가진 학생이나 지체 부자유자학생들은 적절한 지원설비가 구비되어 있는 통상적인 기초학교에 통합되어 교육을 받고 있다. 따라서 현재 스웨덴에서의 장애인 학생 분리교육은 수화를 제 1 언어로 사용하는 「농아학교」 및 장애가 심각한 중복장애 학생을 위한 학교가 국립학교의 형태로 소수 존재하고 있을 뿐이다.

한편, 지적 장애인 학교는 의무교육의 수준에서 2가지 종류가 있다. 하나는 지적 장애의 정도가 가벼운 장애인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지적 장애인 기초학교(*grundsärskola*)이며, 다른 하나는 지적 장애의 정도가 중간이거나 심각한 장애인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지적 장애인 훈련학교(*träningsskola*)이다. 이러한 의무교육을 수료한 후에는 학생의 권리로서 취학할 수 있는 학교로 지적 장애인 고등학교(*gymnasiesärskola*)가 있다. 그 밖의 제도로는 지적 장애자를 위한 성인교육(*särvux*)이 구비되어 있다.

후자의 경우는 장애아동 학생들이 일반 아동들과 함께 통상적인 기초학교에서 통합되어 교육을 받음으로써, 통상학교의 교육과정을 이수하며, 장애에 따라 학교의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학생 본인이나 학부모의 요청에 의해 특별한 지원이 제공된다.

2. 장애학생 교육지원 법제의 내용

스웨덴의 장애학생 교육의 기본원리는 장애가 있는 아동 및 학생을 통상의 일반학교인 기초학교에서 일반학생들과 함께 교육시키는 것이며, 상황에 따라서 특별한 지원을 필요로 하는 학생에게는 지원을 제공하도록 하는 것이다. 스웨덴 교육법은 학습활동이 곤란한 학생에게는 특별지원이 부여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장 제2조, 제4장 제1조).

이러한 통합교육의 원리는 스웨덴의 장애학생에 대한 교육에 있어서 철저히 지켜지는 기본원칙이며, 일반학생과 분리되고 구별되는 교육은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에 한정되고 있다.

스웨덴에서 장애학생이 일반 학교가 아닌 다른 별도의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지적 장애자 학교나 신체장애가 있는 학생을 위한 특수학교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스웨덴 교육법은 장애학생이 지적장애자 학교 또는 특수학교에 입학하는 것이 적당한가의 여부를 코문의 교육위원회에서 에서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 장애학생이 입학하는 학교와 교육 프로그램의 결정에 있어서는 교육당사자인 장애학생과 보호자의 관여가 반드시 요구된다.(교육법 제3장 제4조). 그리고 해당 지자체의 이러한 결정들에 대하여 이의가 있거나 일반 학생과 달리 차별받고 있다고 여겨지는 경우에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자신의 견해를 반영시킬 수 있다(교육법 제3장 제5조).

또한 의무교육기관인 기초학교의 학생이나 지적 장애자 학교나 특수학교의 학생은 보호자와 학교설립자간의 합의에 의한 결정에 따라 최대 6개월의 기간 내에서 다른 학교로의 입학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

다(교육법 제3장 제6조). 이는 일반 기초학교에서의 적응이 어려운 장애학생이나, 장애학생을 위한 특수학교에 재학 중이지만 다른 일반의 기초학교로의 전학을 희망하는 학생에게 동등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자하는 의미로 해석된다.

학습장애를 가진 학생들을 위한 의무교육은 기초학교와 훈련학교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이 7-16세까지 9년 동안 기초학교에 다니는 것은 의무이며, 의무교육 연령에 해당하지 않는 10학년에도 학습장애를 가진 아동을 위한 의무교육을 시작할 수 있다(교육법 제6장 제3조). 심각한 학습장애를 가진 아동의 경우 기초학교와 다른 훈련학교(training school)를 다니게 된다. 이곳에서는 교과목을 의무학교처럼 개별적으로 분리하여 가르치는 대신에 다섯까지 영역- 창의적 활동, 의사소통, 일상 활동, 체육활동, 사실에 대한 개념(the conception of reality)으로 구분하여 가르치고 있다(기능성 장애자를 대상으로 하는 원조 및 서비스에 관한 법률(LSS/SFS 1993 : 387) 참조).

의무교육인 기초학교를 수료하고 진학하는 상급중등교육의 경우에도 심각한 학습장애를 가진 청소년을 위해 별도로 일반적인 고등학교 교육과는 구별되는 장애학생을 위한 고등학교의 교육이 제공된다(교육법 제6장 제7조). 물론 지적 장애를 가진 학생이라고 하더라도 일반적인 고등학교에서의 수학이 가능하다고 판단되고 보호자가 이를 원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고등학교로의 진학도 가능하다(교육법 제6장 제8조).

지적 장애학생을 위한 고등학교는 일반적인 고등학교와 마찬가지로 직업준비 훈련을 제공하고 개인 프로그램 또한 제공하고 있다(교육법 제6장 제9조). 이곳에 제공되는 프로그램은 3600시간동안 진행되는 것으로 교육기간은 4년으로 구성되어 있다(교육법 제7조 제2항, 제11조 제1항).

VI. 성인교육 지원체제

1. 성인교육 지원배경

스웨덴에서 교육적 측면에서 성인교육은 의무교육부터 고등교육까지 모두를 포함하고 있다(교육법 제11장 제1조). 즉 의무교육을 받지 못한 성인의 경우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는 등 각 개인이 자신에게 필요한 수준의 교육을 모두 받을 수 있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 초등학교 및 중학교 수준의 의무교육을 받지 못한 모든 성인은 의무교육 수준의 성인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고, 고등학교 수준의 교육을 받지 못한 성인은 고등학교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에 코뮌은 이러한 성인들에게 교육을 제공할 책임이 있다(교육법 제1장 제9조).³⁰⁾ 교육수준이 낮은 사람에게 입학의 우선권이 부여되고 교육비는 무료다.

스웨덴 교육법에서 성인교육에 관한 일반적인 조항은 제1장 8조부터 10조까지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스웨덴의 공공 성인교육체제는 크게 코뮌에서 운영하는 성인 교육(komvux), 지적 장애자를 위한 성인교육(särvux), 이민자를 위한 스웨덴어 교육(sfi)으로 구성된다. 그리고 이 밖에 고급 직업교육과 훈련(KY)뿐만 아니라 보충교육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스웨덴에서 성인교육의 목적은 성인 각 개인의 요구사항이 교육을 통해서 달성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교육법 제11장

30) 스웨덴 교육법(Education Act, 1985 : 1100) 제1장 제9조는 성인교육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1항 : 국가성인교육시스템은 성인에게 개인의 희망에 따라 자신의 교육을 보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최소한의 교육만을 받은 사람들에게 우선적으로 직업생활, 문화생활, 정치적 생활에 있어서 자신들의 입지를 강화시킬 수 있는 기회를 줘야한다. 교육은 어느 지역에서 제공되어지냐에 관계없이 각각의 학교형태에서 동등해야 한다. 제2항 : 국가의 성인 교육 활동은 근본적으로 민주주의의 가치에 따라 구성되어야 한다.”

제2조). 특히 다수의 성인교육 참여자는 성인교육을 통해 직장에서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외에도 문화 및 정치부문 생활의 다양화를 경험하고 싶어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각 성인교육은 전국적으로 동등한 질적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교육결과 또한 동등하게 인정받고 있다(교육법 제11장 제17조). 성인교육과정에도 교육법의 원칙이 준수되고 있으며 특히 교육 참여자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집단따돌림 현상 방지 및 인종차별에 관한 법률(1997 : 1212)을 1997년 제정하여 실시하고 있다. 성인교육 중 코문의 성인교육(Komvux)은 코문과 지방정부(county councils/Landsting)가 주요 주체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장애인 성인교육 및 이주자를 위한 스웨덴어 교육은 전적으로 코문이 책임을 지고 있다(교육법 제11장 제8조~제12조). 단 예외조항으로 코문과의 합의를 바탕으로 지방정부가 장애인교육 중 특정교육을 책임지는 법률(1996 : 566)이 운영되고 있다.

2. 공공 성인교육시스템

가. 코문의 성인교육(komvux)

성인을 위한 공공교육시스템의 일부와 코문에서 운영하는 성인교육 시스템은 9년간의 기초학교교육(기초 성인교육)과 고등학교 교육(상급 중등 성인교육)에 상응하는 수준의 기술을 성인에게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1968년에 설립되었다. 고등학교 또는 상급 성인교육 수준의 교육을 받은 교육 참가자를 위한 연속과정도 도입되었다.

코문의 성인교육은 스웨덴 교육법과 코문의 성인교육조례에 따라 제공된다. 2003년 1월1 일에 발효된 조례는 2001년 봄 스웨덴 의회가 승인한 정부의 제안서에 따라 설정된 전략과 목표에 근거하고 있다. 1996년 7월1에 시작하고 2002년에 체결 된 정부의 성인교육 발의는 코

문의 성인교육을 포함한 여러 분야에서의 광범위한 개혁과 갱신 프로그램의 시작을 나타냈다.

코문의 성인교육과 고등학교들은 같은 교육과정을 공유한다. 이들 학교들은 콘텐츠의 측면에서 다를 수 있지만, 상급중등 성인교육과 고등학교에 대한 국가적 수업 시간표의 목표는 동일하다. 또한, 코문의 성인교육은 지방 또는 지역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지역적 기초과정의 설립을 위해 제공된다. 개별적인 개인과정은 상급중등 성인교육 내에서 구성할 수 있다.

조례에 의거하여, 코문의 성인교육의 내용은 개인의 필요와 능력에 따라 구성된다. 성인 학습에 대한 지원은 교육, 감독, 학습지침, 또는 목표달성이나 지식에 대한 평가의 형태에 따라 결정된다. 개별 학습자들은 자신의 능력과 인생의 상황에 따라 개별 학습계획이 제공됩니다.

교육활동은 시간과 장소의 측면에서 접근성과 유연성으로 구분해야 한다. 교육활동들은 학습자들인 성인들이 자신의 직업이나 사회생활과 같은 다른 상황에서 획득한 지식과 기술들을 고려하여 설계되어야 한다. 이것은 그들이 획득한 지식과 기술의 유효성 검사가 중요한 출발점이 되도록 하려는 것이다. 코문의 성인교육은 교육 관계자나 고용주와 다른 정책 분야의 대표 등과 같은 이해 관계자들과 함께 지방 자치단체가 개발 한 인프라의 대표들과의 긴밀한 협력 하에 설계 될 수 있다. 교육활동의 입문과정은 분석, 지도 및 검증을 위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기초 또는 상급중등 수준에서 지역에서 구성할 수 있다.

기초 성인교육의 목적은 성인들이 사회와 직업생활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다. 또한 상급의 교육을 위해 성인을 준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코문들은 일반적으로 의무교육 시스템에서 획득 한 능력이 부족한 모든 성인들에게 기초 성인교육을 제공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상급중등 성인교육의 목적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을 위해 설정한 수준에 상응하는 지식과 기술을 성인들이 습득하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다. 자격을 갖춘 지원자 풀에서 입학지원자를 선별함에 있어, 우선순위는 성인교육 이전에 상대적으로 적은 교육을 받은 사람들에게 주어진다.

이러한 연속적인 교육과정의 목적은 새로운 직업이나 현재의 직업에서 새로운 수준의 지식을 얻도록 성인을 훈련하는 것이다.

코문에서 실시하는 모든 수준의 성인교육에서는 학습자들에게 성적과 인증서가 부여된다. 특정한 경우에는 수료 인증서가 발급되기도 한다.

나. 지적 장애자를 위한 성인교육(särvux)

지적 장애자를 위한 성인교육은 공공 성인교육 시스템의 다른 한 부분이다. 기초 성인교육과 상급중등 수준의 성인교육으로 나누어져 있는 지적 장애자 성인교육은 지적 장애, 후천성 뇌 손상, 자폐증 또는 자폐증 관련 증상을 가진 성인을 위한 교육이다.

2007년 1월 지적 장애자를 위한 기초 성인교육에 대한 권리의 도입을 공표하였다. 이는 의무특수학교가 제공하도록 계획된 기술을 습득하지 못하였지만 이러한 교육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이 시스템은 코문의 성인교육과 같은 교육과정을 따르지만 특별히 채택된 교육시간표를 사용한다.

지적 장애자를 위한 성인교육의 목적은 학습자 자신이 받은 이전의 교육과 경험, 능력을 바탕으로 하여 학습자 개인의 지식과 기술을 확장하는 것에 있다. 학습자는 이렇게 의무 특수학교, 상급중등 특수학교 및 직업 훈련에서 배운 것과 동등한 기술뿐만 아니라 개별 과목에서도 기술을 습득 할 수 있다.

다. 이민자를 위한 스웨덴어 교육(sfi)

이민자를 위한 스웨덴어 교육은 스웨덴의 공공 성인교육 시스템의 일부를 구성한다. 이 교육의 목적은 학습자에게 기본적인 스웨덴어 기술을 제공하는 것이다. 또한 스웨덴어를 읽거나 쓸 수 없는 성인 이민자에게 이러한 기술을 습득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민자들은 일상생활과 사회조직, 직장생활에서 스웨덴어로 말하고 쓸 수 있는 의사소통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다. 이민자를 위한 스웨덴어 교육 또한 학습자들의 상위 교육(further study)을 위해 준비되어야 한다.

코문은 기초 스웨덴어 언어 능력이 부족한 모든 성인 이민자들에게 스웨덴어 언어교육을 제공하여야 한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코문에 거주지 등록 후 3개월 이내에 시작되어야 한다. 학습자들의 교육배경과 사전 지식에 따라 학습자들은 서로 다른 3개의 학습트랙 중 하나에 배치된다. 그러나 학습자가 처음 시작한 트랙에도 불구하고 학습트랙 3에서 D코스로 진급할 수 있는 권리도 갖는다.

3. 고급 직업교육과 훈련(KY)

고급 직업교육과 훈련은 과목 영역의 범위에서 직업훈련에 대한 집단용어를 의미한다. 이러한 훈련은 훈련 프로그램을 설계하는데 참여한 직장생활의 대표자들과의 긴밀한 협력 속에서 구별되며, 그들은 총 훈련기간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직장 훈련 계획인 직장생활 학습을 지원하기도 한다. 훈련 프로그램은 지방 및 지역의 발의에 근거하여 개발되어지며 또한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연수생들이 선택한 직업분야에서 고급 직업자격 획득을 목표로 하는 1년과 3년 기간의 교육과정은 고등학교 교육을 수료한 학생이나 전문적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을 목표로 한다. 고급 직업교육과 훈련에의

참가자들은 고등교육 학생들과 동일한 기준으로 훈련 기간 동안 교육 지원을 받을 자격을 갖는다. 훈련기관은 대학 또는 기타 고등교육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또는 민간교육기관으로 구성될 수 있다. 재정지원은 국가 보조금이나 특별기금의 형태로 적절한 평가에 따라 응용 프로그램에 부여될 수 있다. 전체과정이나 일부 과정은 계약 기준에 따라 구성될 수 있다. 자격을 갖춘 직업훈련 교육을 책임지는 국가기관은 스웨덴 고급 직업교육청(Swedish Agency for Advanced Vocational Education)이다.

4. 보충교육(Supplementary education)

보충교육은 공공 성인교육 시스템의 일부가 아니다. 성인교육의 다른 형태들과는 달리 이것은 사람뿐만 아니라 조직에 있어서 순전히 사적인 소유와 운영으로 이루어진다. 보충교육은 고등학교 교육을 보충하기도 하며 종종 특정과목이나 전문분야에 대해 집중하기도 한다. 특정 과목의 분야로는 미술, 무용, 연극, 음악, 공예, 미디어와 항공기술등이 포함된다. 보충교육에 대한 국가 감독기관으로는 스웨덴 국립교육청(National Agency for Education)이 있다.

제 4 장 스웨덴 교육복지법제 연구의 시사점

지금까지 스웨덴의 교육복지 법제의 현황과 내용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이상에서의 논의를 바탕으로 스웨덴 교육복지법제의 특징 및 우리에게 시사점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I. 교육체제에서의 평등이념의 구현

스웨덴은 국가의 정치체제 및 기본 방향과 관련하여 사회민주주의를 추구하는 전통으로 말미암아 모든 국민은 성별, 연령, 인종, 장애, 사회·경제적 배경, 문화적 배경, 성적 취향 등과 상관없이 누구나 동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교육체제를 통하여 실천해 오고 있다. 따라서 장애인이나 이민자의 학생, 학업중단 학생등과 같은 교육 소외계층을 위한 특별한 조치를 마련하기 이전에 이미 근본적으로 교육체제 자체를 통해 균등한 교육을 제공 받을 수 있도록 구성하고 있어, 교육체제 자체가 교육복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우리의 교육복지 체제를 정비함에 있어서도 시사 받을 점으로 사료된다. 우리의 현행 헌법의 해석상으로도 평등 실현과 경제민주화 및 사회민주주의의 여러 제도의 도입이 가능하고 교육의 평등에 있어서도 교육기회의 평등뿐만 아니라 교육결과의 평등도 추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보다 근본적인 관점에서 교육복지의 실천을 위해서는 교육체제에서의 평등이념의 구현이 요구된다.

II.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의 실질적 보장

스웨덴의 교육이념은 철저한 평등의 추구에 있으며, 이는 스웨덴 헌법과 교육법에도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국민이면 누구나 취학 전 교육에서부터 대학교육을 지나 성인교육에 이르기까지 어떤 교육 프로

그럼에서든 동등한 교육을 제공받을 수 있으며, 결코 개인적인 환경에 따라 교육을 제공 받을 기회가 제한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 헌법도 제11조에서 평등의 실현과 차별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고 제31조에서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교육기회의 평등한 제공에 한정되어 있고 실질적인 교육결과에 평등은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교육기회의 평등도 개인적인 배경과 상황에 따라 결코 동등하게 교육기회가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 부모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에 따라 자녀의 교육의 기회의 차별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결국 자녀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가 결정되는 악순환의 구조가 되풀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러한 사회적 문제점을 교육의 관점에서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제공하는 교육서비스의 체제에서만은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체제가 정비되어야 한다.

Ⅲ. 무상의 공교육 체제의 실현

스웨덴 교육법은 모든 교육은 공교육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으며, 아주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특수한 사립의 자율학교 설립을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코뮌)는 공교육을 실현할 법적 책임과 의무를 진다. 그리고 거의 모든 교육이 무상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취약한 집단의 학생이라 할지라도 동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다. 교육복지의 목적은 경제적으로 취약한 집단의 학생들에게 자신들의 개인적인 환경과는 상관없이 언제든지 자신이 원하는 교육을 동등하게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교육을 제공하는 것에 있다. 따라서 이러한 목적의 달성을 위해서는 가급적 모든 교육이 공교육의 체제로 이루어져야 하며 또한 그 교육이 무상의 교육으로 제공되어야만 가능하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의무교육의 단계에서부터 사립학교에의 의존도가 높으며 특히 높은 교육비 지출이 요구되는 고등교육의 경우에는 사립학교 의존도가 80%에 이르고 있어 경제적 취약집단에게는 교육적 소외가 발생하기 쉬운 구조로 되어 있다. 교육복지의 실질적인 실현을 위해서는 공교육 및 무상교육의 강화를 위한 교육체제의 개편이 요구되며, 특히 고등교육의 공교육체제로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고등학교까지의 의무교육 확대는 교육복지 실현의 측면에서 고무적인 정책결정으로 여겨진다.

IV. 이민자 가족 및 아동에 대한 모국어 교육

스웨덴에는 전체 국민의 20%가 넘는 이민자와 그 가족의 아동들이 존재하고 있다. 이들에 대한 교육을 받을 권리의 보장에 있어서도 인종적, 민족적 배경으로 인한 차별은 존재하지 않으며 스웨덴 국민과 동등한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스웨덴어의 교육과 모국어에 의한 학습내용의 교육은 교육 소외계층에 대한 철저한 사회적 배려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교육복지 전형의 모습을 보여준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현재 상주하고 있는 외국인의 수가 약 12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물론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스웨덴만큼 크지는 않지만, 많은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과 다문화 가정의 탄생으로 여러 가지의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교육 복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며, 특히 한국어 교육의 강화와 함께 가능하다면 스웨덴의 경우처럼 모국어 교육도 함께 병행하는 것이 요구된다. 이러한 교육은 다문화 가정 학생들에게는 그들의 정체성 확립에 도움이 되는 한편 한국의 학생들에게 다문화를 수용하고 다문화 학생에 대한 인종적 차별을 배제할 수 있는 교육의 기회가 되리라 여겨진다.

V. 학업중단 학생 예방을 위한 지원 정책

스웨덴의 경우 정부가 주도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교육안전망을 구축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모든 교육지원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다. 스웨덴의 경우에도 많은 학업중단 학생이 발생하고 있어, 그 예방을 위한 노력과 재 복교를 위한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스웨덴의 경우에서의 특징적인 것은 학업중단 학생들에 대한 문제의 심각성을 정부가 인지하고 학업중단 학생들에 대한 실질적인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 법률의 제정 등 정부가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정확하고 구체적인 정보의 확보는 학업중단 학생의 예방을 위한 교육적 지원을 마련함에 있어 기초적인 전제가 된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의 경우도 현재 학업중단 학생이 약 6만 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지원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먼저 학업중단에 대한 예방교육이 실시되어야 하고, 이미 학업을 중단한 학생들에 대해서는 이들에 대한 사전조사가 요구되고 학업중단 유형별로 직업교육 및 학교교육 등이 제공되어야 한다. 이러한 학업중단 학생에 대한 교육복지의 실현을 위해서는 먼저 그 근거법령의 제정이 요청된다. 현재 국회에 “학교 밖,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상정되어 있어, 이들의 지원을 위한 초석이 마련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법령의 제정에 있어 특히 고려할 사항은 학업중단 학생들의 정보의 수집과 관련하여 개인적인 사생활의 침해와 인격적인 침해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교육적인 차원에서의 정보 수집에만 한정되도록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VI. 통합교육 또는 융합교육으로서의 장애인 교육

스웨덴에서의 장애인 교육제도로부터 시사 받을 점은 장애가 있는 학생을 통상의 일반 학교인 기초학교에 취학시키고 특별한 지원을 필

요로 하는 학생에게만 특별지원을 제공한다는, 이른바 “통합” 내지 “융합”교육을 장애자 교육의 기본원리로 삼고 있다는 점이다. 장애 학생을 장애가 있다는 점에서 일반 학생과 구별하여 특별하게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가 있더라도 일반 학생과 동등하게 취급하고, 예외적으로 특별한 지원이 요구되는 경우에만 장애 학생에게 특별지원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것은 장애 학생을 “분리”나 “구별”하여 교육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라 예외가 된다는 점에서 우리의 장애 학생에 대한 교육적 관점과 다르다. 또한 장애 학생의 교육에 있어서도 입학하고자 하는 학교의 결정과 학교의 교육내용의 결정에 있어서는 당사자인 장애 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가 관여하여 결정할 수 있게 하고 있으며, 학교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거나 차별을 받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의 장애 학생 교육제도에 대한 시사점이 있다고 여겨진다. 장애학생 교육에 대한 근본적인 시각의 변화가 요청된다고 하겠다.

VII. 의무 및 무상교육으로서의 성인교육

스웨덴에서 성인교육은 의무교육부터 고등교육까지 모두를 포함하고 있어, 의무교육을 받지 못한 성인의 경우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는 등 각 개인이 자신에게 필요한 수준의 교육을 모두 받을 수 있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 기초 및 중등학교 수준의 의무교육을 받지 못한 모든 성인은 의무교육 수준의 성인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고, 고등교육 수준의 교육을 받지 못한 성인은 고등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에 지자체는 이러한 성인들에게 교육을 제공할 책임이 있다. 그리고 사회적 배려 차원에서 교육수준이 낮은 사람에게 우선 입학의 권리가 부여되고 교육비는 무료로 제공된다. 이러한 스웨덴의 성인교육 시스

템은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여 많은 노년인구의 증가와 그로 인한 그들의 재취업이 요구되는 현재의 우리나라의 실정에 비추어 볼 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산업의 발전과 사회의 다변화로 인해 끊임없는 자기개발과 새로운 지식과 기술의 습득이 요구되는 직업현장의 수용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언제든지 자신이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서비스의 제공이 요구되고, 이것은 국가가 제공하는 성인교육을 통하여 이루어 질 수 있는 것이다.

VIII. 교육복지 기본법으로서의 스웨덴 교육법

스웨덴의 교육복지법제는 특별히 교육복지법령이라고 소개할 만한 개별적인 법령을 두고 있지 아니하며, 교육에 관한 기본법에 해당하는 스웨덴 교육법에서 교육에 관한 총괄적인 규정을 두고, 여기에서 교육복지에 해당하는 사항 등에 대한 세부적인 규정들을 두고 있다. 교육기본법에 해당하는 스웨덴 교육법에서 이와 같은 교육복지 사항에 대한 총괄적인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교육은 당연히 복지의 하나에 해당하고 따라서 복지적 관점에서 시행되어야 할 정책 사항을 교육법령을 통하여 암시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의 교육복지 법제의 확립에 있어서는 교육 소외계층이나 취약집단에 대한 개별적인 지원체제 및 법령의 마련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먼저 근본적으로 교육체제 전반에 복지의 원리가 구축되어, 누구에게나 학생 개인의 사회적·경제적 환경에 따라 교육적으로 소외되지 않도록 교육제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며, 나아가 헌법 제11조의 평등의 원리가 교육의 측면에서 교육기회의 평등과 교육결과의 평등이 동시에 실현될 수 있도록 교육체제 전반의 원리로 작용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제 5 장 결 론

우리의 교육복지 정책 및 교육복지 법제를 구현함에 있어 스웨덴의 교육복지 정책과 법제는 중요한 시사점을 주고 있다. 스웨덴은 이미 오래 전부터 교육복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교육정책의 중요 부분으로 취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우리는 교육을 복지의 관점에서 보려는 노력이 희박하였다. 우리 사회에서 교육은 인간성장의 과정이라고 해석되고 있지만, 현실적인 측면에서 볼 때, 교육은 개인적으로는 대학입시와 사회적 지위 상승의 도구로 인식되고 있으며, 국가적으로는 인력개발과 국가발전의 원동력으로 간주되고 있다. 다시 말하면, 개인과 국가의 발전을 위한 과정으로 인식하는 발전론적 관점이 지배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풍토에서 개인의 안정된 삶을 추구하고 모든 학생들의 교육기회를 평등하게 보장하면서 사회적인 형평성을 지향하는 복지의 관점에서 교육을 해석하는 것은 등한시 될 수밖에 없다고 하겠다. 최근 들어 저소득층과 소외계층의 문제가 사회적으로 등장하면서 이들에 대한 교육지원 대책이 중요한 정책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우리의 교육복지 정책은 이제 시작단계라고 할 수 밖에 없다.

유아교육과 초등교육을 포함한 기초교육과 생계를 위한 직업교육은 무상 의무교육의 범주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 점에서 국민 기초교육이라고 할 수 있는 초·중등교육은 복지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앞에서 살펴본 스웨덴의 사례가 이를 입증하고 있다고 하겠다. 또한 저소득층과 이주 근로자 자녀 및 다문화가족 학생 등 교육 취약집단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와 지원정책을 펴고 있는 스웨덴의 사례 또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들에 대한 지원은 학교와 지역사회, 가정이 연계하는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이 요구된다. 교육 취약집단의 교육문제는 학교의 노

력만으로 해결할 수 없으며 가정, 민간단체, 지역사회, 중앙정부가 연대하여 공동으로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공동의 협력 체제를 구축하는 정책적인 시도가 모색되어야 한다.

그리고 교육복지 법제의 실효성 있는 정착을 위해서는 먼저 근본적으로 교육체제 자체가 균등한 교육을 제공 받을 수 있도록 구성되고, 교육체제가 교육복지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이념이 철저한 평등의 원칙에서 출발하여야 하며, 결코 개인적인 환경에 따라 교육을 제공 받을 기회가 제한받는 경우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이러한 이념들이 교육복지 법제 속에 내포되어야 한다. 또한 교육복지 법제의 정비에 있어서는 교육 소외계층이나 취약집단에 대한 개별적인 지원체제 및 법령의 제정도 중요하지만, 스웨덴의 경우처럼 교육법령 중에서 상위의 효력을 가지는 교육기본법에 교육복지에 관한 총괄적인 규정들을 마련하는 것도 교육복지 법제의 실효성 확보에 있어 깊은 의미가 있으리라고 생각된다.

참 고 문 헌

- 신광영, 스웨덴의 계급과 교육, 교육비평 제30호, 교육비평사, 2012
- 이윤미, 평생학습과 복지-스웨덴 사례, 교육비평 제30호, 교육비평사, 2012.
- 정혜령, 스웨덴-외국의 교육안전망 사례-, 교육안전망지원센터 정책개발팀(편), 한국교육개발원, 2010
- 최영렬·황규희, 스웨덴의 평생학습 법·제도,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06
- 홍세영, 스웨덴 교육복지의 발달과정과 성격에 관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북유럽 교육복지법제 연구세미나 자료집, 2013. 6.
- 二文字理明, 1990年代のスウェーデンにおけるインクルーシブ教育の状況, 大阪教育大学紀要, 第[IV]部門, 第58卷 第1号, 2009
- 伊藤正純, 二文字理明, スウェーデンにみる個性重視社会, 桜井書店, 2002
- Persson Bengt, Teacher Education for Inclusion Country Report, Sweden, 2011
- OECD. “What Works in Migrant Education? A Review of Evidence and Policy Options”. OECD Working Paper(EDU/WKP). NO.22. Unpublished document. 2009.
- Swedish National Education Agency, Descriptive data on pre-school activities, school-age child care, schools and adult education in Sweden 2011. Stockholm : 2011
- Diskrimineringslag, SFS 2008 : 56

참 고 문 헌

Skolverket, Elever i behov av särskilt stöd, 1998

Skolverket, För arbete med åtgärdsprogram, allmänna råd och kommentarer, 2008

Skolverket, Den individuella utvecklingsplanen, allmänna råd och kommentarer, 2008

<http://www.government.se/sb/d/2034/a/21538>

<http://www.hsv.se/highereducationsweden/funding/studentfinance.4.28afa2dc11bdcdc557480002422.html>

<http://www.regeringen.se/sb/d/108/a/29806>

<http://www.government.se/sb/d/3288/a/19577>

부 록

스웨덴 교육법

【부 록】

스웨덴 교육법

해당 부서 : 스웨덴 교육과학부
제목 : 교육법 (1985 : 1100)
공표일 : 1985년 12월 12일
개정안 : SFS 2000 : 445 에 포함
재발행 : SFS 1997 : 1212

제 1 장 일반 규정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교육

제 1 조 : 국가는 아동 및 청소년에게 다음과 같은 형태로 교육을 제공한다. 취학 전 학급, 기초학교, 일반 학교와 동일한 형태의 청각/시각 및 언어장애, 지적 장애가 있는 학생들을 위한 특수학교와 사미족학교 등의 형태가 있다.

취학 전 학급, 기초학교, 청각/시각 및 언어장애, 정신장애 학생들을 위한 학교, 마지막으로 사미족학교는 국가의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학교교육 제도를 구성하고 있다. 또한, 병으로 인해 국가 내 학교교육제도로는 학업 이수가 불가능한 이들을 위한 특별한 형태의 교육도 존재한다.

또한 국가는 취학전 학교를 지원하는 형태로 교육활동을 제공하며 아동·학생들을 위한 복지를 제공한다. 본 법령의 제 2장 (a) 항목의 조항들만이 이 교육 활동에 적용된다.

제 2 조 : 모든 아동 및 청소년들은 성별, 거주지, 그리고 사회적 경제적 상황에 관계없이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국가 학교교육 제

【부록】

도에서 제공하는 동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국가 내 모든 같은 종류의 학교들은 위치나 지역에 상관없이 서로 동등한 수준의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교육은 가정에서의 교육과 더불어 학생들을 책임감 있는 인격체로, 또한 사회의 일원으로 발전시키는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들을 제공해야 한다. 특수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에게는 특별한 주의와 관심이 요구된다.

학급활동은 기본 민주주의적 가치에 부합되게 이루어져야 한다. 학급활동에 참여하는 모든 학생들이 인간의 내재 가치와 우리가 공동적으로 사는 환경에 대한 존중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학급활동에 참여하는 학생들에게 특히

1. 남녀평등의 정신을 배울 수 있도록 해야 하며
2. 학우를 괴롭히는 것이나 인종차별 같은 잘못된 행동들에 대해 강하게 대응하여야 한다. 법률 (1999 : 886).

제 3 조 : 국가에서 제공하는 학교의 형태와는 상관없이 개인, 법인이 세운 학교도 존재할 수 있다. (정부 보조가 없는 자율학교)

제 4 조 : 각 지방의 자치당국들이 취학 전 학급과 기초학교를 책임지고 제공한다. 지방 자치 당국과 자치 의회가 고등학교 교육을 책임지고 제공한다. 법률 (1997 : 1212).

제 5 조 : 지적 장애 학생들을 위한 학교는 지적 장애로 인해 기초학교나 고등교육을 받지 못하는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학교이다. 지방 자치제 당국이 이를 책임지고 제공한다.

자치 의회가 지적 장애가 있는 학생들을 위한 특정 교육을 지방자치 당국과의 합의 하에 제공하는 책임을 위임받을 수 있다. 법률 (1996 : 566).

제 5 조 : 본 법령은 법률 (1990 : 1477)에 의해 폐지됨.

제 6 조 : 청각/시각 및 언어장애가 있는 학생들을 위한 특수학교는

청각손상이나 난청으로 인해 기초학교나 지적 장애 학생들을 위한 특수학교와 동등한 교육을 받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해 존재한다. 국가는 이러한 청각/시각 및 언어장애가 있는 학생들을 위한 특수학교 교육제공에 전적으로 책임을 가진다.

제 7 조 : 사미족학교란 기초학교를 대체하는 대안학교로, 국가가 책임지고 운영한다.

성인 교육

제 8 조 : 국가는 성인을 위한 교육, 지적 장애자들을 위한 성인교육, 그리고 이민자들을 위한 스웨덴어 교육의 형태로 성인교육을 제공한다.

성인 교육, 지적 장애자들을 위한 성인교육, 이민자들을 위한 스웨덴어 교육은 국가 성인교육제도를 구성한다. 국가 내 성인교육 제도를 보충하기 위한 다른 특별한 형태의 성인교육도 존재한다. 법률 (1993 : 800).

제 9 조 : 국가 성인교육제도는 개개인의 바램과 부합하며 교육 수준을 증진시켜 성인들에게 기회를 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주로 학력수준이 낮은 이들에게 일자리나 문화 정치적 삶에서 그들의 입지를 더 확고히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게 되는 것이다.

국가 성인교육제도 내의 활동들은 기본적인 민주주의 가치와 부합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학급활동에 참여하는 모든 학생들이 인간의 내재적 가치와 우리가 공동적으로 사는 환경에 대한 존중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학급활동에 참여하는 학생들에게 특히

1. 남녀평등의 정신을 배울 수 있도록 해야 하며
2. 학우를 괴롭히는 것이나 인종차별 같은 잘못된 행동들에 대해 강하게 대응하여야 한다. 법률 (1997 : 1212).

【부록】

제10조 : 각 지방의 자치당국과 자치의회가 성인교육을 전적으로 책임진다.

지방자치 당국이 지적 장애를 가진 성인들을 위한 교육과 이민자들을 위한 스웨덴어 교육을 책임지고 제공한다.

자치의회가 지적 장애가 있는 성인학생들을 위한 특정 교육을 지방자치 당국과의 합의 하에 제공하는 책임을 위임받을 수 있다.

법률 (1996 : 566)

국립학교제도의 통칙

제11조 :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국가 학교제도와 국가에서 제공하는 성인교육제도 이 두 제도가 함께 국립학교제도를 구성한다.

제12조 : 국립학교제도의 교육을 책임지고 제공하는 각 독립체는 이 법령을 포함하여 다른 법이나 조례 등의 조항에 부합하는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본 법령의 조항들에 추가로 다른 법령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다루는 조항을 포함한다.

- 교육의 목적과 방법
- 교육의 내용
- 시기에 따른 교육의 범위

제13조 : 국립학교제도를 위한 국가 내 교육청들이 존재한다.

제14조 : 교육항소위원회는 교육제도와 관련된 여러 결정 사안들에 대한 국민들의 항소를 듣는 곳이다.

위원회의 장은 법률가여야 하며 판사경험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이 위원회에서 내린 결정사항에 대한 항소는 불가능하다.

제15조 : 이 법령에서 지방자치 당국은 지역 거주민들에 대해 국가 등록 자치제의 역할을 한다. 국가나 지방자치 당국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에 대하여서는 제16조 항목의 국가 등록법률

(1991 : 481)에 의해 그 사람이 거주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영구 거주지의 지방당국이 되며 영구 거주지가 없을 시에는 임시 거주지의 지방자치단체가 된다.

거주지의 자치의회는 본 지방자치 당국을 포함하는 자치단체 의회가 되어야 한다. 법률 (1991 : 1684)

제16조 : 이 법령에서 제정한 지적 장애자들을 위한 내용은 뇌 손상, 외부적 폭력, 병, 또는 자폐증이나 그와 비슷한 증상으로 인해 상당한 지능적 장애를 가진 이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

특정 기능장애를 가진 이들을 위한 지원과 서비스 법령(1993 : 387)은 교육 이외의 수단들에 대한 조항들을 포함하고 있다. 법률 (1993 : 800).

제17조 : 이 법령에서 일컫는 국외에 거주하는 스웨덴 학생들이라는 함은 보호자가 외국에서 영구적으로 거주하며 부모 중 둘 중 한 명이 스웨덴 국적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을 칭한다.

정부는 국외 거주 스웨덴 학생들의 의미를 넓히거나 재조정하는 규정들을 재 공포 할 수 있다. (법률 1996 : 60)

제 2 장. 지방자치단체의 학교조직

제 1 조 : 모든 지방자치 당국과 자치단체 의회는 하나 이상의 위원회를 지정하여 국립학교 제도를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지방자치제 법령(1991 : 900)에서 위원회 관련 조항이 이에 해당한다. 하지만 제7장 항목 제 18조에서 제22조의 자치단체 관련 조항들은 위원회나 이 법률의 지배를 받는 다른 단체들이 맡고 있는 일들에 관하여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법률 (1994 : 696).

제 2 조 : 학교 내 교육은 각 학교의 교장들이 맡아서 관리한다. 각 학교의 교장들은 교내 일과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받아서 숙

【부록】

지할 수 있도록 한다. 교육이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각 학교 교장들의 의무이다.

연수와 경험을 통해 교육에 관하여 통달한 사람만이 교장으로 지명될 수 있다.

제 3 조 : 지방자치 당국과 자치단체 의회는 그들이 가르칠 내용에 대한 알맞은 훈련을 충분히 받은 교사, 취학전 학교 교사, 레크리에이션 강사들을 선별하여 고용할 의무가 있다.

그러한 훈련을 받을 수 없거나 학생들 관련 특별한 이유가 있을 시에는 예외가 있을 수 있다.

모든 자치당국과 자치단체 의회는 대학원을 졸업한 교사들을 임명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대학원 졸업생들이 고등학교, 성인 고등학교와 그 외 보충교육들을 맡아 교육해야 하기 때문이다. 법률 (1997 : 1212).

제 4 조 : 다음 조항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국립학교 제도의 교사, 취학 전 학교 교사, 그리고 레크리에이션 강사로서 종신직으로 임명될 자격이 주어진다.

1. 스웨덴 교육 자격증이 있는 사람, 정부가 고등교육법령(1992 : 1434) 제1장 제11조에 의하여 제정한 규정에 관한 아동 청소년 교육 관련 대학 학위가 있는 사람, 또는 자신이 가르칠 전문 과목의 고등 교육을 받은 사람.

2. 제4조의 (a)와 제4조의 (b) 부분의 조항들에 부합하는 스웨덴 국립 고등 교육기관이 발행한 자격인증 증명서를 받은 사람.

이러한 자격 요건에 맞지 않는 사람들도 종신직을 부여받을 수는 있으나 이는 자격요건에 맞는 사람이 전혀 없을 시나 특별한 이유가 있을 때, 또는 직위와 관련된 교육을 위한 능력을 갖추고 있을 때, 또는 수업을 맡을 수 있을 것이라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을 시에만 해당된다. 법률 (1999 : 887).

제4조의 (a) : 국외에서 교사 연수를 받은 사람은 연수와 현장 실습 경험이 제4조와 하위조항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자격인증증명서를 받을 수 있다. 법률 (1999 : 887)

제4조의 (b) : 모국어가 스웨덴어, 덴마크어, 페로스어, 아이슬란드어, 노르웨이어 이외의 것일 시에는 스웨덴어에 관한 요구되는 능력을 어느 정도 갖추고 있어야 자격 증명서를 받을 수 있다.

제4조의 (c) : 정부나 정부가 지정한 당국은 제4조와 첫 번째 문단 2 부분에 기재된 내용의 자격증명서 자격요건과 관련하여 더 상세한 내용을 추가해도 된다. 법률 (1999 : 887)

제4조 첫 번째 문단 2 부분의 자격증 발행 관련 문제에 대해 스웨덴 국립 고등교육기관의 결정 사안들에 대한 항소가 행정법원에 들어오게 될 수 있다. 항소행정재판소에 항소하려면 항소권이 필요하다. 법률 (1999 : 887)

제 5 조 : 제4조의 자격요건들을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은 한 번에 최대 1년 동안 교사, 취학전 학교 교사, 레크리에이션 강사로서 고용될 수 있다. 법률 (1997 : 1212).

제 6 조 : 국립학교제도의 연구 및 취업 지도 분야에 영구적으로 고용되기 위해서는 지원자가 그러한 특정 활동들에 필요한 훈련 과정을 끝마쳐야 한다.

이러한 자격 요건들을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은 연구 및 취업 지도 분야에 한 번에 최대 1년 동안 고용될 수 있다.

제 7 조 : 각 지방자치 당국과 지방자치 의회는 교육을 책임지는 인원을 위해 추후 연수나 훈련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각 지방자치 당국과 지방자치 의회는 이 인원들에 대한 추후 계획들 또한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법률 (1993 : 1478)

제7조의 (a) : 지방자치 당국과 지방자치 의회는 교육업무를 맡고 있는 교사, 취학 전 학교 교사, 레크리에이션 강사들이 국립학교 제

【부록】

도 규정들에 대한 필요한 지식을 갖추고 있음을 확인해야 한다. 특히 교육의 목적에 관한 규정들에 대한 지식을 잘 갖추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법률(1999 : 887)

제 8 조 : 모든 지방자치 당국은 자치의회에서 채택한 교육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이 계획이라 함은 지방자치 당국의 학교제도가 추후 어떻게 수립 및 발전할 것인지의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어야 한다. 특히 이 계획은 학교에 관해 제정된 국가목표를 이루어 낼 수 있도록 지방자치 당국이 어떤 방법을 취해야 하는지 이를 중심으로 계획되어야 한다.

지방자치 당국은 학교 계획을 끊임없이 검토하고 평가해야 한다.

제2장 (a) 취학전 교육과 학교아동을 위한 복지

제 1 조 : 각 지방자치 당국은 스웨덴에 거주하는, 그리고 그 지방자치 당국에 영구적인 거주지가 있는 아이들이 취학 전 교육과 복지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책임을 가진다. 이 활동은 민간 부문 사업을 통해 제공될 수도 있다.

취학전 교육이란 아직 학교에 가기에는 나이가 어린 아이들을 위한 교육을 말한다.

학교아동들을 위한 복지는 12세 이하의 아이들 중에서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에 한해서 제공된다. 법률 (1997 : 1212)

제 2 조 : 취학전 교육은 취학전 학교, 가정보육 시설, 보충적 취학전 학교(열린 취학전 학교 : 오픈 프리스쿨)의 형태로 제공된다.

학교아동들을 위한 복지는 어린이집과 가정 보육 시설의 형태로 제공된다. 10살에서 11살 사이의 아이들을 위한 복지는 야외오락 활동의 형태로 제공될 수도 있다. 이 복지 프로그램은 아이들이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온 낮 시간동안, 또는 주말동안 이루어진다. 법률 (1998 : 352).

제 3 조 : 취학전 교육의 목적은 교육활동을 통해 아이들을 교육시키고 보살피기 위함이다. 학교아동들을 위한 복지의 목적은 학교교육을 보충시키고 아이들에게 의미 있는 여가시간과 그들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아이들을 잘 보살피고 좋은 가르침을 줄 수 있도록 교육을 받고 또 그러한 경험이 있는 재원은 취학 전 교육과 학교아동들을 위한 복지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그룹을 결성할 때 적당히 그 수를 잘 맞출 수 있도록 한다. 부지 또한 알맞은 곳이어야 한다. 취학전 교육과 학교아동들을 위한 복지는 아동 개개인의 필요에 그 기반을 두어야 한다. 육체적, 정신적 또는 그 외의 이유들로 인해 불편한 아이들은 특별한 요구가 만족될 수 있도록 적당한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다. 법률 (1997 : 1212).

제 4 조 : 아동이 병원이나 그 외의 기관에서 지낼 시에는 이 기관을 운영하는 독립체가 취학 전 학교나 보육시설에서 받았을 교육과 동등한 수준의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법률 (1998 : 352).

제 5 조 : 취학전 교육과 학교아동을 위한 복지 관련 지방자치 당국의 의무는 위원회 또는 지방자치 의회에서 지정한 위원회에 의해 이행되어야 한다.

지방자치 당국은 취학 전 교육과 학교아동을 위한 복지 관련 지방자치 당국의 의무를 다른 단체와 협력하여 이행하여도 된다. 따라서 한 지방자치 당국이 다른 지방자치 당국을 위해 서비스를 대신 제공할 수도 있게 된다. 회사, 단체, 협회, 또는 개인이 이 조항에 근거하여 당국이 이행해야 할 의무를 대신 이행해서는 안 된다. 법률 (1997 : 1212).

제 6 조 : 취학전 교육과 학교아동을 위한 복지는 부모의 직업이나 학업 그리고 아이 자신의 욕구 등을 염두에 둔 범위 내에서 제공되어야 한다.

【부록】

취학전 교육은 한 살이 넘는 아이들에 한해서만 제공된다. 1살 이하의 아이가 취학 전 교육을 받으려면 제9조의 항목에 해당되어야만 한다. (법률 1997 : 1212).

제 7 조 : 보호자가 취학 전 교육 또는 학교아동을 위한 복지프로그램이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필요한 것들에 대한 내용을 전달받았을 때, 지방자치 당국은 어떠한 이유에서든 지체하지 말고 그러한 장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방자치 당국은 제6조에 해당하는 의무 또한 어떠한 이유에서든 지체하지 말고 이행하여야 하며 이는 아이를 사립유치원이나 사립보육시설과 동등한 수준의 시설에 보내는 것을 의미한다.

지방자치 당국은 취학전 교육과 첫 번째 문단, 두 번째 문단에 해당하는 아이들을 위한 복지시설 장소를 지정해 줄 때 보호자가 원하는 형태의 장소를 충분히 고려할 수 있도록 한다. 법률(1998 : 352)

제 8 조 : 취학전 학교와 학교아동을 위한 복지 시설을 지정할 때는 아동이 사는 곳에서 최대한 가까운 곳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다. 부지와 다른 자원들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데 필요한 요구조건들 또한 고려한다. 여기에서도 보호자가 원하는 형태가 제대로 고려될 수 있도록 한다. 법률 (1997 : 1212)

제 9 조 : 육체적, 정신적 또는 그 외의 이유들로 인해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아이들은 취학전 학교나 보육시설 외에 지원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 시설을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지방자치 당국은 연계 프로그램을 통해 첫 번째 문단에 해당하는 아이들이 어느 장소에 배정받아야 하는지 정할 수 있도록 한다.

지방자치 당국은 아이들이 제대로 된 장소에 배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 거기서 이뤄지는 활동과 목적에 대해 부모에게 잘 인지도시킬 수 있도록 한다.

지방자치 당국의 결정에 의해 가족 보육 주택이나, 보호시설, 또

는 다른 지방자치 당국에 속한 생활시설에서 지내게 된 아동의 경우 이 결정을 한 지방자치 당국이 첫 번째 문단에 상기된 내용 처럼 아동이 필요한 것들을 제대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책임을 가진다. 하지만 이것이 제72조의 사회복지사업법(1980 : 620)에 의해 옮겨질 경우 지방자치 당국의 책임은 중단된다. 법률 (1998 : 352)

제10조 : 합당한 비용이 취학전 학교, 어린이집, 가정보육 시설에 지불되며 지방자치 당국이 정한 기준과 부합하는 금액이어야 한다. 비용은 원가를 초과해선 안 된다.

취학전 학교에 대한 수당으로 요금이 청구되는데 제9조에서 기재한 것처럼 교육활동이 일주일에 15시간이 넘고 일 년에 525시간이 넘을 시에만 해당된다.

제11조 : 개인에 대한 공인 당국의 권력 행사 사례와 관련하여서는 행정절차법(1986 : 223)의 다음 조항들이 적용 된다 :

구두로 발표할 단체의 권리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제14조의 첫 번째 단락

단체의 정보접근권에 관한 제16조와 제17조의 내용

결정에 대한 근거에 관한 제20조의 내용

조판 시의 오류와 그와 비슷한 문제들에 대한 수정 관련 제26조의 내용

하지만 행정절차법에서 제16조와 제17조의 조항들은 취학 전 학교나 보육시설 장소 문제에 관한 다른 지원자 관련 정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법률 (1997 : 1212).

제12조 : 만약 여러 위원회에서 취학전 교육과 학교아동들을 위한 복지에 관하여 지방자치 당국에서 이행해야할 의무를 대신 이행한다면 다른 이들이 요구하는 범위까지 이 위원회가 장소를 정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법률 (1997 : 1212).

【부록】

제13조 : 취학전 학교나 보육시설을 상업적으로 운영하고 싶어 하는 회사, 협회, 재단, 또는 개인이 있을 경우 이러한 시설을 운영할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허가증은 추후 알림이 있기 전까지 효력이 있으며 제한 기간 동안만 유효할 수도 있다.

제5조 항목의 협약에 의해 지방자치 당국이 사립단체에 그 의무를 이수한 교육활동에 관해서는 허가가 따로 필요하지 않다. 법률 (1998 : 352).

제14조 : 이러한 활동들을 맡을 시설을 지을 수 있는 허가는 제13조에서 말한 것처럼 시설이 좋은 품질과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을 시에만 허가된다.

활동의 질과 안전성과 관련한 조건을 만족시킬 시에만 허가가 발행된다.

활동이 완전히 실질적으로 바뀌거나 이전되었을 시에는 새로운 허가를 요청해야 한다. 법률 (1997 : 1212).

제15조 : 제13조에서 지칭한 활동은 활동이 진행되는 지방자치 당국의 감독의 대상이 된다. 지방자치 당국은 활동을 검토하고 정보를 요청할 권리가 있으며 감독에 필요한 문서를 볼 수도 있다. 법률 (1997 : 1212)

제16조 : 제13조에서 언급한 활동내용 중 불만족스러운 것이 있으면 지방자치 당국은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지방자치 당국은 불만족스러운 사항이 아주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경우 또는 당국의 지시가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에는 허가를 폐지할 수 있다. 법률 (1997 : 1212).

제17조 : 지방자치 당국은 활동사항이 제3조에 나와 있는 요구조건들을 만족하고 요금이 터무니없이 높지 않다고 여겨질 때 취학전 학교와 학교아동을 위한 복지를 위해 무상원조를 지급할 수 있다.

이러한 무상원조는 비슷한 활동에 관하여 지방자치 당국에서 지정한 한 학교아동당 비용과 많이 차이하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서만 지불될 수 있다. (법률 1997 : 1212).

제18조 : 상업적인 사립취학전 학교나 학교아동을 위한 복지활동을 운영한 적 있었던 사람은 시설을 운영하면서 얻은 학생 개개인의 사적인 정보를 당국의 허가 없이는 절대 누설해서는 안 된다. 법률 (1997 : 1212).

제19조 : 제14조의 허가 관련 내용과 허가 폐지에 대한 지방자치 당국의 결정에 대해 일반 행정법원에 항소를 제출할 수 있다.

지방자치 당국의 명령이나 제16조 관련 허가 폐지에 관한 결정, 또는 법원이 내린 결정들은 그 즉시 효력을 갖는다.

항소행정재판소에 항소하려면 항소권이 필요하다. 법률 (1997 : 1212).

제20조 : 제13조에서 언급된 활동들을 허가 없이 맡게 되면 벌금형에 처한다.

공소는 활동이 행해지는 지방자치 당국이나 스웨덴 국립교육기관의 동의가 있어야만 실시된다. 법률 (1997 : 1212).

제2장 (b) 국립학교 체제 속의 취학전 학급에 관한 일반규정

제 1 조 : 취학전 학급에서의 교육은 각 아동의 발달과 학습을 촉진시킬 수 있어야 한다. 미래의 학업을 위한 초석을 다질 수 있도록 한다.

필요한 아이들에 한해서 특별한 지원을 줄 수 있도록 한다. 법률 (1997 : 1212).

제 2 조 : 아동의 영구적 거주지가 위치한 지방자치 당국은 스웨덴에 거주하는 아동에 한해 취학전 학급 교육이 실시될 시설을 아동이 6살이 되는 해 가을학기부터 의무교육을 받을 나이가 되기 전까지

【부록】

지 제공해야 한다. 취학 전 학급교육은 일 년에 최소 525시간 이상 이루어져야 한다.

아동이 6살이면 가을 학기 전에 취학전 학급 교육시설에 입학허가를 받을 수 있다.

지방자치 당국은 다른 단체가 당국의 취학전 학급 교육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따라서 한 지방자치 당국이 다른 지방자치 당국을 위해 서비스를 대신 제공할 수도 있게 된다. 회사, 단체, 협회, 또는 개인이 이 조항에 근거하여 당국이 이행해야 할 의무를 대신 이행해서는 안 된다. 법률 (1997 : 1212).

제 3 조 : 취학전 학급 교육장소를 지정할 때에는 아동이 사는 곳에서 최대한 가까운 곳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다. 부지와 다른 자원들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데 필요한 요구조건들 또한 고려한다. 보호자가 원하는 형태가 제대로 고려될 수 있도록 한다. 법률 (1997 : 1212)

지방자치 당국은 아이들이 제대로 된 장소에 배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 거기서 이뤄지는 활동과 목적에 대해 부모에게 잘 인지도시킬 수 있도록 한다. (1997 : 1212).

제 4 조 : 지방자치 당국의 결정에 의해 가족보육 주택이나, 보호시설, 또는 다른 지방자치 당국에 속한 생활시설에서 지내게 된 아동의 경우 이 결정을 한 지방자치 당국이 첫 번째 문단에 상기된 내용처럼 아동이 필요한 것들을 제대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책임을 가진다.

제 5 조 : 취학전 학급 교육은 무료로 제공되어야 한다. 하지만 자치 당국이 합당한 비용을 취학 전 학급, 어린이집, 가정 보육시설에 지불하게 될 수도 있으며 지방자치 당국이 정한 기준과 부합하는 금액이어야 한다. 합당한 비용은 제2조 두 번째 단락에 해당하는 아이들에 관련하여 청구될 수 있다. 비용은 원가를 초과해선 안 된다. 법률 (1997 : 1212).

유아교육수업에 상응하는 교육을 제공하는 사립단체에 대한 승인 관련 문제

제 6 조 : 취학전 학급 수업에 상응하는 교육은 회사, 협회, 재단, 또는 개인에 의해 상업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데 제7조의 조건들에 의해 승인되었을 시에만 가능하다. 교육이 제공되는 지역의 지방자치 당국이 승인 문제를 처리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에는 두 번째 단락의 규정에 의해 처리된다.

제9장 제1조의 두 번째 단락에서 지칭하는 자율학교에서의 취학전 학급수업에 상응하는 교육 허가문제는 스웨덴 국립교육기관에서 다룬다.

지방자치 당국이 제2조 세 번째 단락에 의한 협약에서 사립단체에서 제공하기로 한 교육에 관해서는 승인이 필요하지 않다. 법률 (1999 : 321).

제 7 조 : 제6조에서 언급된 교육은 다음과 같은 조건이 만족될 시에만 승인이 가능하다

1. 아동 개개인의 발전과 학습을 촉진시키며 미래의 학업을 위한 초석을 다진다.
2. 국립학교 제도 내의 교육기반을 형성하는 일반적 목표와 가치가 상응한다.

기초학교와 특수학교가 동등한 가치를 가지며 정부에서 허가를 받은 자율학교에서 제공하는 교육은 첫 번째 단락에서 제시한 요구 조건들을 만족시켜야만 승인이 가능하며 다음 조건들 또한 만족시켜야 한다.

1. 취학전 학급 수업을 받을 권리가 있는 모든 아동에게 기회가 열려 있어야 하며 자율학교라는 기관에 상당한 재정적·운영적 어려움을 겪게 할 염려가 있는 아동은 예외가 될 수 있다.
2. 교육과 입학 그리고 이러한 교육의 추후관리에 관해 정부가 제

【부록】

시한 조건들을 만족시켜야 한다. 법률 (1999 : 321).

제 8 조 : 제6조에서 언급된 교육은 행해지는 지역의 지방자치 당국의 감독을 받게 되고 이를 어길 시에는 제2 단락의 규정에 의해 처리 된다 . 지방자치 당국은 책임지고 교육을 감독해야하며 감독에 필요한 정보와 문서를 요구할 수 있다.

자율학교에서 제공하는 교육은 스웨덴 국립교육기관의 감독 하에 이루어지게 된다. 자율학교들은 국립교육청에서 행하는 학교제도에 대한 감독과 평가활동에 참여할 의무가 있다.

자율학교가 위치한 지역의 지방자치 당국은 그 학교가 제 10조(a) 조항에 의하여 보조금을 받을 경우 교육활동들을 관찰하고 감독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자율학교는 지방자치 당국이 지정한 범위에 한해 지방자치 당국이 맡고 있는 자체 학교제도를 통해 검토와 평가활동에 참여해야 한다. 법률 (1999 : 321).

제 9 조 : 지방자치 당국이나 국립교육청은 자율학교에서 제공하는 교육이 제6조에 언급된 것처럼 더 이상 요구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그 자율학교에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점이 고쳐지지 않았을 때에는 허가를 철회해야 한다.

보조금

제10조 : 지방자치 당국은 제6조에서 언급된 자율학교에서 제공하는 교육을 제외한 나머지 교육과 관련하여 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는 요금이 터무니없이 높지만 않으면 가능하다. 이러한 무상원조는 비슷한 활동에 관하여 지방자치 당국에서 지정한 한 아동 당 비용과 많이 차이하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서만 지불될 수 있다. (법률 1999 : 321).

제10조 (a) : 취학전 학급 수업에 상응하는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국립교육청에 의해 승인을 받은 자율학교는 제10조 (b) 나 제10조

(c) 조항에서 언급된 것처럼 보조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

보조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자율학교의 교육 활동이 해당 지방자치 당국 내 학교제도에서 부정적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경우, 또는 그 학교가 제10조 (d)를 위반하여 벌금을 낼 경우에는 국립 교육청이 보조금을 지급받을 권리에 대해 어떠한 공표를 하지 않아도 된다.

자율학교는 새로이 시작되는 교육에 관해 지급되는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역년으로 4월 1일 전, 교육활동이 시작되기 전 허가 신청을 해 놓아야 한다. 법률 (1999 : 321).

제10조 (b) : 지방자치 당국은 교육활동에 각각의 학생들이 모두 참여한다는 점에서 기초학교 역할에 상응하는 자율학교에게 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 보조금의 액수는 그 학교의 교육 규정과 학생의 욕구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 지방자치 당국의 유아교육 수업 내의 자원 배분시 적용한 규칙과 동일선상에서 이러한 요소들을 고려하여 보조금 액수를 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방자치 당국은 일주일에 15시간을 넘거나 일 년에 525시간을 초과하는 교육 활동들이나 6번째 생일의 가을 학기 전에 학교에 등록한 아동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만약 학생이 특별 지원을 상당히 필요로 하는 처지에 놓여 있다 해도 이 지원으로 인해 기관에 운영상의 또는 재정상 타격을 입게 된다면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법률 (1999 : 321).

제10조 (c) : 지방자치 당국은 지적 장애아동을 위한 학교의 역할과 상응하는 자율학교에 교육을 받는 각 학생을 위한 보조금을 지급한다. 만약 지방자치 당국이 지정한 액수에 학교가 동의하지 않으면 정부가 결정한 액수만큼을 지방자치 당국이 지불하게 된다. 법률 (1999 : 321).

【부록】

제10조 (d) : 제10조에 의하여 자율학교가 보조금을 받는 교육활동은 그 보조금과 관련된 학생에게 무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해당 교육활동이 일주일에 15시간 또는 일 년에 525시간을 초과할 경우 학교는 합당한 요금을 청구할 수 있다. 요금은 6살이 되는 가을 학기에 입학한 아동에게도 청구될 수 있다. 법률 (1999 : 321).

제10조 (e) : 제10조 (a) 조항에 의해 보조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자율학교가 교육받침을 변경하여 해당 지방자치 당국 내 학교 제도에서 부정적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경우에는 국립교육청이 보조금을 지급받을 권리를 폐기시킬 수 있다. 또한 학교가 제10조 (d)를 위반할 경우에도 보조금권리가 폐지될 수 있다. 법률 (1999 : 321).

그 밖의 조항

제11조 : 취학전 학급에 상응하는 상업적 교육활동을 운영하고 있거나 운영해 오고 있는 사람은 시설을 운영하면서 얻은 개개인의 사적인 정보를 당국의 허가 없이는 절대 누설해서는 안 된다. 법률 (1997 : 1212).

제12조 : 제6조 첫 번째 단락의 허가 관련 내용과 제9조 조항의 허가 폐지에 대한 지방자치 당국의 결정에 대해 일반 행정법원에 항소가 제출될 수 있다.

제6조 두 번째 단락의 허가 관련 내용과 제9조 항목의 허가폐지에 대한 국립교육청의 결정과 제10조 (a)의 보조금 권리내용, 그리고 제10조 (e)의 보조금 권리 폐지에 대해 일반 행정법원에 항소가 제출될 수 있다.

지방자치 당국과 국립교육청의 제9조 관련 허가 폐지에 관한 결정, 또는 이와 비슷하게 법원이 내린 결정들은 그 즉시 효력을 갖는다.

지방자치 당국의 명령이나 제16조 관련 허가 폐지에 관한 결정,

또는 법원이 내린 결정들은 그 즉시 효력을 갖는다.

항소행정재판소에 항소하려면 항소권이 필요하다. 법률 (1997 : 1212).

제13조 : 제6조에서 언급된 활동들을 허가없이 맡게 되면 벌금형에 처한다.

공소는 활동이 행해지는 지방자치 당국이나 스웨덴 국립교육청의 동의가 있어야만 실시된다. 법률 (1997 : 1212).

제 3 장 의무교육과 그에 상응하는 교육을 받을 권리

도입 조항

제 1 조 : 국가 내 거주하는 아동들은 이번 장의 조항들이 지시하는 내용에 부합하는 의무교육의 대상이다. 하지만 이러한 의무교육은 영구 거주지가 해외에 위치하거나 아동이 처한 주변 환경으로 인해 학교 등교가 필수적으로 요구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의 아동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의무교육을 받아야할 의무는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국립 학교제도에서 칭한 교육을 받을 권리와 연결되어 있다.

제 2 조 : 아동들은 초등학교, 지적 장애아동을 위한 의무교육학교, 또는 청각/시각 및 언어장애 아동을 위한 특수학교 등에서 의무교육을 마쳐야 한다. 의무 교육은 8장 제10조에 나와 있는 내용에 부합해야 한다. 법률 (1995 : 1248).

제 3 조 : 기초학교는 전반적인 아동들의 입학에 허가해야 한다.

기초학교에서 가르치는 특정 내용을 지적 장애로 인해 받아들일 수 없는 아이들은 지적 장애아동을 위한 학교에 입학하여야 한다.

기초학교나 지적 장애아동을 위한 학교를 손상된 청각이나 난청으로 인해 다닐 수 없는 아동들은 특수학교에 입학한다. 법률 (1999 : 886).

【부록】

제 4 조 : 지역 지방자치 당국의 지적 장애 아동을 위한 학교의 위원회가 의무교육을 받기 위해 아동이 지적 장애아동을 위한 학교에의 입학기간, 입학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한다. 아동의 보호자가 입학 판정에 대하여 관여할 수 있다.

특수학교를 책임지는 설립자가 의무교육을 받기 위해 아동이 특수학교에 입학기간, 입학해야 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한다. 아동의 보호자가 입학판정에 대하여 관여할 수 있다.

지적 장애 아동을 위한 학교에 입학한 아동이 기초학교에 다닐 수 있을 거라 여겨지면 지적 장애아동을 위한 학교 내의 위원회가 보통 학교로 아동이 전학을 가도 될 수 있을지 여부를 결정한다. 이는 특수학교의 경우에도 똑같이 적용되며 특수학교에 다니는 아동이 기초 의무 교육학교나 지적 장애아동을 위한 학교로 전학갈 수 있는지 그 여부를 판단한다.

법률 (1992 : 598).

제 5 조 : 지적 장애아동을 위한 학교 또는 특수학교 입학과 관련하여 제4조의 결정들에 대한 항소를 국립교육청에 제출할 수 있다.

아동의 보호자만이 결정에 대해 항소를 제출할 수 있다.

제 6 조 : 기초학교 교육을 받는 학생이나 지적 장애아동을 위한 학교, 또는 특수학교에서 그와 상응하는 수준의 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은 최대 6개월 동안 시험 삼아 다른 형태의 학교에 입학하여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이는 학교들 간의 동의와 아동의 보호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의무교육개시와 학교 입학

제 7 조 : 아동이 만 7살이 되는 해부터 학교에 의무적으로 입학한다. 특정한 이유로 인해 아동의 보호자가 요구할 시 지방자치 당국은

아동이 의무교육 이수를 만 8살이 되는 해의 가을학기에 시작하게 해도 된다.

교육향소위원회에 두 번째 단락의 문제와 관련하여 항소를 제출할 수 있다. 법률 (1997 : 1212).

제 8 조 : 만약 아동의 부모가 특별히 요구할 시에는 아동이 만 6살이 되는 해의 가을학기부터 의무교육을 받을 수도 있다. 그리고 이 의무교육을 받게 되면 그 아동도 다른 의무교육을 받는 아동들과 마찬가지로 똑같은 권리를 가진다.

제 9 조 : 본 조항은 법령(1991 : 1111)에 의해 폐지됨.

의무교육 이수

제10조 : 역년으로 아동이 만 16살이 되는 해의 봄 학기 말까지는 의무 교육에 해당되며 특수학교에서 의무 교육을 받을 시에는 17 번째 생일까지 해당된다.

만약 그 이전에 의무교육 학교나 동등한 교육을 받는 다른 형태의 학교에서 마지막 해 까지 성공적으로 이수하였다면 비로소 학교 교육이 끝난 것이다.

특별 개인시험에서 동등한 지식수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함으로써 의무교육을 끝마치는 방법도 있다. 이러한 시험은 지역 교육위원회에서 마련한다.

교육향소위원회에 의무 교육 이수와 관련하여 항소를 제출할 수 있다. 법률 (1995 : 1248).

의무교육에의 참여

제11조 :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국립학교 제도 내에서 의무교육을 받는 모든 학생은 아프거나 합당한 이유를 제외하고는 국가에서 제공하는 교육 활동에 참여하여야 한다.

【부록】

의무 교육 대상자인 학생들 중 사적인 문제로 인해 학교를 더 일찍 떠나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 의무교육중인 학생에 대한 제재조치는 학교 출석과 관련이 있지만 그 관련성은 미미한 수준이다.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국립학교 제도 내의 의무교육을 이수하는 그 어떤 학생도 의무 교육을 일년에 190일 이상 또는 하루에 8시간 이상을 받아선 안 되며 가장 낮은 두 학업 단계에 대해서는 6시간을 초과해선 안 된다.

제12조 : 의무교육 대상자에 해당되는 학생 중 보호자의 요청에 의해 의무교육의 주요 활동들에 참여해야 할 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데 이는 특수 상황에 의해 학생이 의무교육에 참여하는 게 불가능해 보일시에만 가능하다.

만약 학생의 보호자의 요청이 들어왔을 때 지역 교육위원회가 이를 검토하며 국립학교 제도에 해당되지 않는 학생의 경우는 학생의 지방자치 당국 내 의무교육을 책임지는 위원회가 이를 맡는다. 일반 행정 재판소에 요청이 거절될 경우 항소를 제출할 수 있다. 항소재판소에 항소장을 제출하려면 항소권이 있어야 한다. 법률 (1996 : 1044).

의무교육 이수 감독

제13조 : 지방자치 당국은 기초학교, 지적 장애자를 위한 학교 등에서 의무교육을 받아야 할 대상자인 학생들이 이를 끝마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이 지방자치 당국에 속하면서도 이러한 의무교육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들을 위해서는 지정 교육을 받게 해야 한다.

특수학교를 책임지는 독립체, 또는 단체는 그 학교에서 의무교육을 받아야 할 대상자인 학생들이 반드시 학업을 끝마칠 수 있도록 한다. 법률 (1992 : 598).

제14조 : 만약 의무교육대상자인 학생 중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국가학교 체제에 특별한 이유 없이 상당한 기간 동안 불참한다면 독립체는 이 문제를 즉시 아동이 속한 지방자치 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보고를 받은 지방자치 당국은 아이가 기초의무교육 학교를 가야하는지 지적 장애자를 위한 학교에 가야할지 판단해야하며 특별한 사유로 인해 특수학교 대상자라고 판단되면 특수학교를 책임지는 독립체에 이를 보고하여 그들이 입학문제를 검토하도록 한다.

일반행정재판소에 입학 문제와 관련하여 항소를 제출할 수 있다. 항소행정재판소에 항소하려면 항소권이 필요하다. 법률 (1995 : 1248).

제15조 : 기초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이 기초학교의 교육을 완료할 수 있도록 책임을 지어야 한다.

제16조 :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국립학교 체제내의 의무교육대상자인 학생이 보호자의 불찰로 인해 학업을 이수하지 못했다면 지역 교육 이사회가 이 보호자에게 의무를 이행하라고 명령하며 벌금 형에 내릴 수 있다. 이 명령은 즉시 효력을 가지며 결정에 대해 항소가 있다 하더라도 효력은 유지된다.

벌금은 징역으로 감형될 수 없다.

지역 교육 이사회의 판단에 대해 일반 행정 법원에 항소가 제출될 수 있다.

항소행정재판소에 항소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항소권이 필요하다. 법률 (1995 : 63)

S. 17 본 조항은 법률(1991 : 1111)에 의해 폐지됨.

S. 18 본 조항은 법률(1991 : 1107)에 의해 폐지됨.

S. 19 본 조항은 법률(1991 : 1111)에 의해 폐지됨.

S. 19 (a) 본 조항은 법률(1991 : 1107)에 의해 폐지됨.

【부록】

- S. 20 본 조항은 법률(1991 : 1111)에 의해 폐지됨.
- 2. 21 본 조항은 법률(1991 : 1111)에 의해 폐지됨.

제 4 장 기초학교

제 1 조 : 기초학교 교육의 목적은 학생들이 공동체 생활을 잘 해 나가기 위해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가르치는데 있다. 미래 고등교육의 초석이 될 수 있는 지식수준을 갖추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학교 공부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들에게는 별도의 지원이 필요하다.

제 2 조 : 교육설계에 학생들의 생각도 포함되어야 한다. 학생들이 여기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와 범위는 나이와 성숙도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제 3 조 : 기초학교는 9개의 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한 학년마다 각 단계를 끝마칠 수 있도록 한다. 각 학년은 가을 학기와 봄 학기로 나누어진다.

기초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은 같은 과목을 들어야 하며 또는 정부나 당국이 정한 커리큘럼에 따른다. 법률 (1993 : 1679).

제 3 조 (a) : 기초학교 교육의 범위(시간표)와 관련된 조항은 부록 3에 나와 있다. 정부 또는 정부가 지정한 교육당국은

1. 필요할 시 시간표의 시행과 관련된 세부적 규정들을 공포한다.
2. 특정 과목과 관련된 시간표 편차와 관련된 규정들을 공포한다.
3. 특별한 이유가 있을 시 시간표에서 어느 정도의 편차는 허용한다. 법률(1998 : 1829).

제 4 조 : 기초학교 교육은 학생들에게 무상으로 제공된다. 학생들은 현대식 교육에 필요한 책, 필기도구, 그 외 필요한 것들을 비용 지불 없이 마음껏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때때로 소액의 준비물을 사야할 때도 있다.

제 4 조 (a) : 기초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무료로 급식을 제공받는다. 법률 (1997 : 1212).

제 5 조 : 이 법령을 통해 기초학교에 다닐 자격이 있는 학생들을 위해 기초학교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지방자치 당국은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이러한 의무는 기초학교 교육을 제공하는 지방자치 당국의 몫이며, 이러한 교육을 받을 자격이 있는 모든 이들에게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방자치 당국들은 서로간의 협의 하에 다른 당국내의 기초학교 교육을 받는 학생을 서로 대신 입학시켜줄 수 있다.

제 6 조 : 각 지방자치 당국은 기초학교 교육 프로그램을 짤 때 학생과의 의사소통이라는 문제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

어떠한 지방자치 당국도 기초학교로 인해 학생들이 집에서 멀리 떨어지게 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지방자치 당국이 이렇게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비합리적으로 보이는 특수한 경우에는 예외가 허용된다. 이 문제를 검토할 때 학생의 나이를 중점으로 고려해야 한다.

모든 지방자치 당국은 학생들을 학교에 배치할 때 다른 학생들의 집과 가까운 학교에 배치될 권리를 침해 하지 않는 한 학생의 보호자들이 원하는 곳과 되도록 일치하도록 한다. 이로 인해 지방자치 당국의 운영적·재정적 문제가 일어나선 안 된다. 법률 (1993 : 800).

제 7 조 : 지방자치 당국은 거리상의 문제, 교통상황, 기능손상 등 특별한 경우 학생들의 교통수단을 무상으로 제공할 의무가 있다.

만약 학생이 학업으로 인해 자신의 집에서 멀리 떨어져 살아야 한다면 그 학생이 속한 지방자치 당국은 특별비용 없이도 학생이 만족스런 조건하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부록】

첫 번째, 두 번째 단락에서 언급된 지방자치 당국의 의무는 다음과 같은 상황들엔 적용되지 않는다.

1. 지방자치 당국이 지정한 학교 외 다른 기초학교를 선택한 학생들
2. 제8조와 제8조 (a)에 해당하는 학생들

제8조 첫 번째 단락에서 언급된 학생들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 당국이 무상 교통 수단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s. 8 조항에 언급된 교육의 비용에 이 교통비용이 포함되어 있다. 법률 (1998 : 1829).

제 8 조 : 지방자치 당국은 운영하는 기초학교에 다른 지방에 살기 때문에 교육을 책임질 의무가 없는 학생이라 하더라도 특별한 이유가 있을 시 그들의 기초학교에 입학시켜야 한다. 해당 지방자치 당국은 학생이 거주하는 지방자치 당국으로부터 학생의 교육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다.

그런 학생을 학년에 입학시킬 결정을 내리기 전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지방자치 당국은 그 학생의 본래 지방자치 당국에서 서류를 요청할 수 있다.

첫 번째 단락에 언급된 쓴 비용에 대한 보상을 받을 지방자치 당국의 권리는 정부 판단 하에 특별 교육 내 학생들과 관련해서도 이러한 권리가 적용된다. 이 비용을 정할 때는 보조금 액수를 고려해야 한다. 법률 (1998 : 1829).

제 8 조 (a) : 지방자치 당국은 제5조 세 번째 단락과 제8조에서 언급된 것을 제외하고 보호자의 요청이 있을 시 다른 지방자치 당국에서 자신의 당국내의 기초학교로 학생을 입학시킬 수 있다. 이러한 경우 해당 지방자치 당국은 학생의 본 지방자치 당국으로부터 보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 보상은 교육조항과 학생의 필요사항들을 염두에 두고 정해져야 하며 기초학교간의 자원분배 원칙과 동일선상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만약 학생에게 별도의 지원이 필요

하다면 본래의 지방자치 당국은 이러한 지원으로 인해 상당한 재정적 문제가 야기 될 거라는 판단이 되면 지원을 위한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법률 (1996 : 1044).

제 9 조 : 기초학교에 어느 해 입학한 사람은 결심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그 학년 동안 학교에 머물러야 한다. 단 한 단계만 남기고 마음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이 마지막 단계를 위해 학생은 학교에서 학업을 마쳐야 한다.

첫 번째 단락의 둘째 문장에 언급된 내용과 관련하여, 학생이 다니는 학교가 위치한 지방자치 당국은 학생의 본 지방자치 당국으로부터 학생이 받을 교육비용과 관련하여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 법률 (1993 : 800).

제10조 : 만약 기초학교에 다니는 학생이 전반적 교육수준은 출중하나 학년이 끝날 동안 마지막 단계를 제대로 이수하지 못한다면 학교 졸업 후 최대 2년 동안 마지막 단계를 끝마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제11조 : 제7조 두 번째 단락의 집에 살지 않는 학생관련 내용과 제8조 첫 번째 단락의 전학관련 내용, 그리고 제10조의 학업을 끝마칠 권리에 관한 내용에 대해 지방자치 당국이 내린 결정과 관련하여 교육향소위원회에 학생이나 그들의 대표가 향소를 제출할 수 있다. 법률 (1993 : 800).

제 5 장 고등학교

일반 조항

제 1 조 : 이 장은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국립학교 제도와 관련된 규정으로 만 20살이 되는 해 역월로 6월 전까지 기초학교 교육 및 이와 동등한 수준의 학업을 마친 청소년들이 시작할 교육에

【부록】

관한 내용이다. 바로 이 교육이 고등학교 교육에 해당한다.

제13조에서 지적 장애 특수학교의 학생들의 고등학교 입학에 관련된 규정들을 찾아볼 수 있다.

본 장의 조항들은 정부의 특별한 명령이 있을 때를 제외하곤 이 나라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에게만 적용된다. 법률 (1992 : 598)

제 2 조 : 학생들은 자신들의 교육내용 구성에 영향을 미칠 자격이 있다.

제 3 조 : 고등학교 교육은 3학년내로 끝나쳐야 하는 국가적 학업과정, 특별 학업과정(이것도 3학년 내로 끝나쳐야 함), 개별 학업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지역 교육이사회가 국가적 학업과정 또는 특수 학업과정 기간을 3년 이상으로 늘릴 수도 있다. 정부의 허가 아래에 위원회가 3년보다 더 짧은 시간 내로 단축시킬 수도 있다.

국가적 학업과정은 각기 다른 전문 과목들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국가적 차원 또는 지역적 차원에서 결정될 수 있다. 국가가 이 규정과 관련하여 세부 사항들을 추후 발표할 수 있다. 법률 (2000 : 445).

제 4 조 : 국가적 학업과정은 미래의 학업을 위한 초석을 다질 수 있도록 하고 취직을 위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다.

국가적 학업과정 관련 세부 정보는 부록 1에 나와 있다.

각 지방자치 당국은 국가적 학업과정 관련 내용과 특수 또는 개별적 학업과정에서 교육받을 가능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법률 (1999 : 180).

제 4 조 (a) : 특수 학업과정은 교육수준에 있어서 국가적 학업과정과 동등해야 하며 위의 국가적 학업과정 내용과 같이 미래의 학업을 위한 초석을 다지고 취직을 위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학생 개인을 위해 학업과정이 고안될 수도 있고 그룹을 위해 고안될 수도 있다.

지역 교육위원회는 각 특수 학업과정 계획을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만약 그룹 학업과정이라면 이 학업 과정의 목적을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법률 (1999 : 180).

부록 2 일정표. 법률 (1999 : 180).

제 4 조 (b) : 개별 학업과정은 학생이 국가적 학업과정과 특수 학업과정 내에서의 학업을 도울 수 있는 방향으로 주로 나아가야 한다.

개별 학업과정은

1. 국가적 학업과정과 특수 학업과정 내에서의 공부 방향에 주로 맞추어야 한다.
2. 견습직을 통해 청소년이 취직을 위한 고등교육 과목과 관련된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학생의 학문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한다.

첫 번째 단락에서 언급된 목적을 가진 개별 학업과정은 그룹학생들을 위해 설계될 수 있다.

학업과정 주도의 개별 학업과정은 그룹 학생들을 위해 설계된다.

개별 학업과정 내의 교육은 지역 교육위원회에서 정한 교육계획에 따라 진행되어야 한다. 두 번째 단락에서 언급된 개별 학업과정과 관련하여 정부가 특정과목을 커리큘럼에 포함시키도록 지시할 수도 있다. (1999 : 887).

제 4 조 (c) : 국가적 학업과정과 특수 학업과정의 수업시간은 고등교육 학점을 통해 알 수 있다. 국가적 학업과정과 특수 학업과정의 범위와 관련된 특수조항(학점계획)은 부록 2에 나와 있다. 정부 또는 정부가 지정한 당국은 이러한 학점계획의 시행과 관련하여 세부 조항을 추후 발표할 수 있다.

각 과목 수업은 하나 또는 여러 과정의 형태로 이루어진다. 각 과정이 몇 학점을 차지하는지 지정해야 한다.

각 과정을 끝마친 후 학생은 학점을 받게 된다. 이 학점을 통해

【부록】

학생이 최소 필수학점을 만족시키면 지방자치 당국이 학생에게 추후의 교육을 강요할 수 없게 된다. 법률 (1999 : 180).

제 4 조 (d) : 예술, 과학, 시민학 과목을 듣는 학생들은 60분짜리 수업을 최소 2150분 강의를 들을 수 있으며 그 외의 국가적 학업과정에 속한 학생들은 60분짜리 수업을 최소 2370분의 강의를 들을 수 있다.

정부 또는 정부가 지정한 당국은 특수 학업과정의 수업 시간 관련된 조항과 첫 번째 단락의 조건에 맞는 예외 사항들을 추후 발표할 수 있다. 법률 (1999 : 180).

국가적 프로그램의 교육 제공

제 5 조 : 각 지방자치 당국은 첫 번째 단락에 나와 있는 지방자치 당국에 속한 모든 청소년들에게 청소년들이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시킨다는 가정 하에 국가적 학업과정 교육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

1. 기초학교 또는 이와 동등한 수준의 학업을 마지막 학년까지 끝마쳤으며 스웨덴어, 또는 제2외국어로서의 스웨덴어, 영어, 수학 과목에서 합격점을 받아야 한다.
2. 이전에 고등학교 교육의 국가적 학업과정에서 학업을 마치지 못하였을 경우, 또는 국제학위(IB)가 있을 경우.

고등학교 교육 제공시 국가적 학업과정은 종합적으로 선별되어야 한다. 여러 학업과정의 장소와 선택 사항들을 학생이 원하는 방향과 최대한 맞출 수 있도록 한다. 이는 학업과정 내 여러 선택사항들과 관련된 문제에도 적용된다.

고등학교 교육 제공이라 함은 지방자치 당국 또는 협의 하에 지방의회가 제공하는 교육을 말한다. 협력하여 국가적 학업과정을 제공하는 둘 이상의 지방자치 당국이 해당 학업 과정의 협동 지부를 구성한다. 특정 교육과 관련하여 자치 의회와 협력 계약을

맺은 지방자치 당국들이 해당 학업 과정의 협동 지부를 구성한다. 정부 또는 정부가 지정한 당국이 특정 입학 허가 조건이 특정 학업과정에 적용되도록 지시할 수 있다. 법률 (1999 : 180).

제 6 조 : 지역 교육위원회는 이러한 국가 교육프로그램의 제공과 관련하여 자연자원, 농업, 어업, 임업 및 건강관리 등의 이용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다.

지역 교육위원회는 지방자치 당국과의 합의에 근거하여 그 밖의 다른 국가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다. 법률(1996 : 566)

제 6 조 (a) : 지방 자치 당국이 국가적 학업 과정의 교육을 제공할 때 학생이 추후 국가적 학업 과정 내에서 제공하는 전문 과목 학업 과정에 받아들여 질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이는 자치 의회가 국가적 학업 과정 교육을 제공할 때도 마찬가지이다.

특정 학업과정 내에서 이러한 확약이 제공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시할 수 있다. 법률 (1999 : 180).

제 7 조 : 정부의 결정에 의해 지방자치 당국은 심각한 이동성 장애를 갖고 있는 학생들을 위해 고등학교에서 그들에게 특별히 맞춘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신체장애 학생을 위한 시설을 갖춘 고등학교). 제27조~제32조는 신체 장애인들을 위한 특수 시설을 갖춘 교육과 관련된 내용을 다룬다.

국가적 학업 과정 지원자 입학

제 8 조 : 제5조 첫 번째 문단에 의해 국가적 학업과정 내에서 고등학교 교육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은 본 지방자치 당국을 통해서 이 나라 어느 곳으로든 지원할 수 있다.

입학 우선권은 국가적 학업과정이 제공되는 지방자치 당국 또는 협력 지역에 집이 위치한 사람에게 주어진다.

【부록】

두 번째 문단에 언급된 지원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이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1. 개인사정 관련하여 그들이 지원한 고등학교에 입학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는 사람
2. 지원하는 학업과정을 제공하지 않는 지방자치 당국에 거주하는 사람
3. 자신이 지원한 학업과정을 거주하는 지방자치 당국에선 제공하지 않는데 반해, 국가가 정한 선택사항을 가진 학업과정이 제공된다는 이유로 고등학교에 지원한 사람. 법률 (1999 : 180).

제 9 조 : 정부 또는 정부가 지정한 교육당국은 특정 학업과정에 한해서 우선권을 가질 거주지를 정하고 이 학업과정들이 이행될 장소의 수를 설정한다. 법률 (1995 : 356).

제10조 : 지방자치 당국이나 자치의회가 그 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지원자를 입학시킬 시에 지원자의 해당 지방자치 당국에서부터 서류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이전 서류와 관련하여 불필요하다고 판단될 시 이것은 필수사항은 아니다. 법률 (1991 : 1684).

제11조 : 학업과정을 제공하는 지방자치 당국 또는 자치의회 내의 교육위원회가 자격 불충분으로 지원자의 입학을 불허해야 하는지 그 여부를 결정한다.

지역 교육위원회는 지방자치 당국이나 협력 지역 내에서 살고 있지 않는 지원자의 입학허가 여부 또한 결정한다.

지원자는 교육항소위원회에 첫 번째 두 번째 단락 내용과 관련된 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항소할 수 있다. 법률 (1991 : 1684).

제12조 : 국가적 학업과정 입학 지원서는 지원자가 거주하는 지방자치 당국의 지역교육위원회로 보내진다. 만약 다른 지방자치 당국이나 자치의회가 제공하는 국가 학업과정에 지원하는 것이라면 위원회는 즉시 지원서를 그 지역의 교육위원회에 보내야 한다. 법률 (1991 : 1684).

특수 또는 개별 학업과정 교육 제공

제13조 : 각 지방자치 당국은 제1조에서 언급된 고등학교의 국가 학업과정, 동등한 교육 또는 국제학위(IB)를 따지 못한 학생을 위해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특수 학업과정 또는 개별 학업과정의 형태로 고등학교 교육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 이는 고등학교의 국가적 학업과정 또는 동등 교육과정에 입학하였으나 교육을 끝마치지 못한 학생에게도 적용된다. 지적 장애자 학교의 학생에 대하여서는 개별 학업과정에만 그 의무가 있으며 제6장 제7조에 의한 테스트에 의해 학생이 지적 장애자 학교에 갈 필요 없이 고등학교에 입학해야 될 때만 적용된다.

첫 번째 문단에 따른 교육제공은 본 지방자치 당국 또는 그 외의 지방자치 당국에서 제공하는 학업과정과 관련 있다. 다른 지방자치 당국이나 지방의회가 제공하고 제4조 (a)와 제4조 (b)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룹 학생들과 관련된 학업과정은 협력 계약체제 하에 제공될 수 있다. 그룹 학생을 위한 학업과정을 제공하는 둘 이상의 지방자치 당국이 이러한 협력 지역 학업과정을 구성한다. 그룹 학생을 위한 학업과정과 관련하여 자치의회와 협력계약을 맺은 지방자치 당국은 해당 학업과정의 협력지역을 구성한다. 법률 (1997 : 887).

제13조 (a) : 자치의회는 지방자치 당국과의 협의 하에 특수 또는 개별과정을 제공할 수 있다. 법률 (1999 : 887).

그룹 학생을 위한 특수 또는 개별 학업과정 지원자의 입학

제13조 (b) : 만약 지원자가 지방자치 당국이나 협동 지역에 거주할 시, 또는 고향 지방자치 당국이 교육비용을 지불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을 시에는 그룹단위 학생을 위한 학업과정을 운영하는 지방

【부록】

자치 당국 또는 자치의회는 학업과정에 적당한 지원자를 선별할 의무가 있다.

제5조의 첫 번째 두 번째 단락에 나와 있는 국가적 학업과정 입학 필수조건은 특수 학업 과정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정부 또는 정부가 지정한 당국은 해당 과정과 관련된 입학 필수조건들에 대한 조항을 추후 추가하여도 된다. 법률 (1997 : 575).

제13조 (c) : 그룹단위 학생을 위한 학업과정 입학 지원서는 지원자의 출신지 지방자치 당국내의 지역교육위원회로 보내진다. 만약 다른 지방자치 당국이나 자치의회가 제공하는 학업 과정에 지원 하는 것이라면 위원회는 즉시 그 지원서를 해당 당국으로 보내야 한다. 만약 출신 지방자치 당국이 학업과정의 협력 지역에 속하지 않는다면, 위원회는 지원서에 출신 지방자치 당국이 학생의 교육 비용을 지불할 것인지 여부를 첨부하여야 한다. 법률(1997 : 575).

제13조 (d) : 그룹단위 학생을 위한 학업과정 입학 합격 여부는 그 과정의 교육을 제공하는 지방자치 당국의 교육위원회나 자치의회가 결정한다. 지원자는 이러한 결정에 대해 교육향소위원회에 항소를 제출할 수 있다. 법률 (1997 : 575).

제14조 : 정부 또는 정부가 지정한 당국이 특정 학업과정이 특수 또는 개별과정 지원신청을 전국에서 받을 수 있도록 명령할 수 있으며, 이 학업 과정들이 행해지는 장소들의 수 또한 지정할 수 있다. 법률 (1995 : 356).

학생의 입학

제15조 : 지역교육위원회는 지방자치 당국 또는 지방의회가 제공하는 학업과정에 대한 입학을 처리한다. 이를 어길 시에는 정부가 정한 규정에 따라 처리된다.

서로 다른 지방자치 당국 간의 공동입학처가 있으며 고등학교와 성인고등학교 공동입학처가 존재한다.

지원자를 선별하는 기준에 관한 조항은 정부에서 발표한다.

입학 관련 결정에 관한 항소는 없다. 법률 (1991 : 1684).

교육을 이수할 학생의 권리

제16조 : 고등학교 국가 학업과정에 합격하여 이 교육과정을 시작한 사람은 지방자치 당국이나 협력지역에서, 또 자치의회가 학업과정을 제공할 시에는 그 자치의회 지역에서 이 교육 과정을 끝마칠 수 있다.

이는 입학을 둘러싼 환경이 학업 기간 동안 바뀌더라도 똑같이 적용된다.

학생이 학업 과정에 합격하여 후에 비슷한 과정에서의 입학을 보장 받았다면 제3조 세 번째 단락에 언급된 전문 과목 학업과정에도 이러한 조항이 똑같이 적용된다.

첫 번째 단락에 명시된 학업과정을 이수할 권리는 외국 유학으로 인해 1학년을 쉬더라도 똑같이 적용된다. 두 번째 단락에 언급된 대로 합격 보장에 관련된 문제에도 적용된다(단, 해당학교 독립체가 보장을 허가할 시 학업중단을 대비하여 유효성에 관련하여 권리를 유보하였을 시에만 적용). 법률 (1999 : 180).

제17조 : 국가 학업과정 또는 특정 전문 과목 교육과정에 합격하여 교육을 받는 학생 중 학업으로 인해 거주 지방자치 당국이나 협력지역을 옮긴 사람은 그 학업과정을 제공하는 당국이 있는 지역에서 학업을 이수할 권리가 있다. 하지만 새로운 당국에서 학업과정 또는 전문 과목을 제공하지 않는다면 그것들을 제공하는 당국을 골라 학업을 이수할 권리가 있다. 법률 (1999 : 180).

【부록】

제18조 : 출신 지방자치 당국에서 제공하지 않는 국가 학업과정 내에서 국가에서 정한 전문 과목을 이수하길 원하는 학생은 그러한 교육을 제공하는 지방자치 당국 및 자치의회의 고등학교로 옮길 수 있다. 지방자치 당국 및 자치의회의 지역 교육위원회는 이러한 입학 문제를 결정한다.

위원회의 결정에 관해서는 항소가 불가능하다. 법률 (1999 : 180).

제19조 : 정부 또는 정부가 지정한 당국은 과목을 시작하는데 필요한 조건에 대한 것과 과목을 다시 수강할 권리를 제한하는 규정들을 추후 발표할 수 있다. 법률 (1995 : 879).

제20조 : 지방자치 당국 내의 특수 또는 개별 학업과정 교육이수를 시작한 사람은 학기 시작 시 주어지는 계획에 따라 교육과정을 이수하게 된다. 자치의회에서 특수 학업과정을 시작한 사람도 비슷한 권리를 가진다.

학생이 학업과정 수정사항에 동의했다면 그 수정안에 따라 학업을 마칠 수 있다.

학업과정을 이수할 권리는 외국 유학으로 인해 최대 1학년을 쉬더라도 똑같이 적용된다. 법률 (1997 : 575).

비 용

제21조 : 고등학교 교육은 학생들에게 무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학생들은 현대식 교육에 필요한 책, 필기도구, 그 외 필요한 것들을 비용 지불 없이 마음껏 이용할 수 있다. 교육을 책임지는 독립체가 개인적 도움이 필요한지 판단해야 할 때도 있다. 때때로 소액의 준비 용품을 사야할 때도 있다.

지방자치 당국 간의 보상

제22조 : 지방자치 당국, 또는 협력 지역 내에 거주하지 않는 학생을

고등학교 국가학업 과정에 입학시킨 지방자치 당국은 학생 교육 비용을 해당 학생이 거주하는 지방자치 당국으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다.

제23조 : 자치의회 내의 지방자치 당국, 또는 협력 지역 내에 거주하지 않는 학생을 고등학교 국가 학업과정에 입학시킨 지방자치 당국은 학생 교육비용을 해당 학생이 거주하는 지방자치 당국으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다. 법률 (1996 : 566).

제24조 : 제22조와 제23조에 언급된 내용과 관련하여 출신 지방자치 당국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보상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1. 학생이 제8조 세 번째 단락 1과 3 항목, 또는 제29조에 근거하여 입학한 경우를 제외하고 지방자치 당국 자체에서 제공하는 학업과정 내의 국가 지정 전문 과목과 국가적 학업과정일 때
2. 국가적 학업과정 내의 지역이 지정한 전문 과목 교육일 때. 법률 (1999 : 180).

제25조 : 청각장애인, 신체 장애인을 위한 교육과 관련하여 정부는 이러한 학생들에게 추가 보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제26조 : 정부가 출신지 지방자치 당국이 제9조와 제14조에 언급된 교육을 제공하는 자치당국에게 지불할 보상에 관한 법적 책임에 관해 명령을 내린다. 또한 정부는 제4조 (b) 두 번째 단락에 언급된 개별 학업과정 관련하여 출신지 지방자치 당국의 법적 책임에 관한 명령을 내린다. 법률 (1997 : 887).

제26조 (a) : 학생의 출신 지방자치 당국은 국제학위(IB)로 이어지는 교육내용과 관련하여 교육 제공자에게 보상을 지급해야한다. 하지만 이러한 법적 책임은 국제학위(IB) 교육이 시작되었을 시 출신 지방자치 당국이 고등학교 교육을 제공할 의무가 있는 데 한해서

【부록】

만, 그리고 국제학위협회(IBO)에 교육제공자가 지불할 비용을 나라에서 지불했을 시에만 적용된다.

단체들 간의 협의가 이루어 지지 않았을 시에는 정부 또는 정부가 지정한 당국에서 지정한 액수만큼 지불해야 한다. 법률 (1993 : 370).

심한 신체장애가 있는 청소년을 위한 특수 교육

제27조 : 본 법령에서 심한 신체장애라 함은 다음과 같은 상태를 일컫는다.

1. 이동성 장애 또는 이 장애에 더해 다른 기능성 장애로 인해 고등학교 교육에서 국가 학업과정이나 특수 학업과정에 참여할 수 없는 사람
2. 고등학교 학업에 참여하기 위해서 신체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 필요한 사람
3. 주거지가 필요하며 장애인 생활 시설 내의 숙박 시설을 필요로 하고 생활 시설 내의 보살핌이 필요한 사람. 법률 (1999 : 886).

제28조 : 심한 이동성 장애를 가진 청소년은 신체장애를 가진 학생들에게 맞춘 교육을 하는 고등학교에서 국가적 학업과정이나 특수 학업과정을 받을 자격이 있다. 단,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기초학교 또는 그와 동등한 교육수준의 학업을 끝마쳤을 경우
2. 만 21세가 되는 해의 역년으로 6월 이전에 학업을 시작할 수 있는 사람
3. 정부 또는 정부가 지정한 당국에서 정한 입학 필수조건들을 만족할 경우.

법률(1999 : 886).

제29조 : 제7조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신체장애 학생을 위한 시설을 갖춘 고등학교는 특수 교육 지원자를 전국에서 받아야 한다.

제30조 : 심한 신체장애가 있는 학생을 위한 특수교육 학교 입학관련 문제와 제7조에 따른 교육을 받을 권리는 각각의 고등학교들의 특별 공동위원회에서 다룬다.

입학을 요청한 사람만이 입학관련 문제와 교육을 받을 권리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에 관해 항소할 수 있다. 하지만 고등학교 배치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항소할 수 없다.

법률 (1999 : 886)

제31조 : 국가, 지방자치 당국, 또는 자치의회에서 제공하는 생활시설과 거주지에 사는 학생에게 비용을 청구해서는 안 된다. 이는 신체장애 학생을 위한 특수시설을 갖춘 고등학교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정부 또는 정부가 지정한 당국에서 임시숙소와 거주지에 관련된 비용문제에 대한 규정을 추후 공포할 수 있다. 법률 (1999 : 886).

제31조 (a) : 출신 지방자치 당국이 거주시설 숙박과 보호서비스 비용에 대한 보상을 지급한다. 출신 지역의 자치의회는 거주지 비용에 대한 보상을 지급한다. 국가와의 협의 하에 활동을 책임지고 있는 독립체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정부 또는 정부가 지정한 당국은 이러한 보상금 관련 규정을 추후 공포할 수 있다.

법률 (1999 : 886)

제32조 : 정부는 청각장애인 또는 이동성 장애를 가진 학생들의 국가 학업과정과 특수 학업 교육과정이 3학년에 걸쳐 골고루 분배될 수 있도록 명령할 수 있다. 법률 (1999 : 886)

숙식에 관한 지원

제33조 : 지방자치 당국은 숙식이 필요한 고등학교 학생에게 재정적 지원을 해주어야 한다. 만 20세가 되는 해의 6월 말까지 이를 지

【부록】

급할 의무가 있다. 숙식, 추가 최저 생활비용, 교통여행비용 등이 포함된다. 지원은 현금이나 다른 적당한 형태로 지급되며 이는 지방자치 당국이 정할 수 있다. 현금으로 지원이 주어진다면 국가보협법(1962 : 381)에 따른 기본비용의 최소 30분의 1이상을 지급해야 하며 학생이 하숙생활을 하는 동안 매 달 한 번씩 지급한다. 금액의 일의자리는 가장 근접한 십 단위 크로나(kronor)로 반올림한다.

첫 번째 단락의 내용은 제27조에 언급된 학생들과 정부에서 특별히 보살펴주는 학생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첫 번째 단락 내용은 학생을 위한 재정적 지원에 관한 법률(1973 : 349)에 따라 숙식비용을 제공받는 국외거주자 아이들에게도 적용되지 않는다. 법률 (1999 : 1395).

제31조의 (a) 규정은 신체 장애인을 위한 특수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의 특정 비용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할 출신지 지방자치 당국의 의무에 관한 내용이다. 법률 (1999 : 886).

제 6 장 지적 장애자 학교

제 1 조 : 지적 장애자 학교의 교육은 지적 장애가 있는 아동 및 청소년들에게 가급적 기초학교와 고등학교에서 제공하는 교육과 비슷한 수준의 교육을 각각의 학생의 잠재능력에 맞추어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법률(1993 : 800).

제 2 조 : 학생들은 자신들의 교육프로그램 구성에 참여할 수 있다. 학생의 참여 범위는 나이와 성숙도 및 능력에 따라 다르다.

제 3 조 : 지적 장애자 학교는 지적 장애자 기초학교(지적 장애 학생을 위한 기초학교와 훈련학교)와 지적 장애자 고등학교(국가, 특수, 개별 학업 과정)로 구성되어 있다.

지적 장애 학생을 위한 기초학교 및 훈련학교는 10 단계로 구성된다. 훈련 학교는 지적 장애자 기초학교를 다닐 수 없는 학생들을 위한 학교이다. 지적 장애자 학교의 지역교육위원회는 지적 장애자 학교에 입학한 학생이 지적 장애자 기초학교 또는 훈련학교에 입학해도 되는지의 여부를 결정한다.

만 8세가 되는 해 의무교육을 시작한 학생은 학업을 마친 후 지적 장애자 기초학교의 9번째 단계의 형태로 추가적 교육을 받을 자격을 얻는다. 법률 (1997 : 1212).

제 3 조 (a) : 지적 장애자 학교의 9단계까지 마친 청소년은 지적 장애자 학교에서 10단계의 형태로 추가 교육을 받을 수 있다. 법률 (1992 : 598).

제 4 조 : 지적 장애자 학교의 교육은 학생들에게 무상으로 제공된다. 학생들은 현대식 교육에 필요한 책, 필기도구, 그 외 필요한 것들을 비용 지불 없이 마음껏 이용할 수 있다. 때때로 소액의 준비물품을 사야할 때도 있다.

제 4 조 (a) : 지적 장애자 기초학교의 학생들은 무상 급식을 제공받는다. 법률 (1997 : 1212).

제 5 조 : 출신지 지방자치 당국에게는 지적 장애자 학교의 교육이 본 법령에 의해 학교에 출석할 자격이 있는 모든 이들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의무는 해당 지방자치 당국에 거주하는 모든 이들에게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적 장애자 학교를 운영하는 지방자치 당국이 지어야 하며 다른 지방자치 당국과 협의하여 다른 지역 내의 지적 장애자 학교를 다니는 학생을 해당 지방자치 당국 내의 지적 장애자 학교에 입학시킬 수 있다. 법률 (1992 : 598).

제 6 조 : 지적 장애자 학교를 운영하는 각 지방자치 당국은 가급적 어떠한 학생도 학업으로 인해 집에서 멀리 떨어져 살지 않도록

【부록】

해야 한다. 지적 장애자 학교의 교육활동을 계획할 때 학생과의 의사소통문제를 중심으로 학생에게 알맞은 활동설계를 할 수 있도록 한다.

모든 지방자치 당국은 학생들을 학교에 배치할 때 다른 학생들의 집과 가까운 학교에 배치될 권리를 침해 하지 않는 한 학생의 보호자들이 원하는 곳과 되도록 일치하도록 한다. 이로 인해 지방자치 당국의 운영상의 재정적 문제가 일어나선 안 된다. 법률 (1993 : 800).

모든 지방자치 당국은 운영하는 지적 장애자 학교의 학생들이 무료로 학교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는 집과 학교사이의 거리, 교통조건, 기능성 장애, 그 외 특별한 사유 등이 있을 때 해당된다. 그러나 지방자치 당국이 지정한 곳 외의 다른 지방자치 당국에 위치한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에게는 이를 제공할 의무가 없다.

특성 기능성 장애를 가진 학생을 위한 지원과 서비스에 관한 법률 (1993 : 387)은 집에서 멀리 떨어져 살아야 하는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지원과 서비스를 일반 가정 내의 거주형태 또는 특수 가정봉사 서비스의 형태로 제공하는 것에 관한 조항을 담고 있다.

제 6 조 (a) : 지방자치 당국은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제5조 두 번째 단락에 언급된 경우를 제외하곤 운영하는 지적 장애자 학교에 다른 지방자치 지역 내에 사는 학생을 입학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그 지방자치 당국은 학생의 본 지방자치 당국으로부터 교육과 관련된 보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 해당 지방자치 당국 간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거주 지방자치 당국은 정부에서 정한 금액만큼을 보상으로 지급해야 한다. 법률 (1996 : 1044).

제 7 조 : 의무교육을 마친 청소년은 지적 장애자 고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며 이는 지적 장애자 학교의 교육위원회가

해당 학생의 지적 장애로 인해 일반 고등학교에 입학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지적 장애자 고등학교로 입학하게 된다. 만 20세가 되는 해 6월 전까지 입학해야 한다.

각 지방자치 당국은 해당 청소년들에게 지적 장애자 고등학교에서 4년간의 교육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

만 20세가 되는 해 6월 전까지 지적 장애자 고등학교에 입학한 학생은 학업을 이수할 자격이 주어진다. 법률 (1999 : 886).

제 8 조 : 학생이나 대리인은 제7조에 따른 지적 장애가 있지만 고등학교에 다닐 수 있으며 지적 장애자 학교에 다닐 만큼 심각한 것은 아니라는 지역 교육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교육향소위원회에 항소를 제출할 수 있다.

제 9 조 : 지적 장애자 고등학교는 지적 장애자 기초학교에 그 기반을 둔다.

지적 장애자 학교의 교육위원회는 지적 장애자 고등학교의 학생이 다음과 같은 수업 중 어떤 것을 들어야 하는지 결정한다.

1. 국가 또는 특수 학업과정
2. 개별 학업과정

위원회는 개별 학업과정을 밟는 학생이 직업 훈련을 받아야 하는지 추후 결정한다. 법률 (1993 : 1478).

제10조 : 각 지방자치 당국은 국가 학업과정을 받을 자격이 있는 학생들에게 여러 학업과정의 기회를 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여러 학업과정의 장소는 학생이 원하는 바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자치의회는 지방자치 당국과의 협의 하에 국가 또는 특수 학업과정을 제공할 수 있다.

첫 번째 단락의 내용은 지방자치 당국, 그 외 지방자치 당국, 자치의회, 협동지역 내에서 제공되는 교육과 관련되어 있다. 법률 (1997 : 575).

【부록】

제10조 (a) : 자치의회에서 교육을 제공하면 제6조 세 번째 단락에 명시된 학교교통을 제공할 의무가 자치의회에게 적용된다. 법률 (1997 : 575).

제11조 : 각 학생이 받아야 하는 최소 수업시간은 3600시간이다. 정부는 지적 장애자 고등학교 내의 교육이 특정 과목을 포함하고 이러한 과목의 수업시간을 지정할 수 있다. 법률 (1993 : 1478).

제 7 장 특수학교

제 1 조 : 특수학교는 청각장애가 있는 아동 및 청소년들에게 가급적 기초학교와 고등학교에서 제공하는 교육과 비슷한 수준의 교육을 각각의 학생의 잠재능력에 맞추어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법률(1999 : 886).

제 2 조 : 학생들은 교육설계에 참여할 수 있다. 학생의 참여 범위는 나이와 성숙도 및 능력에 따라 다르다.

제 3 조 : 특수학교는 기초학교 수준의 9단계의 교육으로 구성된다. 법률 (1993 : 1679).

제 4 조 : 특수학교의 교육은 학생들에게 무상으로 제공된다. 학생들은 현대식 교육에 필요한 책, 필기도구, 그 외 필요한 것들을 비용 지불 없이 마음껏 이용할 수 있다. 때때로 소액의 준비 물품을 사야할 때도 있다.

특수학교의 학생들은 무상급식을 제공받는다.

국가는 특수학교 학생이 적절한 교통수단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가는 집에서 멀리 떨어진 특수학교를 다니는 학생이 추가 비용 없이도 만족스런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법률 (1997 : 1212).

제 5 조 : 특수학교내의 교육은 여러 개의 별개 구성단위로 이루어져야 한다. 각 구성단위마다 합동 위원회가 있다. 정부는 구성단위와 학군과 관련된 규정을 공포한다. 법률 (1999 : 886).

제 6 조 : 특수학교에 다니는 학생이 의무교육의 마지막 단계를 제대로 이수하지 못했을 경우 학업을 이수할 능력이 있다고 여겨질 때에는 의무교육을 졸업한 이후에도 최대 2년 내에 이수할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지적 장애 학생에게는 이 같은 내용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만 8세에 의무교육을 시작한 지적 장애 학생은 의무교육이 종료될 때 마지막 단계를 끝마칠 자격이 주어진다. 법률 (1999 : 886).

제 7 조 : 출신지 지방자치 당국은 특수학교 학생에게 드는 비용과 관련하여 정부에 보상금을 지급한다.

정부 또는 정부가 지정한 당국은 보상금의 액수에 관한 조항의 첫 번째 단락에 관련된 규정을 발표한다. 법률 (1994 : 152).

제 8 조 : 학생 또는 그 대리인은 집에 살지 않는 학생을 위한 조치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제4조 세 번째 단락과 제6조의 교육을 끝마칠 자격에 의한 지역 교육 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교육항소위원회에 항소를 제출할 수 있다.

제 8 장 사미족 학교

제 1 조 : 사미족 학교의 교육은 기초학교 6단계에 해당하는 교육수준의 사미족 방식의 교육을 사미족 어린이들에게 제공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학교 공부에 어려움을 느끼는 학생들에게는 특별지원이 주어진다.

제 2 조 : 학생들은 교육내용 구성에 참여할 수 있다. 학생의 참여범위는 나이와 성숙도 및 능력에 따라 다르다.

【부록】

제 3 조 : 사미족 아이들은 기초학교에 다니는 대신 사미족 학교에서 의무교육을 마칠 수 있다. 특수한 이유가 있을 시 이는 다른 아이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

제 4 조 : 사미족 학교의 교육은 학생들에게 무상으로 제공된다. 학생들은 현대식 교육에 필요한 책, 필기도구, 그 외 필요한 것들을 비용 지불 없이 마음껏 이용할 수 있다. 때때로 소액의 준비 물품을 사야할 때도 있다.

제 4 조 (a) : 사미족 학교 학생은 무상급식을 제공받는다. 법률 (1997 : 1212).

제 5 조 : 국가는 사미족 학교 학생을 위한 교통수단을 무상으로 제공한다.

제 6 조 : 사미족 학교 위원회가 존재한다.

위원회는 사미족 학교 학생 입학문제를 관리한다. 이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 학생 또는 대리인은 교육향소위원회에 향소를 제출할 수 있다.

제 7 조 : 출신지 지방자치 당국은 사미족 학교에 다니는 학생을 위한 특정 비용에 대해 국가에 보상금을 지급한다.

정부 또는 정부가 지정한 당국에서 보상금 액수에 관련된 규정을 공표한다.

법률 (1994 : 152).

제 9 장 자율학교

허 가

제 1 조 : 의무교육은 자율학교에서도 제공할 수 있는데, 그러려면 제 2조의 조건을 만족하여 허가를 받은 학교여야 한다.

기초학교 또는 지적 장애자 학교 교육수준에 상응하는 자율학교

의 허가 관련된 문제는 국립교육청에서 결정한다.

특수학교에 상응하는 자율학교 허가 문제는 특수학교 위원회가 다룬다. 법률 (1999 : 886).

제 2 조 : 그 특징과 수준에 있어서 기초학교, 지적 장애자 학교, 특수학교와 동일한 지식과 기술교육을 제공하는 자율학교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시켜야 정부에 의한 허가를 받을 수 있다.

1. 국립학교 제도내의 교육정신에 맞물리는 일반목표와 기본적 가치들에 상응하여야 한다.
2. 본 법에 의해 국립학교 제도 내의 학교교육을 받을 자격이 있는 모든 아이들에게 열린 교육의 기회가 주어져야 하며 학교에 재정적 운영상의 문제를 불러올 염려가 있는 아이는 그 예외가 될 수 있다.
3. 특별한 이유가 있을 시를 제외하곤 최소 20명의 학생이 재학해야 한다.
4. 지적 장애자 학교 또는 특수학교 성격의 자율학교의 경우 아이들이 필요한 보살핌을 제공해야 한다.
5. 자율학교 규정에 관련하여 정부가 제시한 조건을 만족시켜야 하며 해당 학교운영과 입학관련 문제에 대한 조건도 만족시켜야 한다.

본 조항에 의한 자율학교는 첫 번째 단락의 체제 하에 특정 종교 색을 띄어도 된다.

허가는 특정 형태로 이루어진다. 법률 (1996 : 1044).

제 3 조 : 출신 지방자치 당국의 지적 장애자 학교 위원회에서 학생이 지적 장애로 인해 일반 기초학교에서 교육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면 학생은 인가된 지적 장애자 자율학교에서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다. 법률 (1995 : 1248).

【부록】

제 4 조 : 만약 아동이 제3장 제3조에 의해 청각/시각 및 언어장애 특수학교 입학의 기본이 되는 기능성 장애를 가지고 있다면 아동은 특수학교에 상응하는 역할의 자율학교에서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다. 단, 다음과 같은 조건이 따른다.

1. 그 아동과 동일한 기능성 장애를 가진 학생에 대한 교육인가를 받은 학교여야 함
2. 특수학교를 운영하는 독립체가 그 학교에서 제공하는 교육으로부터 아동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사료될 때(법률 1995 : 1248).

제 5 조 : 스웨덴에 단기간 체류하고 있거나 국제학교에서 교육을 받을 그 밖의 다른 이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스웨덴 국립교육청의 인가를 받은 국제학교와 같은 학교에서 의무교육을 이수할 수 있다.

국제학교란 기초학교 또는 기초자율학교와는 다른 국제적 특성을 가진 학교를 말한다. 학교의 교육이 전체적으로 기초학교의 교육과 비슷한 수준일 때만 인가가 가능하다. 학교는 미래의 유학을 위한 지식과 기술을 기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스웨덴어로 수업이 진행되며 단기간동안 학생이 스웨덴에 거주하는 동안 필요한 스웨덴에 대한 지식을 가르친다.

정부는 첫 번째 단락에 언급된 아동을 제외한 학생 또한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입학을 허가하도록 승인할 수 있다. 법률 (1996 : 1044).

보조금 할당 등

제 6 조 : 국립교육청은 기초학교에 상응하는 승인된 자율학교에 대해 세 번째 단락에 의하여 보조금을 받을 자격을 선언한다. 하지만 학교의 교육이 위치한 지방자치 당국 내 교육시스템에 부정적

결과를 초래하거나 s. 7 항목 위배로 인해 벌금을 지불하게 된다면 보조금 지급은 철회될 수 있다.

최근 설립한 학교들이 보조금을 지급받으려면 학교가 시작하기 전 4월 1일 전에 인가신청을 해야 한다. 특정 형태로 교육승인을 이미 받았으나 추가 형태에 대해서도 승인을 받길 원하는 경우에도 이는 똑같이 해당된다.

보조금은 기초학교에서 제공하는 교육과 상응하는 교육을 받는 각 학생과 관련하여 거주 지방자치 당국에서 지급한다. 보조금은 교육 조항과 학생의 필요사항들을 염두에 두고 정해져야 하며 기초학교간의 자원분배 원칙과 동일선상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만약 학생에게 별도의 지원이 필요하다면 본래의 지방자치 당국은 이러한 지원으로 인해 상당한 재정적 문제가 야기될 것이라고 판단되면 지원을 위한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첫 번째 단락에서 세 번째 단락까지의 사항은 정부가 특별 조항이나 다른 특별 결정에 의해 독립체가 보조금의 할당을 거절하였을 시 학교가 아닌 다른 객체에 정부보조금을 주기로 결정한 사안과 관계된 자율학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스웨덴 국외거주자 학생의 교육에 대한 보조금이 지급될 시에는 세 번째 단락의 지방자치 당국의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법률 (1996 : 1044).

제 6 조 (a) : 국립교육청은 지적 장애자 학교에 상응하는 승인된 자율학교에 대해 세 번째 단락에 의하여 보조금을 받을 자격을 선언한다. 하지만 학교의 교육이 위치한 지방자치 당국 내 교육시스템에 부정적 결과를 초래하거나 제7조의 위배로 인해 벌금을 지불하게 된다면 보조금 지급은 철회될 수 있다.

최근 설립한 학교들이 보조금을 지급받으려면 학교가 시작하기 전 4월 1일 전에 인가신청을 해야 한다. 특정 형태로 교육 승인을

【부록】

이미 받았으나 추가 형태에 대해서도 승인을 받길 원하는 경우에도 이는 똑같이 해당된다.

자율학교와 학생의 출신 지방자치 당국 사이에 별다른 협의가 없을 시에는 정부가 결정한 금액만큼을 지불한다. 법률 (1996 : 1044).

제 7 조 : 제6조에 의하여 보조금을 받는 자율학교들은 무상으로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학생들은 현대식 교육에 필요한 책, 필기도구, 그 외 필요한 것들을 비용 지불 없이 마음껏 이용할 수 있다. 때때로 소액의 준비 물품을 사야할 때도 있다. 학생들은 무상급식을 제공받는다.

제6조에 의해 보조금을 지급받는 자율학교는 보조금을 지급받는 학생에 한하여 교육활동이 합당한 것이라고 판단될 경우 그 교육활동에 드는 학교의 비용에 대하여 합당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법률 (1997 : 1212).

제 8 조 : 자율학교의 교육이 그 특징과 수준에 있어서 고등학교에서 제공하는 국가 학업과정이나 특수 학업과정의 지식과 기술에 상응할 때 국립교육청이 그 학교에게 제8조(a)에 언급된 보조금을 지급받을 권리를 선언한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사항을 만족시킬 때만 보조금이 주어진다.

1. 국가 학교제도 내 교육의 일반적 목표와 기본 가치에 상응하는 학교일 때
2. 본 법에 의해 국립학교제도 내의 학교 교육을 받을 자격이 있는 모든 아이들에게 열린 교육의 기회가 주어져야 하며 학교에 재정적 운영상의 문제를 불러올 염려가 있는 아이는 그 예외가 될 수 있다.
3. 자율학교 규정에 관련하여 정부가 제시한 조건을 만족시켜야 하며 해당 학교운영과 입학관련 문제에 대한 조건도 만족시켜야 한다.

첫 번째 단락에 의하여 그 학교가 위치한 지방자치 당국 내의 학교제도에 부정적 물질적 결과를 초래할 교육에 대해서는 공표가 주어지지 않는다.

본 조항에 언급된 자율학교는 첫 번째 단락의 체제 하에 특정 종교색을 띄어도 된다. 법률 (1996 : 1044).

제 8 조 (a) : 출신 지방자치 당국은 제8조에 언급된 교육을 받는 각 학생에 관련하여 보조금을 지급한다. 교육이 시작되었을 당시 지방자치 당국이 고등학교 교육을 제공하기로 되어 있었던 학생들에 관해서만 이러한 의무가 적용된다.

스웨덴 국외거주자 학생의 교육에 대한 보조금이 지급될 시에는 세 번째 단락의 지방자치 당국의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자율학교와 학생의 출신 지방자치 당국 사이에 별다른 협의가 없을 시에는 정부가 결정한 금액만큼을 지불한다. 법률 (1996 : 1044).

제 8 조 (b) : 자율학교의 교육이 그 특징과 수준에 있어서 지적 장애자 고등학교에서 제공하는 국가 학업과정이나 특수 학업과정의 지식과 기술에 상응할 때 국립교육청이 그 학교에게 제8조 (c) 조항에 언급된 보조금을 지급받을 권리를 선언한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사항을 만족시킬 때만 보조금이 주어진다.

1. 국가 학교제도 내 교육의 일반적 목표와 기본 가치에 상응하는 학교일 때
2. 본 법에 의해 지적 장애 고등학교 교육을 받을 자격이 있는 모든 아이들에게 열린 교육의 기회가 주어져야 하며 학교에 재정적 운영상의 문제를 불러올 염려가 있는 아이는 그 예외가 될 수 있다.
3. 자율학교 규정에 관련하여 정부가 제시한 조건을 만족시켜야 하며 해당 학교운영과 입학관련 문제에 대한 조건도 만족시켜야 한다.

【부록】

첫 번째 단락에 의하여 그 학교가 위치한 지방자치 당국 내의 학교제도에 부정적 물질적 결과를 초래할 교육에 대해서는 공표가 주어지지 않는다.

본 조항에 언급된 자율학교는 첫 번째 단락의 체제 하에 특정 종교색을 띄어도 된다. 법률 (1996 : 1044).

제 8 조 (c) : 출신 지방자치 당국은 제8조 (b) 조항에 언급된 교육을 받는 각 학생에 관련하여 보조금을 지급한다. 교육이 시작되었을 당시 지방자치 당국이 고등학교 교육을 제공하기로 되어있었던 학생들에 관해서만 이러한 의무가 적용된다.

자율학교와 학생의 출신 지방자치 당국 사이에 별다른 협의가 없을 시에는 정부가 결정한 금액만큼을 지불한다. 법률 (1996 : 1044).

제 9 조 : 지방자치 당국과 학교 간의 별다른 협의가 없을 시 제8조 (a)와 제8조 (c)에 따른 보조금은 한 번에 일년치 보조금으로 계산한다. 보조금 지급은 매년 1월 1일에 이루어진다.

제8조와 제8조 (b)조항에 언급된 자율학교는 교육이 시작되는 해 4월 1일 전에 보조금 자격 신청을 해야 한다. 법률 (1999 : 887).

제10조 : 제8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받을 자격이 있는 학교는 보조금을 지급받는 학생에 한하여 교육활동이 합당한 것이라고 판단될 경우 그 교육활동에 드는 학교의 비용에 대하여 합당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제8조 (b)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받을 자격이 있는 학교는 보조금을 지급받는 학생에 한하여 교육활동이 합당한 것이라고 판단될 경우 그 교육활동에 드는 학교의 비용에 대하여 합당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학교가 제8조 또는 제8조 (b)에 따라 수업료를 청구하였으나 이 금액이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되면 보조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철

회된다. 이러한 결정이 이루어지기 전에 학교는 금액을 조정할 기회가 한번 주어진다. 법률 (1966 : 1044).

관리감독 등

제11조 : 제1조와 제5조에서 에서 언급된 자율학교의 교육은 의무교육을 받는 학생의 교육과 관련하여 국립교육청의 감독 하에 이루어지게 된다. 자율학교들은 국립교육청에서 행하는 학교 제도에 대한 감독과 평가활동에 참여할 의무가 있다.

자율학교가 위치한 지역의 지방자치 당국은 그 학교가 제6조 또는 제6조 (a)에 의하여 보조금을 받을 경우 교육활동들을 들여다보고 감독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자율학교는 지방자치 당국이 지정한 범위에 한해 지방자치 당국이 맡고 있는 자체 학교제도를 통해 검토와 평가 활동에 참여해야 한다.

제1조의 자율학교는 정부 또는 정부가 지정한 당국에서 실시하는 전국적 평가에 응해야 할 의무가 있다. 또한 학교는 그 평과 결과를 학생과 보호자에게 전달해야 할 의무가 있다.

법률 (1966 : 1044).

제12조 : 제1조와 제5조의 자율학교가 허가에 관한 필수 조건을 더 이상 이행하지 않고, 전달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결점 사항을 고치지 않았을 시에는 인가가 취소될 수 있다. 이는 국립교육청의 검토 및 평가 활동과 전국 평가시험에 참여하지 않았을 시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평과 결과를 제공하지 않았을 시에도 적용된다.

제6조 또는 제6조 (a)에 의해 보조금을 지급받을 자격이 있는 자율학교가 학교가 위치한 지방자치 당국의 교육시스템에 부정적 결과를 초래하는 변화를 일으킬 시에는 보조금이 폐지될 수 있다.

【부록】

또한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도 보조금 지급이 철회된다.

1. 제7조를 위배하여 벌금을 물은 시
2. 제6조에 의해 보조금을 지급받는 학교가 무상급식을 하지 않을 시
보조금 승인 및 권리 결정권을 가진 당국이 폐지 또한 결정한다.
법률 (1997 : 1212).

제13조 : 제8조 또는 제8조 (b) 조항에서 언급된 자율학교는 학생의 교육과 관련하여 국립교육청의 감독을 받게 된다. 자율학교들은 국립교육청에서 행하는 학교제도에 대한 감독과 평가활동에 참여할 의무가 있다.

자율학교가 위치한 지역의 지방자치 당국은 그 학교가 제6조 또는 제6조 (a)에 의하여 보조금을 받을 경우 교육활동들을 들여다보고 감독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자율학교는 지방자치 당국이 지정한 범위에 한해 지방자치 당국이 맡고 있는 자체 학교제도를 통해 검토와 평가 활동에 참여해야 한다.

제8조의 자율학교는 정부 또는 정부가 지정한 당국에서 실시하는 전국적 평가에 응해야 할 의무가 있다. (1966 : 1044).

제14조 : 제8조와 제8조 (b) 조항에 의해 보조금을 지급받는 자율학교가 보조금에 관한 필수조건을 더 이상 이행하지 않고 전달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결점사항을 고치지 않았을 시에는 지급이 취소될 수 있다. 이는 제13조에 해당하는 국립교육청의 검토 및 평가 활동과 전국 평가 시험에 참여하지 않았을 시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제8W 또는 제8조 (b) 조항에 의해 보조금을 지급받을 자격이 있는 자율학교가 학교가 위치한 지방자치 당국의 교육 시스템에 부정적 결과를 초래하는 변화를 일으킬 시에는 국립교육청에 의해 보조금이 폐지될 수 있다. 법률 (1996 : 1044).

그 밖의 조항

제15조 : 의무교육을 받는 학생이 자율학교에 입학, 또는 졸업할 때 해당 학교를 운영하는 독립체는 그 즉시 해당 학생의 출신 지방 자치 당국 지역 교육위원회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3장 제14조는 결석의 경우 정보를 제공해야 할 의무에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다. 법률 (1993 : 800).

제16조 : 지방자치 당국의 지적 장애자 학교 교육위원회가 청소년이 지적 장애가 있다고 판단되면 지적 장애자 고등학교에 상응하는 자율학교에 입학시킬 수 있다. 법률 (1993 : 1478).

제16조 (a) : 본 장에서 다른 자율학교에서 일하고 있거나, 또는 그러한 경험이 있는 자는 당국의 허가 없이 다음과 같은 것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1. 학생복지 활동을 통해 얻은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
2. 학생의 징계 또는 정학에 관한 정보. 법률 (1996 : 1044).

제17조 : 제6조, 제6조 (a), 제8조, 제8조 (b), 제12조, 제14조에 따라 자율학교의 인가 또는 인가 철회에 관련된 문제에 대한 국립교육청의 결정, 또는 제10조에 따른 수업료 관련 문제에 대해 일반 행정재판소에 항소가 제출될 수 있다.

제1조 세 번째 단락 또는 제12조에 따른 자율학교 인가 또는 인가 철회에 관련된 문제와 관련해 지역 교육위원회가 내린 결정에 대해 일반 행정재판소에 항소가 제출될 수 있다.

항소행정재판소에 항소를 제출하기 위해선 항소에 대한 허가가 필요하다.

제3, 4, 16조항에 관련된 지역 교육이사회 결정에 대해 교육항소 위원회에 항소가 제출될 수 있다.

제3조와 관련된 결정에 대해서는 오직 아동의 보호자만이 항소를 할 수 있다. 제16조와 관련된 결정에 대해서는 오직 학생 그 자신과 학생의 대리인만이 항소할 수 있다.

제 10 장 특별한 형태의 교육

제 1 조 : 기숙학교는 해당 학교를 운영하는 독립체의 신청을 통해 정부가 지정하는 정부보조 기숙학교의 자격이 주어진다.

정부보조 기숙학교는 기초학교와 고등학교, 또는 스웨덴 국외거주자 학생을 위한 학교등과 같은 수준의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9장의 조항들은 정부지원을 받는 자율학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제1조 (c) 조항에 해당될 경우는 제외) 법률 (1996 : 60).

제 1 조 (a) : 정부보조기숙학교가 기초학교와 상응하는 경우에 한해서 의무교육을 마칠 권리와 관련하여 제1조 첫 번째 단락과 두 번째 단락에 의하여 자율학교로 여겨질 수 있다. 정부 또는 정부가 지정한 당국에서 정부보조 기숙학교의 운영과 감독에 대한 규정을 공포한다. 법률 (1996 : 60).

제 1 조 (b) : 정부는 정부 보조 학교가 국제 학위(IB) 교육을 고등교육과 병행하여 제공하도록 허락할 수 있다. 법률 (1996 : 60).

제 1 조 (c) : 지방자치 당국은 정부보조학교에게 국외 거주 학생을 제외한 나머지 학생들 관련한 보조금을 지급한다. 자율학교에 지급되는 보조금에 관한 제9장 제6조의 조항들은 기초학교에 상응하는 국가보조 기숙학교에 다니는 학생에 적용된다. 제9장 제8조 (a) 조항과 제 9조 조항은 고등학교에 상응하는 곳에 다니는 학생들에게 적용된다.

만약 학생이 국제학위(IB)와 관련된 교육을 받는다면 제5장 제26조 조항이 적용된다. 법률 (1996 : 1044).

제 2 조 : 청소년의 보살핌에 관련된 특수 조항을 포함하고 있는 법령 (1990 : 52)의 제12조 조항에 언급된 생활시설 내에 거주하는 의무교육 대상자인 학생이 의무교육을 이수하지 못할 경우엔 생활시설

내의 교육에 참여하여 이를 이수하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교육은 담당 독립체가 맡는다. 꼭 필요한 예외사항을 제외하고는 제공되는 교육이 의무교육 학교에서 제공되는 교육과 동등하여야 한다.

첫 번째 단락에서 언급된 내용에 해당하는 의무교육 대상자가 아니며 집에서 거주하는 학생은 필요할 시 해당 독립체가 학생에게 그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정부 또는 정부가 지정한 당국은 교육, 기관, 감독에 대한 더욱더 상세한 내용을 공표한다.

제 3 조 : 기초학교, 지적 장애자 학교, 특수학교, 사미족 학교에 다니는 학생 중 병이나 그와 비슷한 이유로 인해 오랜 기간 일반 통학이 불가능한 학생은 병원이나 학생의 가정, 또는 그 밖의 편리한 곳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특별교육이 제공되어야 한다.

특별교육은 학교를 책임지는 설치자에 의해 제공된다. 정부 또는 정부가 지정한 당국이 정한 규정에 의해 이러한 교육을 제공할 책임이 해당 독립체에서 교육을 제공하는 병원이나 그 외 다른 곳으로 옮겨갈 수 있다.

특별교육은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국립 학교 제도 밖에서 의무교육을 받는 학생들에게도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제 3 조 (a) : 시각 또는 언어 장애가 있는 아동은 특수시설 센터에서 학업을 마칠 수 있다. 여기서 제공되는 교육은 기초학교와 지적 장애자 학교에서 제공하는 것과 동등한 수준이어야 한다.

특수시설 센터에서 의무교육을 받는 이들에 대한 비용과 관련하여 해당 지방자치 당국은 나라에 보상금을 지불해야 한다.

정부 또는 정부가 지정한 당국은 특수시설 센터 내 교육활동에 관한 규정과 두 번째 단락 조항 면제사항과 관련된 규정, 그리고 보상금의 액수에 관한 규정을 공표한다. 법률 (1999 : 886).

【부록】

제 4 조 : 의무교육 대상자인 아동은 본 법령에서 제시한 바와 다른 방향으로 의무 교육을 끝마칠 수도 있다. 단, 본 법령에서 제시하는 교육방식 보다 아동에게 다른 방법이 적당하다고 판단될 때만 허락된다. 교육활동에 대한 검토의 요건이 만족되어야 한다.

허가는 한 번에 최대 1년 동안 유효하다. 유효기간 동안 교육활동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진다. 해당 활동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조건을 만족시키지 않을 시에는 즉시 허가가 철회될 수 있다.

제 5 조 : 아동이 의무교육을 받기로 되어있는 학교의 지역 교육위원회가 제4조 조항에 언급된 내용을 고려해야 한다. 제3장 제3조 조항의 기능성 장애를 갖고 있는 아동은 지적 장애인 학교 또는 특수학교에 입학할 수 있다. 위원회는 입학에 관련된 문제를 보건복지청과 상의해야 한다. 법률 (1995 : 1248).

제 6 조 : 본 법령에서 제시한 것 이외의 방식으로 의무 교육을 받는 내용과 관련한 제4조 조항에 대해 일반 행정재판소에 항소가 제출될 수 있다.

항소행정재판소에 항소하려면 항소권이 필요하다. 법률 (1995 : 63).

제 11 장 지자체의 성인교육

공동 조항

제 1 조 : 지자체 단위의 성인교육은 기초교육, 고등학교교육, 보충교육으로 이루어져 있다.

자치제의 성인교육은 강좌의 형식으로 제공된다. 법률 (1993 : 1478).

제 2 조 : 성인 기초교육은 공동체 및 사회생활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터득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의의를 둔다. 또한, 심화학습도 가능하도록 하는데 목적을 둔다.

성인 고등학교 교육은 청소년들이 고등학교 교육을 통해 얻는 지식과 기술에 상응하는 것들을 배울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보충교육은 성인들이 각자의 직업 내에서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의의가 있다. 성인 고등학교교육에 관해 본장에서 언급된 바는 보충교육에도 해당된다.

제 3 조 : 자치제 성인 교육과 관련된 조항은 지적 장애인 학교에서 실시하는 의무적 또는 자발적 교육에 상응하는 교육을 필요로 하는 성인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본 법령의 지적 장애 성인을 위한 교육과 관련된 조항들은 그러한 성인들에게 대신 적용된다. 법률 (1992 : 598).

제 4 조 : 학생들은 교육내용 구성에 참여할 수 있다.

제 5 조 : 제21조 또는 제15장의 제6조에 해당될 경우를 제외하곤 자치제 성인 교육은 학생들에게 무상으로 제공된다.

교과서, 필기도구, 연장, 보호복 그리고 이 외 학생의 필요 하에 원하는 지원은 학생 스스로 비용을 지출하여 구해야 할지, 아니면 해당 교육을 제공하는 독립체에서 학생에게 제공해주어야 할지 결정한다. 비용은 취득가액을 넘지 않도록 한다.

정부가 발행한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한 보통의 경우 지자체 성인 교육에 필요한 지원은 학생들에게 무상으로 지급되어야 한다. 법률 (1992 : 599).

제 6 조 : 지방자치 당국과 자치의회는 자치제 성인 교육을 다른 단체와 계약하여 제공할 수 있다.

정부는 계약을 맺을 대상과 계약 조건에 관련된 규정을 공표한다. 법률 (1991 : 1684).

제 7 조 : 제2장 제4조부터 제7조 조항은 지방자치 당국 또는 자치의회 외의 단체에서 제공하는 자치제 성인교육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법률 (1991 : 1684).

【부록】

제 7 조 (a) : 자치제 성인교육 과정을 시작한 사람은 과정을 끝마칠 자격이 주어진다.

학생이 교육으로부터 학습능력이 떨어지고 만족스러운 학습경과를 보이지 못할 때 교육이 중단될 수 있다.

두 번째 단락의 법령에 의하여 성인 기초교육이 중단된 사람은 납득할 만한 이유를 제시한다면 다시 교육을 재기할 수 있다. 자치제 성인교육을 받는 사람 중 두 번째 단락의 법령에 의하여 중단된 사람은 납득할 만한 이유를 제시할 시 다시 교육을 재기할 수 있다. 법률 (1993 : 1478).

성인 기초교육

책임 독립체

제 8 조 : 제10조 조항에 의하여 교육에 참여할 자격이 있고, 또 참여하길 원하는 자치당국 내 주민들에게 각 지방자치 당국은 이러한 교육을 제공할 책임이 있다.

제 9 조 : 각 지방자치 당국은 성인 기초교육을 받을 자격이 주어진 사람들에게 이러한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힘써야하며 교육에 대한 참여를 북돋아야 한다.

참여할 권리

제10조 : 지방자치 당국의 각 거주민은 의무 기초교육을 통한 교육 수준이 부족하고 이 나라에 거주할 시 만 20세가 되는 해 6월 이후부터 성인 기초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정부는 이 나라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참여할 자격을 줄 수 있다.

성인 기초교육에 참여할 자격이 있는 사람은 다른 지방자치 당국

내에서도 그러한 교육을 제공한다면 거기서도 교육을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감옥 내 범죄자들에게는 이러한 조항이 해당되지 않는다.

통지

제11조 : 성인 기초교육에 참여하길 원하는 사람은 거주 지방자치 당국 내의 교육위원회에 이를 통지해야 한다. 다른 지방자치 당국에서 제공하는 교육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을 경우 지역 교육위원회는 즉시 이러한 통지를 해당 지방자치 당국에 전해야 한다.

스웨덴어 이외의 언어로 진행되는 수업

제12조 : 성인 기초교육에 참여하는 학생의 스웨덴어 수준이 부족하면 학생의 모국어로 수업이 진행될 수 있다. 이러한 수업은 스웨덴어 보충수업과 함께 진행된다.

제13조 : 본 조항은 법률 (1993 : 1478)에 의해 폐지됨.

위원회의 의무

제14조 : 성인 기초교육의 입학과 관련한 문제는 지역 교육위원회가 결정한다. 위원회는 또한 학생이 교육을 중단해야 하는지, 아님 재개해야 하는지의 여부도 결정한다.

항 소

제15조 : 제14조에 따른 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학생은 교육항소위원회에 항소를 제출할 수 있다.

지방자치 당국 간의 보상

제16조 : 다른 지방자치 당국 내에 거주하는 학생을 성인 기초교육에 입학시킨 지방자치 당국은 학생의 거주 지방자치 당국으로부터

【부록】

터 교육비용을 보상받을 자격이 주어진다.

성인 고등학교교육과 보충교육

책임 독립체

제17조 : 지방자치 당국들은 성인 고등학교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해당 당국은 학생의 욕구와 필요를 만족시키는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자치의회는 천연자원과 건강관리 분야에 한해서는 성인 고등학교 교육을 제공할 수 있다.

자치의회는 지방자치 당국과의 협의 하에 다른 분야에 대해서도 성인 고등학교교육을 제공할 수 있다. 법률 (1996 : 566).

제18조 : 각 지방자치 당국은 성인 고등학교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많은 이들이 이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19조 : 지방자치 당국 내 모든 거주민들은 성인 고등학교교육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으며 이 나라에 거주하고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시킬 시 그러한 자격이 주어진다.

1. 만20세가 되는 해 6월 이후
2. 고등학교 교육 학업과정 또는 그와 동등한 수준의 교육을 끝마쳤을 때

정부는 이 나라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해당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교육에 대한 적격성과 지원자 선별에 관한 규정은 정부 또는 정부가 지정한 당국에 공표한다.

이러한 조항들은 감옥 내 범죄자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법률 (1992 : 232).

제20조 : 지방자치 당국과 자치의회는 다른 지방자치 당국에 거주하는 지원자라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할 시 자신들의 성인 고등학교에 입학시킬 수 있다.

1. 거주 지방자치 당국이 학생의 교육비용을 책임지고 지불할 시
2. 지방자치 당국 또는 자치의회가 제24조 조항에 의하여 공표된 규정 하에 보상에 대한 자격이 있는 것에 대하여 교육 또는 교육 장소에 대한 문제일 때. 법률 (1996 : 340).

입학 지원

제21조 : 성인 고등학교교육에 참여하길 원하는 사람은 거주 지방자치 당국 내 지역교육위원회에 지원해야 한다. 다른 지방자치 당국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제공하는 교육과 관련되어 있을 시에는 위원회가 지원서를 즉시 해당 자치당국의 교육위원회로 보내야 한다. 이전의 합의가 있을 시, 또는 정부가 지시한 바가 있을 시를 제외하곤 거주 지방자치 당국이 학생의 교육비용을 책임진다고 하는 의미의 성명서가 지원서에 포함되어야 한다.

지원자가 다른 지방 자치 당국이 제공하는 성인 고등학교교육 또는 보충교육에 입학해야 할 개인사정과 관련된 이유가 있다면 거주 지방자치 당국이 비용을 지불해야할 의무가 주어진다. 제5장 제33조 조항은 이러한 경우 청소년이 만 20세가 되는 해 6월전부터 해당된다.

법률 (1996 : 340).

비 용

제21조 (a) : 책임 독립체는 성인 고등학교교육 지원에 대하여 지원자에게 전형료를 청구할 수 있다.

요금은 합당한 금액이어야 한다.

첫 번째 문단에 언급된 지원료는 다음과 같은 상황일 시 환불될

【부록】

수 있다.

1. 지원 과목에 합격되지 않았을 시 또는
2. 지원 과목을 이수하고 상을 수여받았을 시.

법률 (1992 : 599).

위원회의 의무

제22조 : 성인 고등학교교육의 입학과 관련한 문제는 지역 교육위원회가 결정한다. 위원회는 또한 학생이 교육을 중단해야 하는지, 아님 재개해야 하는지의 여부도 결정한다.

입학기관은 여러 지방자치 당국과 성인 고등학교교육, 일반 고등학교로 이루어진다.

법률 (1993 : 1478).

항 소

제23조 : 학생은 위원회가 내린 적합성, 교육 종료, 더 이상 교육을 제공받을 수 없게 하는 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교육항소위원회에 항소를 제출할 수 있다.

입학에 관련된 결정에 대해서는 항소가 제출될 수 없다.

법률 (1993 : 1478).

자치제간의 보상

제24조 : 정부 또는 정부가 지정한 당국은 해당 교육을 제공하는 지방자치 당국 또는 자치의회 에 다른 지방자치 당국이 성인고등교육에 관한 보상을 지불해야할 의무에 대한 규정을 공포한다. 제5장 제33조 조항은 이러한 경우 청소년이 만 20세가 되는 해 6월 전부터 해당된다.

법률 (1999 : 1341).

제 12 장 지적 장애인을 위한 성인교육

일반 조항

제 1 조 : 지적 장애인을 위한 성인 교육은 지적 장애가 있는 성인에게 지적장애 의무교육 학교나 지적 장애 고등학교 내의 국가 또는 특수학업과정에서 제공하는 교육 수준과 비슷한 교육을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을 둔다.

지적 장애 성인교육은 교육과정의 형태로 제공된다. 법률 (1993 : 1478).

제 2 조 : 학생은 교육내용 구성에 참여할 수 있다. 참여 범위와 형태는 능력의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책임 독립체

제 3 조 : 지방자치 당국들은 지적 장애인을 위한 성인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욕구와 필요를 만족시키는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자치의회는 지방자치 당국과의 협의 하에 정신지체 고등학교 내의 국가 학업과정과 특수학업과정에서 제공하는 교육과 상응하는 교육을 제공할 수 있다. 법률 (1997 : 575).

제 4 조 : 본 조항은 법률 (1992 : 598) 에 의해 폐지됨.

제 5 조 : 각 지방자치 당국은 성인 고등학교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많은 이들이 이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법률 (1993 : 800).

적합성

제 6 조 : 지방자치 당국 내의 이 나라에 거주하고 다음과 같은 조건

【부록】

을 만족할 시 모든 거주민들은 지적 장애 성인교육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1. 만20세 6개월이 지난 후
2. 지적 장애 고등학교를 졸업한 경우

정부는 이 나라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줄 수 있다.

정부는 적합성과 지원자들 간의 적합성을 선별할 조항에 관해 공표한다.

감옥에 수감된 범죄자들에게 본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법률 (1996 : 340).

제 7 조 : 지방자치 당국과 자치의회는 거주 지방자치 당국이 학생의 교육비용을 책임질 때에는 그 거주 지방자치 당국에 거주하는 지원자라도 지적 장애인 성인교육학교에 입학시킬 수 있다.

법률 (1996 : 566).

비 용

제 8 조 : 지적 장애인 성인교육은 학생들에게 무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교과서, 필기도구, 연장, 보호복, 그 외 학생의 필요에 의한 지원과 소지해야할 것들은 교육 제공 독립체가 학생이 스스로 비용을 지불할 지 아님 원가가 넘지 않는 선에서 그에 대해 지원을 줄지 결정한다.

지적 장애인 성인교육내의 원조는 정부가 공표한 규정에 해당될 때를 제외하곤 무상으로 제공된다.

교육제공 계약

제 9 조 : 지방자치 당국 또는 자치의회는 다른 이들과 지적 장애인 성인교육 제공에 관한 계약을 맺을 수 있다. 정부는 계약 대상자와 계약조건과 관련된 조항을 공표한다.

법률 (1996 : 566).

제10조 : 제2장 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조항은 지방자치 당국 외에서 제공하는 지적 장애인 성인교육에 대해서는 해당되지 않는다.

법률 (1992 : 598).

입학 지원

제11조 : 지적 장애인 성인교육에 참여하길 원하는 사람은 거주 지방자치 당국내의 교육위원회에 지원해야 한다. 다른 지방자치 당국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제공하는 교육과 관련되어 있을 시에는 위원회가 지원서를 즉시 해당 자치당국의 교육위원회로 보내야 한다. 이전의 합의가 있을 시, 또는 정부가 지시한 바가 있을 시를 제외하곤 거주 지방자치 당국이 학생의 교육비용을 책임진다고 하는 의미의 성명서가 지원서에 포함되어야 한다.

법률 (1996 : 566).

학업과정을 이수할 권리

제12조 : 지적 장애인 성인교육을 시작한 사람은 학업 과정을 끝마칠 권리가 있다.

만약 학생이 교육에 의해 얻는 이득이 적고 만족스런 학업경과를 보여주지 못할 때 교육이 종료될 수 있다.

두 번째 단락에 의해 학업이 종료된 학생은 특별한 사유가 있을 시 다시 교육을 제공받을 수 있다.

【부록】

법률 (1993 : 1478).

위원회의 의무

제13조 : 지적 장애인 성인교육의 입학과 관련한 문제는 지역 교육 위원회가 결정한다. 위원회는 또한 학생이 교육을 중단해야 하는지, 아님 재개해야 하는지의 여부도 결정한다.

항 소

제14조 : 학생은 위원회가 내린 접수, 교육종료, 더 이상 교육을 제공받을 수 없게 하는 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교육항소위원회에 항소를 제출할 수 있다.

입학에 관련된 결정에 대해서는 항소가 제출될 수 없다.

제 13 장 이민자들을 위한 스웨덴어 교육

일반 조항

제 1 조 : 이민자 스웨덴어 수업은 새로 이민 온 성인들을 위해 스웨덴어와 스웨덴 사회에 관한 기초적 지식을 가르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본 교육은 교육과정의 형태로 제공된다. 법률 (1994 : 517).

제 2 조 : 학생은 교육내용 구성에 참여할 수 있다.

책임 독립체

제 3 조 : 모든 지방자치 당국은 제6조에 해당되는 사람에게 이민자를 위한 스웨덴어 수업을 제공해야 한다.

스웨덴어 수업을 받을 권리가 주어진 직후부터 수업이 가능해야 한다. 특수한 경우 3달 내에 수업이 가능하도록 한다.

법률 (1994 : 517).

제 4 조 : 모든 지방자치 당국은 이민자 스웨덴어 수업을 받을 자격이 있는 지방자치 당국 내 거주민이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참여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한다.

제 5 조 : 지방자치 당국은 관련 고용주와 직원이 받는 수업과 수업 일정에 대한 단체협약을 맺은 기관과 협의해야 한다.

참여할 권리

제 6 조 : 다음과 같은 사람은 이민자 스웨덴어 수업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제7조 조항의 만 16세 6개월이 지난 후부터는 예외사항이 된다.

1. 스웨덴어에 대한 기초 지식이 부족한 지방자치 당국 내에 거주하는 사람.

정부는 이 나라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본 교육을 제공받을 허가를 내릴 수 있다.

2. 핀란드에 거주하지만 스웨덴 국경과 가까운 지방자치 당국 내에 영구적으로 일하며 스웨덴어에 대한 기초지식이 부족한 핀란드인들. 법률 (1994 : 517).

제 7 조 : 기초 스웨덴어 수업에서 필요하다고 생각되지 않는 덴마크어 또는 노르웨이어를 쓰는 사람은 참여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 법률 (1994 : 517).

비 용

제 8 조 : 이민자 스웨덴어 수업은 무료로 제공된다. 교과서와 현대교육을 위한 지원을 무상으로 지급받는다. 수업을 책임지는 독립체는 학생에게 사적인 지원을 줄 수 있는가를 결정한다. 학생이 직접 사야할 소액의 준비물이 필요할 수도 있다.

【부록】

수업제공 계약

제 9 조 : 지방자치 당국 또는 자치의회는 다른 이들과 이민자 스웨덴어 수업제공에 관한 계약을 맺을 수 있다. 정부는 계약 대상자와 계약 조건과 관련된 조항을 공표한다.

제10조 : 제2장 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조항은 지방자치 당국 외에서 제공하는 이민자 스웨덴어 수업에 대해서는 해당되지 않는다.

수업 종료

제11조 : 스웨덴어 수업을 시작한 사람은 학업을 이수할 자격이 주어진다.

학생이 수업으로부터 얻는 이득과 만족할 만한 성과를 내지 못할 시 수업이 종료될 수 있다.

두 번째 단락 조항에 의하여 이민자 스웨덴어 수업이 종료된 학생, 또는 자진하여 종료한 학생은 다시 교육에 참여할 기회가 주어진다. 단, 특수한 이유가 이를 뒷받침해야 한다.

법률 (1994 : 517).

위원회의 의무

제12조 : 이민자 스웨덴어 수업 적합성과 관련한 문제는 지역 교육위원회가 결정한다. 위원회는 또한 학생이 교육을 중단해야 하는지, 아니면 재개해야 하는지의 여부도 결정한다.

항 소

제13조 : 학생은 제12조에 의해 위원회가 내린 결정에 대하여 교육항소위원회에 항소를 제출할 수 있다.

제 14 장 학교보건

제 1 조 : 학교보건은 기초학교, 고등학교, 지적 장애인 학교, 특수학교, 사미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에게 제공된다.

유아학급의 학생들에게도 보건의 제공될 수 있다. 법률 (1997 : 1212).

제 2 조 : 학교보건의 목적은 학생의 정신적 육체적 건강을 증진, 보호, 발전시키고 건강습관을 가르치는 데 있다.

학교보건은 주로 예방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건강검진과 간단한 건강관리를 포함한다. 지적 장애인 학교와 특수학교의 학생의 기능성 장애를 위한 특별비용이 한 부분을 차지한다.

학교 보건을 위해 의사와 간호사가 있어야 한다. 법률 (1993 : 800).

제 3 조 : 기초학교 또는 사미족학교에 다니는 모든 학생은 통학기간 동안 골고루 시기를 분배하여 최소 3번의 종합건강검진을 받도록 한다. 첫 번째 검진은 일학년 때 받는다. 유치원학급 내의 보건의 학생이 있는 동안 첫 번째 검진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학생은 또한 종합건강검진 사이에 시각, 청각 테스트와 그 외 건강검진도 받을 수 있다.

만약 기초교육 또는 사미족학교내의 의사가 특정 학생이 특별한 검진을 받아야 된다고 판단하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한다.

기초학교에 상응하는 지적 장애인 학교와 특수학교에 다니는 학생은 기능성 장애로 인한 상시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첫 번째와 두 번째 단락의 조항 또한 이 학생들에게 해당된다. 법률 (1997 : 1212).

제 4 조 : 고등학교 교육과 지적 장애인 고등학교 교육 학생들은 최소 한번 이상의 종합건강검진을 받아야 한다. 지적 장애인 고등학

【부록】

교의 학생은 기능성 장애로 인해 상시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법률 (1993 : 1478).

제 5 조 : 제1조에 언급된 학생은 필요할 시 학교 보건과에 상담할 수 있으며 제3조와 제4조 조항에도 적용된다. 법률 (1993 : 800).

제 6 조 : 학생에게 주어진 학교 보건은 무료로 제공되어야 한다.

제 7 조 : 학교를 책임지는 독립체는 정부 또는 정부가 지정한 당국의 특수 규정을 제외하곤 학교보건을 제공해야 한다.

제 7 조 (a) : 제9장에 언급된 자율학교의 학생들은 국가 학교 제도내의 학교 형태에서 제공되는 것과 같은 학교 보건을 제공받아야 한다. 단, 제9장 제5조 조항에 언급된 학교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법률 (1996 : 1044).

제 8 조 : 본 조항은 법률 (1996 : 792)에 의해 폐지됨.

제 15 장 부칙(附則)

제 1 조 : 정부 또는 정부가 지정한 당국은 국가 학교제도의 기관과 관련된 추가 규정과 본 법령이 지정하는 지방자치 당국과 자치의 회의 교육 관여에 대한 규정을 공표한다.

국가 학교제도 내의 협동 단체와 이와 비슷한 교육 활동에 대하여 정부 또는 정부가 지정한 당국은 사립단체가 해당 기관 내의 임원을 지명하고 해고하는 것에 관련한 규정을 공표한다. 사립 단체는 미성년자인 학생을 포함해야 한다. 법률 (1991 : 1684).

제 2 조 : 사립단체의 가능성과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국가 학교 제도내의 교육활동 요소를 책임지는 다른 제 3 단체와 관련된 규정을 공표한다.

개별 학업과정의 형태로 제공되는 교육과 관련하여 정부는 사립 단체와 다른 제3의 단체가 첫 번째 단락에서 제시하는 교육의 양보다 더 많이 제공해도 된다는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제2장 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조항은 첫 번째 또는 두 번째 단락에 의하여 국가 학교제도를 책임지는 단체 외의 곳에서 제공되는 교육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제 3 조 : 정부 또는 정부가 지정한 당국은 서로 다른 종류의 학교 간의 협력에 기반 하여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국가 학교제도 내의 가능성과 관련된 규정을 공표한다. 본 법령의 조직상 조항에 관한 규정은 예외가 될 수 있다.

제 4 조 : 정부 또는 정부가 지정한 당국의 지시에 따라 국가 학교제도 내에서 실험적 활동이 실행될 수 있다. 본 법령의 조직상 조항에 관한 규정은 예외가 될 수 있다.

제 5 조 :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학생의 입학 관련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 또는 정부가 지정한 당국이 공표한 규정이 적용된다.

제 6 조 : 정부는 제4장 제4조, 제5장 제21조, 제11장 제5조, 제13장 제8조에도 불구하고 기초학교, 고등학교, 자치제 성인교육, 이민자 스웨덴어 교육 내에서 특수 개인시험을 받길 원하는 사람들의 요금을 지불할 의무에 관련한 규정을 공표할 수 있다. 법률 (1996 : 1456).

제 7 조 : 보건복지청은 신체 장애인을 위한 시설을 중심으로 감독해야하며, 특수학교와 국가와의 협의 하에 정신지체가 있는 학생을 위한 자원센터를 감독할 의무가 있다.

자치의회는 첫 번째 단락에 언급된 생활시설의 운영을 감독해야하며 따라서 운영을 검토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법률 (1999 : 886).

제 8 조 : 정부 또는 정부가 지정한 당국은 사립 단체에게 국가 학교제도에 적용 가능한 조항 내에서 시험과 상을 설계하도록 허락할 수 있다.

제 9 조 : 본 조항은 법률 (1990 : 1447)에 의해 폐지됨.

【부록】

제10조 : 정부는 제5장 제7조에 언급된 바와 같이 신체장애학생을 위한 시설을 갖춘 고등학교에 다니는 신체장애 학생의 교육에 대한 규정을 공표한다. 본 법령의 고등학교와 관련된 일반조항에 의해 해당 규정에 대한 예외가 만들어 질 수 있다.

제11조 : 정부 또는 정부가 지정한 당국은 학교를 책임지고 운영하는 독립체의 학교 교육활동에 대한 사실적인 정보와 교육활동 평가에 사용될 운영 리포트를 제공해야 할 의무와 관련된 규정을 공표한다.

정부는 이러한 정보제공 의무를 지키지 않는 객체에 대한 벌금에 대해 규정을 추가로 공표할 수 있다.

제12조 : 정부는 교사 지원자들을 선별할 시 고려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 규정을 공표한다.

제13조 : 국가 학교제도 또는 본 법령에 따른 교육 내의 의무교육을 받은 사람은 자기 자신 또는 대리인의 요청에 따라 일반적으로는 예외 될 수 없는 항목에 대해 제 3장 제12조를 만족할 시에는 참여를 면제받을 수 있다. 항소에 대하여서는 제3장 12조항 두 번째 세 번째 단락의 내용이 적용된다. 법률 (1996 : 1044).

제14조 : 정부 또는 정부가 지정한 당국은 본 법령의 교육과 관련하여 의무교육 이수 후에 징계수단과 정확에 대한 규정을 공표한다.

제15조 : 만약 지방자치 당국이 본 법령과 본 법령에 의한 규정이 정한 의무를 도외시 하였을 시에는 해당 지방자치 당국이 스스로 결점을 고칠 비용과 수단을 강구하도록 규정을 공표한다.

첫 번째 단락에 의하여 비용이 발생하였을 시 이는 지방자치 당국의 결점으로 인해 국가가 지출했을 만큼의 비용으로 공제한다. 법률 (1992 : 886).

부록 1

국가 학업과정
아동 레크리에이션 학업과정
건설 학업 과정
전기 기술 학업 과정
에너지 학업 과정
예술 학업 과정
운송수단 공학 학업 과정
사업 관리 학업 과정
수공예 학업 과정
호텔 레스토랑 음식공급 학업 과정
산업 학업 과정
식품 학업 과정
미디어 학업 과정
천연자원 학업 과정
자연과학 학업 과정
건강관리 학업 과정
사회과학 학업 과정
기술 학업 과정
법률 (1999 : 180).

부록 2

고등학교 내의 국가 학업과정과 특수 학업 과정의 학점내역
아래 나온 과목은 모든 국가 학업과정과 특수학업과정에 포함됨
(필수과목)

과목 / 고등학교 학점

스웨덴어 및 제2외국어로서의 스웨덴어 200

영어 100

【부록】

수학 100

운동과 건강 100

시민학 100

종교 지식 50

자연 과학 50

예술 활동 50

학업과정의 특성과 관련된 과목(100 학점의 프로젝트과제를 포함)

1450

개인 선택 과목 300

총 학점 2500

법률 (1999 : 180).

부록 3

기초학교의 과목별, 그룹별 수업시간 및 총합

과목

예술 교육 230

국내 과학 소비자 지식 118

운동과 건강 500

음악 230

수공예 330

스웨덴어 1490

영어 480

수학 900

지리학 885

역사

종교 지식

시민학

생물 800

물리

화학

공학

선택 언어 320

학생 선택 과목 382

총합 6665

학교 선택 600

학교 선택시간의 경우 해당 과목 또는 그룹과목의 수업시간은 최대 20%까지 줄어들 수 있다. 법률 (1997 : 1212).

경과규정(經過規定)

본 법령에 의해 효력을 가지는 조항은 교육법의 실행과 관련된 법령(1985 : 1011)에 나와 있다.

1989 : 120

이 법령은 1989년 7월 1일에 시행된다. 이 법령이 효력을 가지기 전 내려진 결정은 당시 적용 가능한 조항이 결정한다.

(중략)

1999 : 321

1. 본 법령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2. 본 법령이 시행되기 전 유아학급에 상응하는 기관을 운영할 허가를 받은 사람은 제2(b)장 제6조에 의해 승인을 받은 것으로 친다. 만약 기초학교 또는 지적 장애자 학교에 상응하는 자율학교와 관련하여 허가가 법령 시행 전에 발행되었다면 이 또한 제2(b)장 제10조 (a) 에 의해 보조금을 받을 권리가 여전히 유효하다.

【부록】

3. 유아학급에 상응하는 교육을 제공하지 않는 자율학교 중 제2(b)장 제10조 (a)에 의해 2000/2001학년도부터 보조금을 받길 원하는 학교는 제2(b)장 제10조 (a)의 세 번째 단락의 지원기간 대신 1999년 9월 1일 이전에 허가 요청을 해야 한다.